헌법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교단

발 간 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은 1907년에 소요리문답을 발간한 것을 시작으로 1917년 뉴욕총회가 채택한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한국교회의 형편에 맞도록 수정하여 채택한 이래 신조, 정치, 예배모범, 권징조례를 추가하여 사용하다가 1934년 헌법수정판을 발행하였으며, 해방 후인 1954년 제39회 총회에서 정치편을 일부수정하였고, 1960년에 고신총회와 합동하고, 이듬해인 1961년 제46회 총회에서 헌법을 개정하였다. 1979년 진리보수의 기치를 들고 출발한 64회 총회 이후 총회개혁신학연구원(청담동)을 세우고후진양성과 교단정비에 힘쓰던 중에 1985년에 이르러 본 교단의전신(前身) 합동보수와 개혁총회가 합동하여 개혁교단으로 출발하면서 정치, 예배모범, 권징조례를 개정하였다. 1998년에는 개혁주의신학과 신앙이 같은 9개 교단이 대통합을 이루고 제84회 총회에서 헌법을 개정하였다.

2006년 제90회 총회를 앞둔 개혁교단은 26년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 합동교단의 새가족으로 영입될 수밖에 없는 기로에 섰을 때, 개혁의지가 분명한 동역자들이 교단수호위원회를 조직하여 개혁교단의 역사를 계승하고 헌법책을 발간하였으니 2009년의 일이다.

그 뒤로 이합집산을 거듭하면서 종암측과 방배측으로 대별할 수 있도록 정비되었다. 교단의 이전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여 리 길을 모색하던 중, 종암측은 교세확장의 명분을 앞세운 무리 한 통합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혁이념을 포기할 위기에 봉착하였 으나 개혁교단의 전통수호와 진리보수에 뜻을 함께하는 순수한 노회들이 비상총회를 소집하여 교단의 맥을 잇는 거룩한 그루터 기로 남았다. 한편 방배측은 불법적이고 무리한 합동으로 개혁의 역사를 단절시키려는 반개혁세력에 저항하여 일어난 정체성 지킴이 연대(정지연)를 통하여 교단의 정통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에 양측은 신학과 신앙뿐 아니라 개혁교단의 재건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확인하고, 조건없는 합동을 이루어 제100회 총회를 개회함으로써 개혁이념을 구현해 나갈 명실상부한 개혁교단으로 든든히 서게 되었다.

제100회 총회는 헌법 및 규칙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01회 총회는 개정헌법을 가결하였다. 이 헌법은 2009년 판을 근간으로 하여 여성안수를 허용하고, 시무연한을 75세로 연장하였으며, 예배모범을 예배와 예식규범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권징조례의 내용을 개정하였다. 제103회 총회는 이 헌법을 확정가결하고 노회의 수의를 거쳐 2018년 11월 19일에 공포하였다. 전국교회가 본헌법을 준수하고 즐거이 실행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이든든히 서가기를 바라는 바이다.

2019 년 8월 1일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헌법위원회

헌법위원회 위원장 황 호 관 목사 서 기 류 정 수 목사 위 원 임종학 이경근 이해동 목사 이영진 김헌윤 장로 총 회 장 정완득 윤서구 이충년 목사 (101회 102회 103회)

차 례

	1
◈ 개혁이념	8
 한법전문 ····································	10
1. 교 리	
1. 신조	12
2. 사도신경	17
3.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1 장 성경	18
제 2 장 하나님과 삼위일체 ·····	22
제 3 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24
제 4 장 창 조	27
제 5 장 섭 리	28
제 6 장 인간의 타락, 죄, 형벌	31
제 7 장 하나님의 언약	32
제 8 장 중보자 그리스도	34
제 9 장 자유 의지	38
제10장 유효한 부르심	39
제11장 칭의(稱義)	41
제12장 양자됨	43
제13장 성화(聖化)	44
제14장 구원에 이르는 믿음	45
제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	46

제16장 선행(善行)	48
제17장 성도의 견인	···· 51
제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	52
제19장 하나님의 율법	···· 54
제20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58
제21장 예배와 안식일	60
제22장 합당한 맹세와 서원	63
제23장 국가 공직자	65
제24장 결혼과 이혼	67
제25장 교 회	69
제26장 성도의 교통	···· 71
제27장 성 례	···· 72
제28장 세 례	···· 73
제29장 성 찬	····· 75
제30장 교회의 권징	···· 78
제31장 총회와 노회	···· 79
제32장 사후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	81
제33장 최후심판	
4. 대요리 문답	84
제1부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이 믿어야 할 도리(제1문~저 제2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람의 의무(제91문~19	•
5. 소요리 문답	···· 181

2. 정 치

서군		
	원 리	
	교 회	
	교 인	214
제 4 장	교회의 직원 ·····	216
	목사	217
	장로	227
	집사·권사 ·····	231
	준목 · 목사후보생 ·····	
	전도사ㆍ서리집사	
	회의 및 기관·단체·····	
	치리회	
	당 회	
	노 회	
	총 회	
	재 산	
제16장	헌법개정	259
	3. 예배와 예식규범	
서문		
제1부	교회의 예배	
제 1 장	교회와 예배	262
제 2 장	주일성수	264
제 3 장	주일예배	265
제 4 장	예배의 요소 및 순서	267

제 5 장 예배와 헌금	272
제 6 장 성경봉독과 말씀선포	274
제 7 장 예배의 분류	275
제 8 장 주일학교 예배	278
제 9 장 교회력	
제10장 명절과 국경일	280
제2부 성례식	
제 1 장 교회와 성례	281
제 2 장 세례예식	282
제 3 장 유아세례	282
제 4 장 성년세례	
제 5 장 입교예식과 학습예식	
제 6 장 성찬예식	288
제3부 임직식	
제 1 장 집사 및 권사 임직식	
제 2 장 장로 임직식	
제 3 장 준목 인허식	
제 4 장 목사 임직식	
제 5 장 목사 위임식	
제 6 장 추대 및 은퇴식	301
제4부 가정의례	
제 1 장 결혼식	
제 2 장 장례식	304

4. 권징조례

제 1 장 총칙	308
제 2 장 재판국	
제 1 절 재판에 관한 통칙	312
제 2 절 당회 재판국	314
제 3 절 노회 재판국	316
제 4 절 총회 재판국	318
제 3 장 일반소송 절차	320
제 4 장 제1심 소송절차	
제 1 절 고소 및 고발	
제 2 절 기소	
제 3 절 재판	333
제 5 장 상소	
제 1 절 통칙	338
제 2 절 항소	
제 3 절 상고	345
제 6 장 특별소송절차	
제 1 절 위탁재판	
제 2 절 재심	
제 3 절 총회특별재심	
제 7 장 시벌 및 해벌	354
제 8 장 행정쟁송	
제 1 절 통칙	
제 2 절 행정소송	
제 3 절 결의취소 등의 소송	
제 4 절 치리회간의 소송	362
제 5 절 선거무형소송과 당선무형소송	362

개혁이념(改革理念)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은 바른신학(딤전6:3;딤후1:13), 바른교회(딤전3:15), 바른생활(약1:27)을 개혁이념으로 삼고, 성경적 개혁주의 신앙운동을 계속 하고자 하는 굳건한 의지를 담아 본교단의 신학적 입장을 천명한다.

- 1.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 정치, 예배와 예식규범, 권징조례를 교의와 규례의 표준으로 삼는 성경적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고수한다(히13:8~9).
- 2.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롬11:36), 성경의 권위, 오직 은혜 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믿으며, 바른신학의 구현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기독교문화를 창달하고(창2:27~28) 이웃사랑을 힘써 실천한다(눅10:27~28,37).
- 3.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며, 통치자라는 교회 관을 신봉(엡4:15~16)하며 모든 사역자들의 평등성과 함께 은사의 다양성(고전12:4~11)을 인정하며 지체의식과 청지기 정신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김으로 바른교회를 세워나간다.
- 4. 우리는 경건생활에 주력함으로써(딤전4:7~8) 교권쟁취를 위하여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구태를 벗어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마음과 자세로서(마6:33), 성경임기,기도, 전도, 봉사에 전력하는 바른생활의 모범을 보인다.

- 5.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신앙과 윤리를 겸비한 균형있는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리스도인의 시민상(市民象)을 힘써 가르치고 실천한다(빌2: 1~5).
- 6. 우리는 한국교회의 현재와 미래의 소망이 바른신학에 있음을 인식하고, 교회와 사회의 여망에 부응하는 영성과 인성을 겸비한 유능하고 수준 높은 교역자 양성을 힘쓴다(딤후2:1~2).
- 7. 우리는 개인의 성화와 교회의 개혁(딤전4:16)과 진리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겸손과 용서와 관용의 정신으로 화목과 일치운동을(엡4:1~6) 적극적으로 펼쳐나간다.
- 8. 우리는 타락한 권위주의와 교권주의를 막기 위해서 성경적 원리를 제도적으로 시행하며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모든 교인과 직원의 자율성과 의사발표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한다.
- 9. 우리는 사이비 이단의 발호와 침투를 교단적으로 막아 낼 뿐만 아니라(요1서:4~6), 교인들의 분별력을 고취하며, 이단사설에 미혹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교육하고, 그로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모든 방법을 강구한다(엡4:14).
- 10. 우리는 복음을 받은 교회로서 부채의식을 가지고 주는 교회가 되어 아시아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신학과 신앙노선이 같은 국내교회 및 세계교회와 협력하고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롬1:14).

헌법전문 (憲法前文)

성경에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사9:6~7)"고 예언하셨다. 그예언의 말씀대로 우리 주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마28:18) 왕 중의 왕이시다. 그 왕께서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친히 세우시고, 그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서 통치하시며 뿐만 아니라 택하여 세우신 사역자들을 통하여치리하심을 우리는 굳게 믿는다.

주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가 타락한 인간에 의하여 그릇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개혁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1517 년 새로운 교회시대를 여시고 개혁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다. 그후 교회들은 각각 자기들의 신경, 의식, 규칙, 정치제도를 따라서 그 교훈과 지도하는 원리를 각각 달리한바 장로회정치, 감독정치, 자유정치, 조합정치 체제를 이루게 되었다.

본 교단은 개체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하여금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성경적이며 민주적인 장로회 정치를 지향한다. 당회는 목사와 장로로 조직되어 개체교회를 주관하고, 그 상회로서 노회와 총회가 있다. 장로회 정치체제는 모세(출30:16,18:25~26;민11:16)와 사도시대(행14:

23,18:4;딛1:5;벧전5:1;약5:14)부터 있어 왔으며, 가장 오랜 역 사와 항상 우위를 자랑하는 탁월한 제도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필요하고 적절한 직분들과 규례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충분하고 풍성하게 계시하셨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경에 계시된 제도와 규례를 따라서 세우고, 치리해야 하며, 그 규례들을 기쁨으로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우리의 왕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이다. 왕이신 주님의 통치에 즐겨 순복하기로 헌신한 우리는 그의 거룩한 뜻을 따라 교회를 질서있게 섬기기 위하여 이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니 모든 직원들과 교인들은 헌법정신을 따라 교회를 섬기며, 교회는 당회의 치리에 순복하고, 노회는 총회의 지체이자 회원으로서 총회를 섬기되 그 결의에 즐거이 승복하여 거룩한 공회를 공회되게 하여야 한다.

본 헌법은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본으로 삼고, 1912년에 조직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전통과 1917년 제6회 총회에서 채택한 수정헌법과 1921년 제10회 총회에서 채택한바 "조선장로회헌법"의 정신을 계승한다. 그리고 2009년판 헌법을 근간으로삼아 헌법위원회에서 개정하고, 제103회 총회에서 의결하여 노회의 수의를 거쳐 공포하였다.

교 리(敎理)

신조서언 (信條緒言)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 요리문답을 성경을 밝히 해석한 것으로 인정하고 교리의 표준으로 삼는다. 이를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이며, 그 중에 소요리문답은 교회의 문답교본으로 채용한다. 특별히 아래 신조를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그리고 준목으로 하여금 승인하게 하는 것은 대한예수교장로회를 설립한 모(母)교회의 교리적 표준을 적극 동의하고 찬성함이다.

1. 신조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의 신조

- 1. 신・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본분(本分)에 대하여 정확무오(正確無誤)하고 유일(唯一)한 법칙이다.
- 2.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영(靈)이시니 스스로 계시고, 어디나 계시며 다른 신과 모든 물질과 구별되시며, 그 존재(存在)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하심에 있어서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다.
- 3. 하나님의 본체(本體)에 삼위(三位)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

이시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므로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 광이 동등(同等)하시다.

- 4. 하나님께서는 모든 유형물(有形物)과 무형물(無形物)을 그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시어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나, 결코 죄를 짓게 하신 이가 아니시고, 모든 것을 자기 뜻의 계획대로 행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지혜롭고, 거룩하신 목적을 성취하도록 만유(萬有)를 역사하신다.
- 5. 하나님이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사(엡4:24;골3:10) 생물(生物)을 주관하게 하셨다(창1:28). 이로써, 세상 모든 사람이 한 근원에서 났은 즉(눅3:38) 모두 한 가족이요, 형제이다.
- 6. 우리의 시조(始祖) 아담에게 선악 간에 택할 자유가 있었는데 (창2:16~17), 시험을 받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아담으로부터 통상적인 자연 생육법(生育法)에 의하여 출생하는 모든 사람이 그의 안에서 그 범죄에 동참하여 타락하였다(롬5:12). 그래서 사람에게는 원죄(原罪)와 부패한 성품 외에 범죄할 능력(能力)이 있어서 일부러 죄를 짓게 되어, 모든 사람이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공평한 진노와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 7.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죄와 부패함과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어, 무한한 사랑으로 그의 영원하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로육신을 입게 하시고, 그로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행4:12). 그 아들이 참 사람이 되신 이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童貞女)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으되 전혀 죄는 없으시다.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복종하시고(롬10:4), 몸을 드려 참되고 온전한 희생제물이되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十字架)에 못 박혀 죽으셨다(골1:19~20), 무덤에 묻히셨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시며(마16:9), 자기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롬8:34), 죽은 자를 살리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거기로부터 재림하신다.

- 8.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시는 성령께서 사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는 사람으로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며(행2:3 7), 그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엡1:18),설득 하여 복음으로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 게 하시며(요1:12), 또한 사람 안에서 역사하여 모든 의의 열 매를 맺게 하신다(골1:10).
- 9.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여 사랑하므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저희를 미리 작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삼으셨다. 이는 그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저희에게 후하게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엡1:3~6).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전한 구원을 값없이 주시려고 다음과 같이 명하시었다. 먼저, 저희 죄를 회개하고(행17:30),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행16:31), 의지하여 본받으며, 둘째

로,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에 복종하여 겸손하고 거룩하게 행하라 하셨다(벧전1:15). 이로써,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저희가 받는바 특별한 유익은 의롭다 하심과(롬4:25), 양자(養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수(數)에 참여하게 하심과(롬8:15), 성령의 감화로 거룩하게 하심과(벧전1:2) 영원한 영광이니(롬8:30),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구원 얻는 줄을 확실히 알 수 있고 기뻐하게 된다(벤전1:8). 성령께서 은혜의 직분을 행하실 때에 은혜 베푸시는 방도는 특별히 성경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10.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聖禮)는 세례와 성찬이다. 세 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예식 이다. 이는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표증과 인(印)취인 데(롬6:3), 성령으로 거듭남과 새롭게 하심과(요3:5;딛3:5). 주께 속하였음을 확증하는 것이다(골2:11~12). 세례는 그리 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자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베푸 는 것이요(마28:19;행8:38),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 념하여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니(눅22:19~20;고전11:23~ 25), 이는 믿는 자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과되는 유익 을 받는 것을 인쳐 증거하는 표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를 의지함과, 거기서 나타나는 유익을 받음과 더욱 주를 섞기 기로 언약(言約)함과, 주와 함께 여러 교우로 더불어 교통하 는 표이다(갈3:27~28). 성례의 유익은 성례의 덕택으로 말미 암유도 아니요. 성례를 베푸는 자의 덕으로 말미암유도 아니 요, 다만, 그리스도의 복 주심과 믿음으로써 성례를 받는지가 운데 계신 성령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음이며(벧전3:21) 그리스 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심에 있다.

- 11. 모든 신자의 본분은 입교(入敎)하여 서로 교제하며, 성례와 그 밖의 법례(法例)를 지키며, 주의 법을 복종하며, 항상 기도 하며(살전5:17),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출20:8~10;고전 16:2;계1:10), 주를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히10:24~25)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심을 따라 헌금하며(고후9:7~8), 그리스도의 마음과 동일한 생각과 뜻을 서로 표현하며(빌2:5), 또한 일반 사람에게도 그와 같이 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도록 힘쓰며(벧전2:9), 주께서 영광가운데 다시 오심을 바라고 기다릴 것이다(딤후4:8).
- 12. 죽은 자가 세상 끝 날에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심판하시는 보좌 앞에서 이 세상에서 선악 간에 행한 바를 따라 보응(報應)을 받게 된다(롬14:11). 이때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한 자 는 확실히 죄사함을 얻고 영광중에 영접을 받게 되지만(계2 1:1~7),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 자는 정죄함을 받아 그 죄 에 합당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계21:8).

숭인식 (承認識)

교회의 신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것으로 내가 믿으며 이를 또한 나의 개인의 신조로 공포 하노라.

(9)

2.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 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 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 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펜.

새번역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성경

- 1.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서,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롬2:14~15,1:19~20,시19:1~3;롬 1:32,2:1).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지식을 주는데 있어서 불충분하다(고전1:21,2:13~14;행4:1;롬16:13~14). 그래서 주님은 여러 시대에,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의 교회에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다(히1:1~2;갈1:11~13). 그후에는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비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며,위로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진리를 온전히 기록해 두셨다(눅24:27;딤후3:16).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눅16:29~31;벤후1:10;히21:1~3). 그리하여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시던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중단되었다(요20:29~31).
- 2. 성경, 혹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아래, 현재의 모든 신·구약 책들이 포함되어 있는바, 다음과 같다.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

하, 에스라, 느혜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 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 가랴, 말라기.

신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 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 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 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 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 된다(눅16:29,31;엡2:20;계22:18~19;딤후3:16).
- 3. 일반적으로 '외경'이라고 불리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경(正經)의 일부가 아니며, 따라서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무 권위가 없다. 또한 다른 인간적인 저작물보다 더 나을 것이 없으며 사용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눅24:27,44;롬3:2;벤후1:21).
- 4. 성경에는 권위가 있다. 그 권위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의 저자이시요,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벤후 1:19~21;딤후3:16;요일5:9;살전2:13).

- 5. 우리는 교회의 증거에 의하여 감동과 감화를 받아 성경을 아주고상하고 존귀하게 여기는데까지 이를 수 있다(딤전3:15). 그리고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의 신령함, 교훈의 효험, 문체의 웅장함, 모든 부분의 내용상의 일치성, 내용 전체의 목표(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 드리는 것), 인간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을 밝혀 주는 충분한 내용 전개, 이 외에도 많은 비교 할수 없이 좋은 점들,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완전성 등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하게 입증해 주는 논증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무오한 진리요, 신적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납득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말씀에 의하여 말씀을 가지고 증거 하시는 성령의 내적사역에 의해서이다(요일2:20,27;요16:13~14;고전2:10~12;사59:21).
- 6.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계획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선하고 적절한 논리에 의하여 성경에서 연역될 수가 있다(막7:5~7). 그러므로 이 성경에다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지 혹은 인간들의 전통에 의해서든지 아무것도 어느 때를 막론하고 더 첨가할 수가 없다(日후3:5~17;갈1:8~9;살후2:2). 그러나 말씀으로 계시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구원론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하나님의 성령의 내적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요6:45;고전2:9~12).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교회의 정치에 관하여는, 인간적인 활동이나 단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격식들이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이러한 격식들은 반드시 준수되어

야 하는 말씀의 일반적인 법칙들을 따라서, 본성의 빛과 기독교 인의 신중한 사려분별력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고전 11:13~14,14:26,40).

- 7.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한결같이 명백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고 분명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벤후 3:16). 그렇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알아야 하고, 믿고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성경 안에 여러 곳에 아주 분명하게 제 시되어 있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유식한 사람뿐만 아니라 무식 한 사람일지라도 통상적인 방법을 적당하게 사용하기만 하면 그것들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시119:105,130).
- 8. 히브리어(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용한 언어)로 되어 있는 구약성경과 헬라어(신약성경이 기록될 당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국제어)로 되어 있는 신약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직접영감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비상한 보호와 섭리에 의해예나 지금이나 순전하게 보존되었으므로 신임할 만하다(마5: 18). 그러기에 모든 종교적 논쟁에 있어서 교회는 최종적으로 성경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다(사8:20;행15:15;요5:39,46). 그러나이 원어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성경을 가질 권리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도록 명령 받았다(요5:39;담후3:14~15;벤후1:19). 그러므로 성경은 성경이 전수(傳受)된 모든 나라의 자국어로 번역되어야 한다(고전14:6,9,11~12,24,27~28).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풍성히 거하게

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합당한 방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며, 성경이 주는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마28:19~20;롬15:4;고전14:6~9,11~12,27~28;골3:16).

- 9. 성경해석을 위한 무오한 법칙은 성경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구절의 참되고 완전한 의미에 대하여 의문이 생긴 때에는 (참되고 완전한 의미는 여럿이 아니고 하나뿐임), 보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다른 구절을 통해서 연구하고 알아내야 한다(벤1:20~21;행15:15~16).
- 10. 최고의 재판관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외에는 다른 아무도 될 수 없다. 이 재판관에 의하여 종교에 관한 모든 논쟁들이 결정되어야 하고, 교회회의와 모든 신조들과, 고대 교부들의 학설들과, 사람들의 교훈들과, 거짓 영들이 검증되어야 하며, 그의 판결에 우리는 순복해야 한다(마22:29,31;엡2:20;행28:25).

제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

1.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살전1:4;렘10:10) 오직 한 분만 계신다(신6:4;고전8:4,6). 그는 존재와 완전성에서 무한하시고(욥11:7~9,26:14), 가장 순결한 영으로서(요4:24) 볼 수 없고(딤전1:17), 몸과 지체가 없으시며(신4:15~16;요4:24; 눅24:39), 성정(性情)도 없으시다(행14:11,15), 그리고 그는 변치 않으시고(약1:17;말3:6),광대하시고(왕상8:27;렘23:

23~24),영원하시고(시90:2;딤전1:17), 헤아릴수 없으시고 (시145:3), 전능하시고(창17:1;계4:8),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롬16:27), 가장 거룩하시고(사6:3;계4:8), 가장 자유로우시 고(시115:3), 가장 절대적이시다(출3:14).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자신의 변함없으시고 가장 의로운 뜻의 계획을 따라 행하시되(엡1:11)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다(잠16:4;롬11:36). 그는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요일4:8,16),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죄악과 죄를 용서하시고(출34:6~7),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이시다(히11:6). 동시에 그의 심판은 가장 공의롭고 무서우며(느9:32~33),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시5:5~6), 결단코 면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나1:2~3;출34:7).

2.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완전한 생명(요5:26)과 영광(행7:2)과 선(善)(시119:68)과 복(福)(딤전6:15;롬9:5)을 가지고 계신다. 그는 본질에 있어서, 그리고 자기에 대하여 홀로 완전히 자족하신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행17:24~25), 그들에게서 아무 영광도 얻으려 하지 않으신다(욥22:2~3). 다만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들 안에서, 그것들에 의해서, 그것들에게, 그것들 위에 나타내실 뿐이다. 그는 홀로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시요, 모든 만물은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 다(롬11:36). 하나님은 가장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며, 그것들에 의하여, 그것들을 위하여, 또는 그것들 위에 자신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

하신다(계4:11;딤전6:15;단4:25,35). 그의 앞에서는 모든 만물이 드러나며(히4:13) 나타난다. 그의 지식은 무한하시고, 무오하시며,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으신다(롬11:33~34;시147:5).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우연하거나 불확실한 것이 없다(행15:18;겔11:5). 그는 그의 모든 계획과 그의 모든 사역과 그의 모든 명령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시다(시145:17;롬7:12). 천사들과 사람들과 기타, 다른 피조물은 어떠한 경배나 봉사나 순종이든지 그에게 드리는 것이 마땅하며, 그는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서 받기를 기뻐하신다(계5:12~14).

3.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하신 삼위가 단일한 신격에 있으니(요일5:7;마3:16~17,28:19;고후13:13) 성부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아무에게서 도나시거나 나오시지 않으시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고(요1:14,18),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요15:25;갈4:6).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1. 하나님께서는 장차 있을 모든 일을 영원한 때부터 그 자신이 뜻하신 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의하여 자유롭게, 그리고 변치 않게 정해 놓으셨다(엡1:11,2:10;롬11:33;히6:17;롬9:1,5,18).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약1:13,17;요일1:5), 피조물들의 의지를 침해하시는 이도 아니시다. 도리어 제2원인들의 자유나 우발성을 제거시키지 않고, 오히려 확립하시는 분이시다(행2:23;4:23~24;마17:12;요19:11;잠16:33).

- 2.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상되는 조건들에 근거하여 장차 무엇이일어날 수 있는가를 알고 계신다(삼상23:11~12;시139:1~4;마11:21,23;행15:18). 그러나 그가 어떤 것을 작정하실 때,그것이 장차있을 것으로 예지(豫知)하셨거나, 또는 그가 결정된 조건들에 근거하여 반드시 일어날 것으로 예지했기 때문에그 어떤 것을 작정하신 것은 아니다(롬9:11,13,16,18;딤후1:9;엡1:4~5).
- 3.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고(행13:48;롬 8:29~30;딤전5:21), 다른 이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다(잠16:4;마25:41;롬9:22~23;엡1:5~6;유4).
- 4. 이 천사들과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고 변치 않게 계획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의 수효는 확실하고 확정적이므로, 그것은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요10:14~16, 27~29.13:18; 딤후2:19).
- 5.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창세 전에(엡1:4) 자신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목적과(엡1:11), 그리고 그 뜻의 은밀한 계획과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오직 그의 거저 주시는 값없는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어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셨으며(엡1:4,9,11; 롬8:30; 벧전5:10), 그리고 모두 그의 영광스런 은혜를 찬미케하셨다(전3:14;엡1:5~6,12). 그러나 이러한 것은 믿음, 또는 선한 행위, 또는 그들 안에 있는 인내, 또는 피조물들 안에 있는

어떤 다른 것들은 하나님을 감동시켜 저희들을 선택하게 하는 조건들이나 원인이 아니다(엡2:8~9;딤후1:9).

- 6.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작정하신 것처럼, 그는 그의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뜻과 의사(意思)에 의하여, 그 것을 위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미리 정하셨다(벧전1:2;엡1:4~5,2:10;살후2:13).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했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는다(롬5:19;살전5:9~10;딛2:14). 그리고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되며(롬9:11;고전1:9;살후2:13), 의롭다 함을 받으며(롬8:30), 양자되며(엡1:5), 성화되며(엡1:4;살후2:13),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의 능력으로 보호된다(벤전1:5). 오직 택함 받은 자 외에는 다른 아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거나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거나, 의롭다 함을 받거나, 양자되거나, 성화되거나, 구원받지 못한다(사6:9~10;마13:14~15;롬15:8;요일2:19).
- 7.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 위에 행사하시는 그의 주권적인 능력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궁휼을 베풀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신다. 그래서 택함 받은 자 이외의 나머지 인류에 게는 그 자신의 뜻의 측량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서 그들의 죄를 인하여 그들을 버려두시고(마11:25~26), 그리고 그들이 치욕과 진노를 당하도록 작정하시기를 기뻐하셨으니(롬2:8~9,9:14~22;살후2:10~12), 이는 그의 영광스런 공의를 찬미케 하려 하심이다(계15:3~4).

8. 아주 신비한 이 예정의 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성있게 다루어져야 한다(롬9:20,11:33;신29:29).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의 뜻에 유의하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여 그들이 받은 유효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감으로, 그들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벧후1:10). 그렇게 되면이 교리는 복음을 성실하게 순종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미와 경의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 주며(엡1:6;롬11:33), 또한 겸허와 근면과 풍성한 위로를 허락해 줄 것이다(눅10:20;롬8:33,11:5~6,9,20;벤후1:10).

제4장 창 조

- 1.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히1:2;요1:2,3;창1:2;욥26: 13,33:4) 태초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인자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롬1:20;렘10:12;시104:24,33:5~6), 무(無)에서부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6일 동안에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으니,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창1:1~31;히11:3;골1:16;행17: 24).
- 2.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남자 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창1:27), 이성적이고 불멸적인 영혼을 주셨고(창2:7;전12:7;눅23:43;마10:28), 자기 자신의 형상 을 따라(창1:26)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부여해 주셨다. (엡4:24;골3:10). 또한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 주셨고(롬2:14~15), 그 율법을 성취할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전7:29). 그렇지만 그들이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 아래(창3:6;

전7:29), 그들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바, 그 의지란 변하기 쉬웠다(창2:16~17,3:6,17).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 외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창2:1,3:8~11,23). 그들은 그 명령을 지키는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행복하였으며(창3:8~11,23) 또한 피조물들을 다스렸다(창1:26,28;시8:6~8).

제5장 섭리

- 1.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언행심사(단3:34~35;시135:6;행17:25~26,28;备38~41 장)를 보존하시고(히1:3), 감독하시고, 치리하시고, 통치하신 다. 그는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마10 :29~31) 그렇게 하시며,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 하여(잠15:3;시104:24,145:17), 그의 무오한 예지(豫知)와 의지의 자유롭고 불변하는 계획을 따라서 하신다(엡1:11;시3 3:10~11). 이로써 그의 지혜, 능력, 공의, 선하심, 그리고 자 비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다(사63:14;엡3:10;롬9:17;창45 :7;시145:7).
- 2. 제1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에 따라, 모든 일들이 변함이나 틀림이 없이 일어난다(행2:23). 그렇지만 동일한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제2원인들의 성질에 따라 그 모든 일들이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또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작정해두셨다(창8:22;램31:35;출21:13;신19:5;왕상22:28,34;사10:6~7).

- 3. 하나님은 그의 일반적 섭리에는 여러 수단들을 사용하신다(행 27:31,44;사55:10~11;호2:21~22). 그렇지만 그는 그 수 단들 없이(호1:7;마4:4;욥34:10) 그것들에 초월하여(롬4:1 9~21), 그리고 역행하여서도 그의 기쁘신 뜻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신다(왕하6:6;단3:27).
- 4.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선하심이 그의 섭리에 잘 나타나 있다. 그 섭리는 아담의 첫 번째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죄까지도 포함한다(롬11:32;삼하16:10,24:1;대상10:4,13~14,21:1;왕상22:22~23;행2:23;4:27~28). 그런데 그러한 죄들은 단순한 허용에 의한 것이 아니며(행14:16), 하나님은 허용하시되 여러 세대에 가장 지혜롭고 강력하게 제한하시고(시76:10;왕하19:28), 그밖에도 명하시고 주관하시어 그 자신의 거룩한 뜻들을 이루도록 하신다(창1:20;사10:6~7,12). 그러나 죄악성은 오직 피조물에게서 나온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의 조성자이거나 승인자가 아니시며 또한 그러실리도 없다(약1:13~14,17;요일2:16;시1:21).
- 5.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기 친(親)자녀들이 각종 유혹에 빠지며 그들 자신들의 부패한 마음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신다. 이는 그들이 전에 지은 죄들을 인하여 그들이 징계당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부패하고 간사한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깨달아 겸손케 하기 위함이요(대하32:25~26,31;삼하24:1), 또한

그들을 깨우쳐 그들이 보전되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에게 더욱 친밀하고 견실하게 의존토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장차 있을 모든 죄의 유인(誘因)들에 대비하여, 그리고 여러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하여 그들이 더욱 깨어있게 하기 위함이다(고후12:7~9;시73:77:1,10~12;막14:66~72;요21:15~17).

- 6.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는 전에 지은 죄들을 인하여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마음을 강퍅케 하신(롬1:24,26,28; 살후2:11~12) 사악하고 불경건한 자들의 경우,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였을지도 모르는 신적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신29:4;막4:11~12), 때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은사들을 빼앗기도 하신다(마13:12, 25:29). 또한 그들을 버려 두어 그들의 부패함이 기회를 타서자신들을, 죄를 범하는 대상들이 되게도 하신다(신2:30;왕하 8:12~13). 또한 동시에 그들을 그들 자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들과 사탄의 권세에 넘겨주기도 하신다(시81:11~12;살후2:10~12).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쓰시는 수단을 가지고서도 자신들을 강퍅하게 하고 만다(출7:3,8:15,32;고후2:15~16;사6: 9~10,8:14; 벧전2:7~8).
- 7.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특별한 방식을 따라, 그의 섭리로 자기교회를 돌보시며, 모든 일들을 교회에 유익이 되게 처리하신다(딤전4:10; 악9:8~9; 롬8:28; 사43:3~5.14).

제6장 인간의 타락ㆍ죄ㆍ형벌

- 1. 우리의 시조들은 사탄의 간계와 시험에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창3:13;고후11:3). 이것이 그들의 죄이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이를 기쁘게 허용하셨으니, 이는 그것을 명령하시어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이다(롬5:19~21,11:32).
- 2.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의 의(義)를 잃게 되었고, 하나님 과의 교통도 끊어지게 되었다(창3:6~8;롬3:23). 그래서 죄로 죽게 되었고(창2:17;엡2:1), 영과 육의 모든 기능들과 기관들 이 전적으로 더럽혀지고 말았다(창6:5;창6:5;렘17:9;롬3:10 ~18;딛1:15).
- 3. 그들이 온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에, 그들이 범한 이 같은 죄의 죄책은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었다(창1:27~28;2:16~17;행 17:26;롬5:12,15~19;고전15:21~22,45,49). 그로 인하여 바로 그 사망과 부패한 성품이 통상적인 출생법에 의하여 그 시조들에게서 후손들에게로 유전되었다(시51:5;창5:3;욥14:4, 15:14).
- 4. 이 근본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가질 수 없고, 행할 능력도 없고, 선한 것이 그 속에 없으며(롬5:6,8:7,7:8;골1:21), 전적으로 악을 행하는 성향만이 있다(창6:5,8:21;롬3:10~12). 여기에서 모든 실제적인 범

죄들이 나오게 되었다(약1:14~15;엡2:2~3;마15:19).

- 5. 이러한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중생한 사람들 안에도 남아 있다(요일1:8,10;롬7:14,17~18,23;약3:2;잠20:9;전7:20). 그리고 그 부패함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고 억제되고 있다 할지라도 본성 자체와 본성에서 비롯되는 모든행동들은 참으로, 그리고 완전히 죄인 것이다(롬7:5~8,25;갈5:17).
- 6. 원죄와 본죄 등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대한 위반이요, 그것에 반대되는 것으로서(요일3:4), 그것 자체의 성질 때문에 죄인에게 죄책을 가져다 준다(롬2:15,3:9,19). 그 죄책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엡2:3)와 율법의 저주를받게 된다(갈3:10). 그리하여 사망을 당하되(롬6:23), 동시에 영적(엡4:18), 육체적(롬8:20;애3:39), 그리고 영원한 모든불행들을 아울러 당하게 된다(마25:41;살후1:9).

제7장 하나님의 언약

1.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크다. 그러기에 비록 이성적인 피조물들일지라도 마땅히 하나님을 창조주로 순종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무 슨 복이나 상급을 얻어 낼 수 없게 되었다. 오직 하나님 편에 서 자원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서만 가능하였다. 그런데 하 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언약을 수단삼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 다(사40:13,17;욥9:32~33,22:2~3,35:7~8;삼상2:25;시 113:5~6,100:2~3;눅17:10;행17:24~25).

- 2.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은 '행위언약'이었다(창2:16~17). 그 행위언약으로 아담과, 그 안에서 그의 후손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롬10:5,5:12~20). 그 언약의 조건은 완전하고 개별적인 순종이었다(창2:17;갈3:10).
- 3.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행위언약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주께서 두 번째 언약(갈3:21;롬8:3, 3:20~21;창3:15;사42:6)을 맺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언약은 일반적으로 '은혜언약'이라 불리운다(마26:28;갈3:21;히 10:5~10). 그 언약에 의하여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막16:15~16;요3:16; 롬10:6,9;갈3:11), 생명에 이르도록 작정되어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의 성령을 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겔36:26~27;요6:44~45).
- 4. 이 은혜언약은 유언이라는 이름으로, 유언자이신 예수 그리스 도의 죽음과 유언으로 양도되는 영원한 기업과 거기 속해 있는 모든 것들과 관련하여 성경에 자주 말씀되어 있다(히9:15 ~17).
- 5. 이 언약은 율법시대와 복음시대에 각기 다르게 집행되었다(히 1:1~2;고후3:6~9). 언약이 율법시대에는 약속들, 예언들, 제

물들, 할례, 유월절 양,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 전해진 다른 모형들과 의식들에 의하여 집행되었다.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그리스도를 예표(豫表)하였다(히8~10장;롬4:11;골2:11~12;고전5:7).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약속된 메시야(고전10:1~4;히11:13;요8:56)를 믿는 신앙으로 피택자들을 교훈하며 세우는데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것들만으로도 충분하였고 효과적이었다. 그 메시야로 말미암아 그들은 완전한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얻었는데 이를 "구약"이라고 부른다(갈3:7~9,14).

6. 복음시대에는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골2:17) 나타나시게 되자, 이 언약은 말씀 선포와 세례와 주의 만찬인 성례의식으로 집행되었다(마28:19~20;고전11:23~25). 이 의식들은 수적으로는 몇 안 되어 단조롭고, 그리고 외적인 화려함도 없이 집행된다.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그 언약이 모든 민족들(마28:19;앱2:15~19), 곧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더욱 충분하고, 확실하고, 영적인 효과를 가지고 제시되어 있다(히12:22~27;렘31:33~34). 이를 "신약"이라고 부른다(눅22:20). 그러므로 본질 면에서 차이가 있는 두 종류의 은혜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세대에 걸쳐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동일한 연약이 있을 뿐이다(갈3:14,16;행15:11;롬3:21~23,30,4:3,6,16~17,23~24;시32:1;히13:8).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

1.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계획에 따라, 그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택정(擇定)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仲補者) 가되게 하셨다(사42:1; 벤전1:19~20; 요3:16; 딤전2:5). 그래서 선지자(행3:22; 신18:15), 제사장(히5:5~6), 왕(시2:6; 눅1:33), 자기 교회의 머리(엡5:23), 구주(행5:31,13:23; 딛3:6), 만유의 후사(히1:2), 세상의 심판자(행17:31)가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에게 만세 전에한 백성을 주시어 그의 씨가 되게 하셨고(사53:10; 행3; 25~26), 기약한 때에 이르러 그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함을 받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도록 하셨다(딤전2:6; 사55:4~5).

2. 삼위(三位) 중에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오, 성부와 한 본체이시며, 또한 동등하신 분으로서, 때가 차매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다(요1:1,14;요일5:20;빌2:6;갈4:4). 또한 인간의 본성에 속한 모든 본질적인 성질들과일반적인 연약함들을 아울러 취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히2:14,16~17,4:15).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고, 그녀의 피와 살을 받아 태어나셨다(눅1:27,31,35;갈4:4). 그러므로 두 개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별된 본성인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이 전환이나 혼합이나 혼동됨이없이, 한 인격 안에서 분리할 수 없게 서로 결합되었다(눅1:35;골2:9;롬9:5;벧전3:18;딤전3:16). 그 인격은 참하나님이자참 사람이시되, 한 분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롬1:3~4;딤전2:5).

- 3. 신성과 결합된 인성을 입으신 주 예수는 성령으로 성화(聖化)되고 한량없이 기름부음을 받았다(시45:7;눅4:18~19;요3:34;행10:38). 그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었고(골2:3), 성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그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골1:19). 이는 그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히7:26;요1:14;눅4:18~21),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분을(행10:28;히12:24;7:22)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히7:26;요1:14;눅4:18~21). 이 직분은 그가 스스로 취하신 것이 아니요, 성부께서 그를 부르셔서 맡기신 것이다(히5:4~5). 성부께서는 모든 권세와 심판을 그의 손에 맡기시고, 그것을 수행하도록 명령하셨다(요5:22,27;마28:18;행2:36).
- 4. 주 예수께서는 이 직분을 아주 기꺼이 맡으셨으며(시40:7~8; 히10:5~10;요10:18;빌2:8),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는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갈4:4),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으며 (마3:15,5:17;요17:4), 그리고 자신의 영혼이 가장 극심한 고뇌들을 직접 겪으셨으며(마26:37~38;눅22:44;마27:46), 그의 몸으로는 가장 아픈 고통들을 당하셨고(마26:27),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빌2:8),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으나 결코 썩지 않으셨다(행2:23~24,27,13:37;롬6:9). 그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되(고전15:3~5), 그가 고통 당하셨던 바로 그 몸을 가지고(요20:25,27) 또한하늘에 오르셨으며, 거기서 그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셔서(눅24:50~51;행1:9,2:33~36), 간구하시고(롬8:34;히9:24; 7:25), 세상 끝 날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 오실 것이다(행10:42;마13:40~42,16:27,25:31~33;딤후4:1).
- 5. 주 예수께서는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하게 만족시키셨으며(롬5:19;히9:14~16,10:14;엡5:2;롬3:25~26),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하여 화목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얻을 영원한 기업을 값 주고 사시었다(엡1:11,14;요17:2;히9:12,15).
- 6. 구속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성취되었다. 그러나 그 사역의 공덕과 효능과 혜택은 창세로부터 모든 세대에 살던 택함 받은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받아 누려왔다. 그가 성육신하기 전에는, 그것들을 누리는 방편들은 그를 계시하며 상징하는 약속들과 예표들과 희생 제물들이었다. 이 방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곧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양으로 계시되었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갈4:4~5;창3:15;계13:8;히13:8).
- 7.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사역에 있어서 그의 두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을 따라서 행하시되 각 본성은 그 본성 자체에 본래 속한 것을 행하신다(히9:14;벧전3:18). 그러나 그리스도의 위격의 통일성으로 인하여, 한 본성에 본래 속해 있는 것이 성경에서 때로는 다른 본성으로 호칭되어 있는 위격에 돌려져 있음을 볼 수있다(행20:28;요3:13;요일3:16).

8. 그리스도께서는 값을 치르고 구속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구속을 확실하고도 효과있게 적용하시고 전달해 주신다(요6:37,39;10:15~16). 그들을 위하여 대언하시고(요일2:1~2; 롬8:34), 말씀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비밀들을 계시하시고(요15:13,15;엡1:7~9;요17:6), 그의 성령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그들을 설복하여 믿고 순종케 하며, 그들의 심령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주관하신다(요14:6,10:17;롬 8:9,14,15:18~19;고후4:13;히12:2). 또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물리치시되 그의 기이하고 측량할 수 없는 섭리에 가장 부합되는 방법으로 하신다(시110:1;고전15:25~26;말4:2~3;골2:15).

제9장 자유 의지

- 1.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에 선천적 자유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지는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당하거나, 또는 어떤 절대적인 필연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신30:19;마17:12; 요5:40,7:17;약1:14;계22:17).
- 2. 인간은 무죄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그가 아주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며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소유하였다(창1:26;전7:29). 그러나 아직 가변적이어서, 인간은 그 상태에서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다(창2:16~17,3:6).
- 3. 인간은 타락하여 죄의 상태에 있으므로 말미암아, 구원에 수반

하는 영적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롬5:6,8:7;요15:5). 그래서 자연인은 영적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롬3:10,12),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엡2:1,5;골2:13), 그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회개시키거나, 또는 회개에 이르도록 준비할 수가 없다(요6:44,65;롬8:8;엡2:2~5;고전2:14;딛3:3~5).

- 4.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켜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그가 당하고 있는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신다(골1:13;요8:34,36).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적으로 선한 것을 자유롭게 결심하며 행할 수 있게 하신다(빌2:13;롬6:18,22). 그렇지만 그의 남아 있는 부패로 인하여, 선한 것만을 전적으로 결심하지 못하고, 악한 것을 또한 결심한다(갈5:17;롬7:15,18~19,21,23).
- 5. 인간의 의지는 오직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때에만, 전적으로 그리고 한결같이 자유로이 선한 것만을 행할 수 있게 된다(엡 4:13;히12:23;요일3:2;유24).

제10장 유효한 부르심

1.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만을 자신이 정하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때에, 효과적으로 부르시되(롬8:30,11:7;엡1:10~11),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신다(살2:13~14;고후3:3,6). 그래서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불러내어 예수 그리

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에로 인도하신다(롬8:2;앱2:1~5; 딤후1:9~10). 또한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 깨우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시며(행26:18;고전2:10,12;앱1:17~18), 그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그들에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겔36:26). 또한 그들의 의지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한 것을 결심하게 하시며(겔11:19;빌2:13;신30:6겔36:27),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신다(앱1:9;요6:44~45). 그렇지만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나아오게 되어 있으므로 그들은 가장 자유롭게 나아오는 것이다(아1:4;시110:3;요6:37;롞6:16~18).

- 2. 이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며, 결코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미리 하나님 이 보시고서 하는 것이 아니다(딤후1:9;딛3:4~5;엡2:4,5,8~9;롬9:11). 그 점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하고 새롭게 된 연후에는(고전2:14;롬8:7;엡2:5),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며, 또한 이 부르심 가운데서 제공되며 전달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요6:37;겔36:27;요5:25).
- 3. 영아기에 죽은 택함을 받은 영아들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구원받는다(눅18:15~16;요:3:3~5). 성령께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을 따라 역사 하신다(요3:8;행2:38~39;롬8:9). 또한 말씀의 전도에 의하여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능력이 없는 다른 모든 택함 받은 자들

의 경우도 마찬가지다(요일5:12;행4:12).

4. 택함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말씀의 전도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으며(마22:14), 성령의 어떤 일반적인 역사들을 체험할지라도(마7:22,13:20~21;히6:4~5),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에게로 참되게 나아오는 것이 아니며, 그러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요6:64~66,8:24). 또한 기독교 종교를 신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으며, 그들이 본성의 빛과 그들이 신봉하는 종교의 계율에 따라서 그들의 생활을 열심히 꾸려나간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행4:12;요14:6;엡2:12;요4:22,17:3).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단언하며 주장하는 것은 아주유해하며 가증(可憎)된 일이다(요이9~11;고전6:22;갈1:6~8).

제11장 칭의

1. 하나님께서는 유효하게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고 칭하신다(롬8:30,3:24). 칭의(稱義)는 의를 그들에게 주입해 줌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로운 것으로 간주하여 용납해 주시는 것이다. 또한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또는 그들에 의해서 되어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며, 믿음 자체, 믿는 행위, 또는 어떤 다른 복음적인 순종을 그들의 의로 돌림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량을 그들에게 돌림으로써(롬4: 5~8;고후5:19,21;롬3:22,24~25,27~28;딤3:5,7;엡1:7; 렘23:6;고전1:30~31;롬5:17~19), 부르심을 입은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존할 때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다. 그 믿음은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행10:44;갈2:16;빌3:9;행13:38~39;엒2:7~8).

- 2. 이같이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존함에 있어서 믿음은 칭의의 유일한 방편이다(요1:12;빌3:28,5:1). 그렇지만 믿음은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 안에서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다른 구원의 은사들을 수반하고 있으며, 그것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약2:17, 22,26;갈5:6).
- 3.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순종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이같이 의롭다 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빚을 완전하게 갚아 주셨고, 그들을 위하여 자기 아버지의 공의에 대해 합당하고, 참되고 충분한속상(贖償=속죄의 배상)을 드렸다(롬5:8~10,19;딤전2:5~6;向10:10,14;단9:24,26;사53:4~6,10~12). 그렇지만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으셨고 (롬8:32), 그들 대신으로 그의 순종과 속상(贖償)이 받아들여졌으며(고후5:21;마3:7;엡5:2), 또한 이 모든 것이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값없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칭의(稱義)는 오직 값없는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롬3:24;엡1:7). 이로써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와 그의 풍성한 은혜가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하셨다(롬3:26;엡2:7).
- 4.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려고 영원

전부터 작정하셨다(갈3:8; 벧전1:2,19~20; 롬8:30).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차매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갈4:4; 딤전2:6; 롬4:5). 그렇지만 그들이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성령께서 때를 따라 실제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적용시키실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골1:21~22; 갈2:16; 딛3:4~7).

- 5.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함을 받는 자들의 죄들을 계속해서 용서해 주신다(마6:12;요일1:7,9,2:1~2). 그리고 그들은 칭의(稱義)의 상태에서 결코 전락될 수는 없지만(눅22:32;요10:28; 히10:14), 그들의 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성적(父性的)인 진노(震怒)를 살 수 있게 된다. 그러기에 그들이 자신들을 낮추어, 그들의 죄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들이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하기 전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노여움이 풀리지 않게 된다(시89:31~33,51:7~12,32:5;마26:75;고전11:30,32;눅1:20).
- 6. 구약시대 성도들의 칭의(稱義)는 신약시대 성도들의 칭의(稱義) 와 모든 면에서 동일하였다(요8:56;행15:11;롬3:30;갈3:6 ~9;히11:13).

제12장 양자(養子)됨

1.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위하여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허락하신다(엡1:5;갈4:4~5). 이로 말

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효에 들게 되고, 자녀로서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된다(롬8:17;요1:12). 또한 그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게 되며, 그들은 양자의 영을 받으며(롬8:15),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엡3:12;롬5:2;히4:16),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으며(갈4:6),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시103:13), 보호를 받으며(잠14:26),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다(마6:30,32;벧전5:7). 육신의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는 것처럼 징계를 받으나(히12:6), 결코 버림을 받지 않으며(애3:31), 구속의 날까지 인(印)치심을 받으며(엡4:30),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들이다(히1:14,6:12;벧전1:3~4).

제13장 성화(聖化)

1.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여, 그들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함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고전6:1;행20:32;빌3:10;롬6:5~6), 그의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內住)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요17:17;엡5:26;살후2:13) 실제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더욱 거룩해 진다. 즉은 몸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가 파괴되고(롬6:6,14), 그리고 그죄의 몸에서 나오는 몇 가지 정욕들이 점차 약해져 줄어지고(갈5:24;롬8:13), 그들은 점차 모든 구원하는 은혜 안에서 활기를 되찾아 강건하게 되어(골1:11;엡3:16~19), 참된 거룩의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러한 거룩한 생활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고후7:1;히12:14).

- 2. 이 성화는 전인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살전5:23),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얼마간의 부패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요일1:10;롬7:18,23;빌3:12) 그로 인하여 계속적이고 화해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 육체의 소욕(所欲)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 싸운다 (갈5:17;벧전2:11).
- 3. 그 전쟁에서 그 남아 있는 부패한 부분이 당분간은 상당히 우세 할지 모르나(롬7:23), 그리스도의 성결케 하는 영으로부터 힘 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음으로써 중생한 부분이 이기게 되며(롬 6:14;요일5:4;엡4:15~16), 그리하여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벤후3:18;고후3:18),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고후7:1).

제14장 구원에 이르는 믿음

- 1. 믿음의 은사로 말미암아 선택자들은 믿어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히10:39), 그 믿음의 은사는 그들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이며(고후4:13;앱1:17~19,2:8), 통상적으로 말씀의 증거에 의하여 역사한다(롬10:14,17). 또한 말씀과 성례집례와 기도에 의하여(은혜의수단) 믿음의 은혜는 증가되고 강화된다(벧전2:2;행20:32;롬4:11;눅17:5;롬1:16~17).
- 2.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 안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하여(요4:42;살전2:13;요일5:10;행24:14),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는 바를 그리스도인은 참된 것으로 믿는다(살전2:13;요일5:10;행24:14). 그리고 그 말씀의 각 구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행동하되, 명령에는 순종하고(롬16:26), 경고에는 떨고(사66:2), 금세(今世)와 내세(來世)에 대한약속의 말씀은 기꺼이 받아들인다(히11:13;딤전4:8). 그러나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주요한 행위는 은혜언약에 근거하여(요1:12;행16:31;갈2:20;행15:11),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의존하는 것들이다(요1:12;행15:11,16:31;갈2:20).

3. 이 믿음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약한 경우도 있고, 강한 경우도 있으며, 자주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공격을 당하여 약해질수 있으나(히5:13,14;롬4:19~20;말6:30,8:10) 결국 승리를 얻는다(눅22:31~32;엡6:16;요일5:4~5). 또한 여러 모양으로 자라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확신에 이르게 되는데(히6:11~12,10:22;골2:2),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히12:2).

제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

- 1.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에서 오는 은혜이다(숙12:10;행11: 18). 이 회개의 교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교리와 마찬가 지로,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에 의해 전파되어야 한다(눅24:47;막1:15;행20:21).
- 2.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신의 죄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더럽

고 추악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그의 의로운 율법에 반대되는 것임을 눈으로 보고 깨닫는다. 또한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때,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게 되며, 그리하여 모든 죄에서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겔18:30~31,36:31; 사30:22;시51:4;렘31:18~19;욜2:12~13;암5:15;시119:128;고후7:11). 그리고 그의 모든 계명들을 좇아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또한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시119:6,59,106;눅1:6;왕하23:25).

- 3. 회개가 죄에 대한 어떤 속량이 되거나, 죄 용서의 어떤 원인이 되는 것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겔36:31~32,16:61~63). 죄 사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주시는 은혜의 행위이다(호14:2,4;롬3:24;엡1:7). 그렇지만 회개는 모든 죄 인들에게 필요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회개함이 없이는 죄 사함을 기대할 수가 없다(눅13:3,5;행17:30~31).
- 4. 아무 죄라도 그것이 너무 작은 것이기 때문에 정죄(定罪)를 받지 않아도 되는 죄가 없는 것처럼(롬6:23,5:12;마12:36), 아무 죄라도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정죄를 가져오는 죄란 없는 것이다(사55:7;롬8:1;사1:16,18).
- 5. 사람들은 일반 회개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각자 자기의 죄들을 낱낱이 개별적으로 힘써 회개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다(시 19:13;눅19:8;딤전1:13,15).

6.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개인적으로 고백해야 하며,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간구해야 한다(시51:4~5,7,9,14,32:5~6). 그렇게 간구할 때, 그리고 죄들을 버릴 때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게 된다(잠28:13;요일1:9). 그러므로 자기의 형제나 또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험담한 사람은 사적으로 혹은 공적으로, 자기의 죄를 기꺼이 고백하며 통회하고, 손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회개한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약5:16;눅17:3~4;수7:19). 그렇게 되면 그들은 회개한 그 사람과 화목해야 하며, 사랑으로 그를 영접해 주어야 한다(고후2:8).

제16장 선행(善行)

- 1. 선행이란 하나님께서 단지 거룩하신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들만을 가리킨다(미6:8;롬12:2;히13:21). 즉 성경의 보증이 없이, 맹목적인 열심에 의한 것이나, 선의(善意)를 가장하여 사람들에 의해 고안된 것들은 선행이 아니다(마15:9;사29:13;벧전1:18;롞10:2;요16:2;삼상15:21~23).
- 2.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선행은 참되고 살아 있는 믿음의 열매들이요 증거이다(약2:18,22). 그리고 신자들은 이 선행을 통하여 그들의 감사함을 표하며(시116:12~13; 벧전2:9), 그들의 확신을 견고케 하며(요일2:3,5;벧후1:5~10), 형제들에게 덕을 세우며(고후9:2;마5:16), 복음에 대한 신앙고백을 돋보이게 하며(딛2:5,9~12;딤전6:1), 대적자들의입을 막고(벧전2:15),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벧전2:12;빌1:

11;요15:8).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므로(엡2:10)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결국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롬6:22).

- 3. 선을 행할 수 있는 신자들의 능력은 결코 그들 자신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온다(요1 5:4~6;겔36:26~27). 그리고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으려면, 이미 받은 은혜 이외에도 그들 안에서 역사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바로 그 성령의 실제적인 감화가 필요하다(빌2:13,4:13;고후3:5).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없으면 아무런 의무도 실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여 나태에 빠져서는 안 되며,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써 불일듯하게 해야 한다(빌2:12;히6:11~12;사64:7;딤후1:6행26:6~7;유20~21).
- 4. 순종을 통해서 금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정도의 선행에 도달한 사람들일지라도, 의무 이상의 공(功)을 세운다든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결코 행할 수가 없다. 이는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마저도 다 행할 수 없기때문이다(눅17:10;느13:22;욥9:2~3;갈5:17).
- 5. 우리는 우리의 최선의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죄 사함이나 영생을 얻을 만한 공로를 세울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우리의 선행들과 장차 있을 영광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으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무한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

다(롬3:20,4:2,4,6;엡2:8~9;딛3:5~7;롬8:18).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보태어 드릴 수가 없고, 우리들의 전에 범한 죄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시16:2;욥22:2~3,35:7~8). 가령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만 우리의 의무를 행한 것뿐이요, 우리는 무익한 종들에 지나지 않는다(눅17:10). 실로 우리의 행위들이 선한 것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데 있다(갈5:22~23). 그러나 그 선행이 우리들에 의해 행하여지는 까닭에 여러 가지 연약성과 불완전성으로 더럽혀지고 혼잡되어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견디어 낼 수가 없다(사64:6;갈5:17;롬7:15,18;시143:2,130:3).

-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납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는 것이다(엡1:6;벧전2:5;출28:38;창4:4;히11:4). 그러나 그들이 에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흠이 없거나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뜻에서가 아니라(욥9:20;시143:2),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들을 보시기 때문에, 비록 많은 연약성과 불완전성을 수반하고 있을지라도, 성실하게 행한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뜻이다(히13:20;고후8:2;히6:10;마25:21,23).
- 7.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행위들은 가령 그 자체로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이요, 그들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하고 유익한 것들일지라도(왕하10: 30~31;왕상21:27.29;발1:15~16.18), 그것들이 믿음에 의

하여 청결하게 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창4:5;히11:4,6), 말씀을 좇아서 올바르게 행해진 것도 아니다(고전13:3;사1:12).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지도 않았기 때문에 (마6:2,5,16), 그것들은 죄악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게 할 수도 없다(학2:14;딛1:15;암5:21~22;호1:4;롬9:16;딛3:5). 그렇지만 그같은 행위들을 그들이 게을리하게 되면 그것은 더욱 죄악되며, 하나님을 더욱 불쾌하게 하는 일이 된다(시14:4, 36:3;욥21:14~15;마25:41~43,45,23:23).

제17장 성도의 견인(堅忍)

- 1.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안에서 용납해 주시고, 그의 성령으로써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될 리 없다.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그 상태에 꾸준히 인내하여 머물러 있게 되며, 또한 영원히 구원받는다(빌1:6; 벤후1:10; 요10:28, 29; 요일3:9; 벤전1:5.9).
- 2. 성도의 이 견인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치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과 예정의 불변성(딤후2:18~19;렘31:3)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과(히10:10,14,13:20~21,9:12~15;롬8:33~39;요17:11,24;눅22:32;히7:25),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은 것이요(요14:16~17;요일2:27,3:9), 은혜언약의 본질에 달려있다(렘32:40). 이와

같은 모든 것에서 또한 견인의 확실성과 무오성이 나오는 것이다(요10:28;살후3:3;요일2:19).

3. 그러나 성도는 사탄과 이 세상의 시험을 받으며, 그들 안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한 요소가 깊이 퍼져 있는가 하면, 그들을 보존해 주는 은혜의 방편들을 무시함으로 해서 중한 죄에 빠질 수있으며(마26:70,72,74), 그리고 얼마 동안 그 죄 가운데 거하기도 한다(시51:14).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며(사64:5,7,9;삼하11:27), 그의 성령을 근심케 하고(엡4:30), 그들이 받은바 은혜와 위로의 얼마를 상실하게 된다(시51:8,10,12;계2:4;아5:2~4,6). 이로써 그들의 양심은 상처를 받으며(시32:3~4,51:8), 남을 해치거나 중상하여(삼하12:14)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시89:31~32;고전11:32).

제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

1. 위선자나 그 밖에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상태에 있는 줄로 알고서 거짓된 소망과 육적인 억측으로 헛되게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으나(욥8:13~14;미3:11;신29:19;요8:41),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사라진다 (마7:22~23). 그러나 주 예수를 참으로 믿고, 신실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며,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을 따라서 힘써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며(요일2:3,3:14,18~19,21,24,5:13),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중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다. 이 소망은 결코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롬5:2,5).

- 2. 이 확실성은 허황된 소망에 근거하고 단순한 억측에 지나지 않는 그럴듯한 확신이 아니고, 신앙에서 오는 무오한 확신이다(히6:11~12,17~19). 이 확신은 구원의 약속들의 신적 진리와(히6:17~18) 이 같은 약속들을 하게 된 그 은혜들에 대한 내적 확증(벤후1:4~5,10~11;요일2:3,3:14;고후1:20)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는 성령의 증거등에 기초하고 있다(롬8:15~16). 이 영은 우리의 기업에 대한보증이며, 이 영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인(印)치심을 받았다(엡1:13~14;4:30;고후1:21~22).
- 3. 절대로 틀림없는 이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라, 참 신자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많은 난관들에 부딪치고 난 연후에야 그 확신을 갖게 된다(요일5:13;사50:10;막9:24;시88, 77:1~12).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들을 그가 성령을 통하여 알 수 있기 때문에, 색다른 특별한계시 없이도, 통상적인 방편들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그 확신에 도달할 수가 있다(고전2:12;요일4:13;히6:11~12;엡3:17~19). 그러므로 모든 신자에게는 자기에 대한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할 의무가 있다(벤후1:10).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의 마음은 성령 안에서 화평과 희락으로 넘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로 넘치며, 또한 복종하는 일에 있어서는 힘있고 유쾌하게 된다(롬5:1~2,5,14:17, 15:13;엡1:3~4;시4:6~7,119:32). 이같은 것들은 확신에서오는 당연한 열매들이다. 그러므로 이 확신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 결코 방탕한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된다(요일2:1~2,롬6:1~

2;딛2:11~12,14;고후7:1;롬8:1,12;요일3:2~3;시130:4; 요일1:6~7).

4. 참 신자일지라도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흔들리며, 약해지며 일시 중단될 수 있는데, 이같은 일들은 그 확신을 보존하는 수단을 게을리하거나, 양심에 상처를 주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어떤 특별한 죄에 빠지거나 어떤 갑작스럽거나 강렬한 시험에 의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의 빛을 숨기시어 그를 경외하는 자일지라도 흑암 중에 행하며 전혀 빛이 없게 하심으로 말미암는다(아5:2~3,6;시51:8,12,14;엡4:30~31;시77:1~10;마26:69~72;시31:22,88;사1:10). 그렇지만 하나님의 씨와 믿음의 생활이나, 또는 그리스도와 형제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의무에 대한 신실한 마음과 양심이 결코 전적으로 그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확신이 적당한 때에 소생하게 되는 것이며(요일3:9;눅22:32;욥13:15;시73:15), 또한 그간의 심한 절망에서도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버텨 내는 것이다(미7:7~9;렘32:40).

제19장 하나님의 율법

1.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율법을 행위언약으로 주셨는데, 그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온전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순종할 의무가 있게 하셨다. 동시에 그 율법을 성취하면 생명을 주시겠다

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깨뜨리면 사망을 주겠다고 경고하셨으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에게 부여하셨다(창2:16~17;신30:18;요7:17;롬2:14~15,5:12,10:5;갈3:12;호6:7;계22:17).

- 2. 이 율법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의에 대한 완전한 규칙으로 존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의의 규칙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의 형식으로 두 돌 판에 새겨 전해 주셨는데(약1: 25;2:8,10~12;롬13:8,9;신5:32;10:4),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본분을 포함하고 있고, 나머지 여섯 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본분을 포함하고 있다(마22:37~40;출20:3~18).
- 3. 일반적으로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이 율법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미숙한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식법(儀式法)을 주셨다. 거기에는 몇 가지 모형적인 의식(儀式)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예배에 대한 것으로써,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서 베풀어질 은혜를, 그가 행하실 일들, 그가 받을 고난들, 그리고 그의 공로로 주어질 유익들을 예표(豫表)하고 있으며(히9:10:1;갈4:1~3;골2:17), 또한 부분적으로는 도덕적인 의무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이 제시되어 있다(고전5:7;고후6:17;유23). 그런데 이 모든 의식법들은 지금 신약시대에는 폐기되었다(골2:14,16~17;단9:27;엡2:15~16).
- 4. 하나님께서는 정치적 집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재판에 관한 율법들을 주셨다. 그러나 그 재판법은 그 백성의 나라와 함께 시효가 만료되었으며, 따라서 그것의 일반적인 원 리는 적용될 수 있겠으나, 지금은 다른 아무에게도 구속력이 없 다(출21,22:1~29;창49:10;벧전2:13~14;마5:17,38~39; 고전9:8~10).

- 5. 도덕법은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구속력이 있으므로 해서 그것에 복종케 한다(롬13:8~10;엡4:2;요일2:3~4,7~8). 그리고 그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다(약2:10~11).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으로 도덕법의 이같은의무를 결코 폐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화시키신다(마5:17~19;약2:8;롬3:31).
- 6. 참 신자들은 행위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다거나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롬6:14;갈2:16,3:13,4:4~5;행13:39). 그렇지만 불신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참 신자들에게도 행위언약으로서의 율법이아주 유용한 것은 그것이 생활의 법칙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들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알려 줌으로써, 그들을 지도하고 강제하여 그것에 따라 행하게 하기 때문이다(롬7:12,22,25;시119:4~6;고전7:19;갈5:14,16,18~23). 또한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생활이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을 발견케 하고(롬7:7,3:20), 그렇게 해서 자신들을 살핌으로써,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고, 죄를 인하여 겸비하게 하고, 죄를 증오

하기에 이르게 하며(약1:23~25;롞7:9.14,24), 또한 그리스 도와 그의 완전한 순종이 자기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분 명하게 알게 해 주기 때문인 것이다(갈3:24;롬7:24~25.8 :3~4). 마찬가지로 중생한 자에게도 그들의 부패를 억제하는 데 행위언약으로서의 율법이 유용함은 그것이 죄를 금하기 때 문이다(시119:101.104.128). 그리고 그 율법의 경고들은 비 록 중생한 자들이 율법에 경고되어 있는 저주로부터는 해방되 어 있지만(스9:13~14;시89:30~34), 그들이 지은 죄들로 인 하여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이생에서 어떠한 고통들을 기대해야 하는가를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역시 마 찬가지로 율법의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율법을 성취하는 때 그들에게 어떠한 축 복을 주시는가를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레26:1~14;고후6 :16;엡6:2,3;시19:11,37:11;마5:6). 그러므로 율법이 선을 장려하고 악을 막는다고 해서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삼가는 것은 그것이 곧 그가 율법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지 않다는 증 거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롬6:12;벧전3:8~12;시34:12~ 16;히12:28~29).

7. 앞서 언급한 율법의 용도는 복음의 은혜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조화된다(갈3:21). 그리스도의 영은 인간의지를 억제하고 율법 안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일을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해 준다(겔36:27;히8:10;렘31:33).

제20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 1. 그리스도께서 복음시대의 신자들을 위하여 값 주고 사신 자유는 죄책과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 그리고 도덕법의 저주로부 터 해방되는 것이다(딛2:14;살전1:10;갈3:13). 그리고 현재 의 이 악한 세상, 사탄의 굴레와 죄의 지배로부터 신자들이 벗 어나는 것과(갈1:4;골1:3;행26:18;롬6:14), 환란의 고통과 죽음의 독침과 무덤의 위세와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과(롬 8:1.28;시119:71;고전15:54~57). 또한 하나님께 신자들이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과(롬5:1~2), 노예적인 공포심에서가 아 니라 어린애 같은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순종하 는 것 등이다(롞8:14~15;요일4:18), 이상의 모든 것은 율법 시대의 신자들에게도 있었다(갈3:9.14).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가 더욱 확대되어, 유대교회가 복종하였던 의식법의 멍에로부터 해방되었다(갈4:1~3,6~7,5:1;행15:1 0~11). 그래서 더욱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히4:14,16,10:19~22), 성령과의 교통을 율법시대 의 신자들이 통상적으로 누렸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충만 하게 누리게 되었다(요7:38;고후3:13,17~18).
- 2. 하나님만이 양심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다(약4:12;롬14:4). 그는 신앙이나 예배에 관한 일에 있어서(행4:19,5:29;고전7: 23;마23:8~10;고후1:24;마15:9) 자기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배치되거나 혹은 벗어나는 인간들의 교훈들과 계명들로부터 양심을 해방시켜 주셨다. 그러므로 그러한 교훈들을 믿는다거나, 또는 양심을 범하여 그러한 계명들에 순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다(골2:20,22~23;갈1:10,2:4~5;5:1). 또한 맹신(盲信)과 맹종(盲從)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과 이성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다(롬10:17,14:23;사8:20;행17:11;요 4:22;호5:11;계13:12,16~17;렘8:9).

- 3.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하여 죄를 범하거나, 정욕을 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은 우리가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건짐을 받아, 평생토록 주님을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섬기려는데 있다(갈5:13; 벧전2:16; 벤후2:19; 요8:34; 눅1:74~75).
- 4. 하나님께서 정하여 세우신 권세들과 그리스도께서 값 주고 사신 자유는 양자(兩者)가 서로 충돌하여 파괴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의도된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서로를 시인하여 보존되도록 의도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하여, 합법적인 권세나, 그것이 국가적인 것이든 아니면 교회적인 것이든 간에, 그 권세의 행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령을 반항하는 것이 된다(마12:25;벧전2:13~14,16;롬13:1~8;히13:17). 그리고 신앙과 예배 또는 시민생활에 관해 본성의 빛이나, 기독교의 일반 원리나, 또는 경건한 권세에 반대되는 그러한 견해들을 발표하거나, 그러한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그릇된 견해나 소행들이 본격적으로나 그 것들을 발표하거나 행사하는 방법 면에서,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세우신 외적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경우, 그러한 사람들이책망을 받고, 교회의 견책을 받아 고소당하는 것은 마땅하다(마18:15~17;고전5:1,5,11,13;요이10~11;살후3:14;딛3:10).

제21장 예배와 안식일

- 1. 본성의 빛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 하나님은 만물에 대하여 통치권과 주권을 행사하신다. 그는 선하시며, 만물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인간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부르며, 신뢰하며, 그리고 섬겨야 하는 것이다(롬1:20;행17:24;시18:3,31:23,119:68,162:8;렘10:7;10:12;수24:14;막12:33).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그자신이 친히 정해 주셨으므로 그자신의 계시된 뜻 안에서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상상이나 고안, 또는 사탄의 지시에 따라 어떤 가견적(可見的)인 구상(具象)을 사용하거나,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다른 방법을 따라서는 하나님을 예배할수가 없다(신12:32;마15:9;행17:25;마4:9~10;신5:12~15;출20:4~6;골2:23).
- 2. 성경적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또한 오직 그에게만 드려야 한다(마4:10;요5:23;고후13:14). 천사나, 성인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에게도 드려서는 안 된다(골2:18;계19:10;롬1:25). 그리고 아담의 타락 이후로는 중보자 없이 드릴 수가 없고, 또한 그리스도 이외의 어떤 다른 중보로도 드릴 수가 없다(요14:6;딤전2:5;엡2:18;골3:17).
- 3.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성경적 예배의 한 특별한 요소로써 (빌4:6),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신다(시65:2). 기 도가 열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자(聖子)의 이름으로(요14:

13~14; 벤전2:5),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롬8:26),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요일5:14) 사려 분별과 경외심과 겸손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하되(시47:7;전5:1~2;히12:28;창18:27;약5:16,1:6~7;막11:24;마6:12,14~15;골4:2; 앱6:18), 만일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경우에는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한다(고전14:14).

- 4. 기도는 합당한 것들과(요일5:14) 모든 종류의 생존하는 사람들이나, 장차 생존하게 될 자들을 위해서 하되(딤전2:1~2;요17:20;삼하7:29;룻4:12), 죽은 자들이나(삼하12:21~23;눅16:25~26;계14:13)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자들을 위하여는 하지 말 것이다(요일5:16).
- 5.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행15:21;계1:3), 흠 없는 설교와(딤후4:2),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려 분별과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듣는 것과(약1:22;행10:33;마13:19;히4:2;사66:2), 마음에 은혜로 시편을 노래하는 것과(골3:16;엡5:19;약5:13),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를 합당하게 집행하고 값있게 받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통상적인 성경적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다(마28:19;고전11:23~29;행2:42). 이것들 외에도 맹세와(신6:13;느10:29), 서원과(사19:21;전5:4~5), 엄숙한 금식과(욜2:12;에4:16;마9:15;전7:5),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감사 등은(시107;에9:22) 몇차례 적당한 시기에 거룩하고 성경적 방식으로 실시할 것이다(히12:28).

- 6. 지금 복음시대에 기도나 기타의 다른 예배행위는 그것이 시행되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장소를향하여 드릴 필요가 없으며, 그 장소 여하에 따라서 기도나 예배행위가 더 잘 열납되는 것도 아니다(요4:21).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디에서나(말1:11;딤전2:8), 신령과 진리로 드려야한다(요4:23~24). 각 가정에서(렘10:25;신6:6~7;욥1:5;삼하6:18,20;벧전3:7;행10:2), 매일(마6:11), 그리고 은밀한중에 개별적으로 드릴 수도 있고(마6:6;엡6:18), 더욱 엄숙하게 공적인 모임들에서 드릴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이나 섭리에 의하여 기도나 예배를 드리도록 요구하실 때에, 경솔하게 행하거나 고의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려서는 안된다(사56:6~7;히10:25;잠1:20~21,24,8:34;행13:42;눅4:16;행2:42).
- 7.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을 정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합당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도덕적이며 영구적인 명령으로써,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레(七日) 중 하루를 안식일로 택정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하셨다(출20:8,10~11;사56:2,4,6~7). 그 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는 한주간의 첫째 날로 바뀌어졌다(창2:2~3;고전16:1~2;행20:7). 성경에는 이 날이 주의 날(主日)로 불리워져 있다(계1:10).이 날은 세상 끝 날까지 교회의 안식일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출20:8,10;마5:17~18).

8. 그러므로 안식일은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하고, 그들의 일상적인 일들을 미리 정돈한다. 그리고 그날에 하루 종일 그들 자신의 일과, 그들의 세상적인 일에 대한 말이나 생각, 그리고 오락을 중단하고 거룩하게 안식할 뿐만 아니라(출20:8,16:23,25~26,29~30,31:15~17;사58:13;느13:15~19,21~22), 모든 시간을 바쳐서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부득이 해야 할필요가 있는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해야 한다 (사58:13;마12:1~13).

제22장 합당한 맹세와 서원

- 1. 합당한 맹세는 경건한 예배의 한 요소이다(신10:20). 예배 시, 때를 따라, 맹세하는 사람이 엄숙하게 하나님을 불러서 그가 주 장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증거 하시게 하며, 그뿐 아니라 그는 진리에 따라 판단하고 또 그가 서원한 것에 허위가 없는가 판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출20:7;레19:12;고후1:23;대하6:22~23).
- 2.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맹세해야 한다. 그리고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신6:13). 그러므로 그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으로 망령되이 또는 경솔하게 맹세하거나 기타 다른 것으로 맹세하게 되면, 그것은 죄악이 되고 가증스런 것이다(출20:7;렘5:7;마5:34,37;약5:12). 맹세는 그 중요성과 시기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보증된 것으로 신약성경에도 마찬

가지로 허락되었다(히6:16;고후1:23;사65:16). 따라서 합당한 맹세는 합법적인 권세로 말미암아 요구될 때에는 이를 행해야 한다(왕상8:31;느13:25;스10:5).

- 3. 맹세를 하는 자는 누구나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엄숙한 행위임을 충분하게 생각해야 하며, 맹세할 때에 자기가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공언하여서는 안 된다(출20:7;렘4:2). 또한 누구든지 선하고 정당한 것 그리고 그렇게 믿어지는 것과, 자기가 행할 능력이 있거나 하기로 결심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에 대해서도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창24:2~3,5~6,8~9). 그와 동시에 합법적인 권세가 선하고 정당한 것에 대한 맹세를 요구하는 때에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죄가 된다(민5:19,21;느5:12;출22:7~11).
- 4. 맹세는 애매모호하지 않게, 분명하고 평범한 말로 해야 한다. 맹세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어서는 안 된다(렘4:2;시24:4). 그러나 죄가 되지 않는 것을 맹세하게 된 때에는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실행해야 하며(삼상25:22,32~34;시15:4), 비록 이단자나 불신자들에게 한 경우일지라도 어겨서는 안된다(겔17:16,18~19;수9:18~19;삼하21:1).
- 5. 서원은 서약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서원을 행할 때도 같은 경건한 배려와 성실성을 가지고 해야 한다(사19:2 1;전5:4~6;시61:8,66:13~14).
- 6. 서원은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만 할 것이다(시76:11;렘44:25~26). 그 서원이 열납되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과 의무감에서 해야 한다. 또한 받은바은혜에 감사하여, 아니면 우리가 원하던 바를 얻은 것을 인하여 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의무나 그 밖의 것들이 그 서원을 갚는데 적절하게 이바지하는 한, 그 서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필요한 의무와 그 밖의 것들을 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신23:21~13;창28:20~22;삼상1:11;시1:14,66:13~14;시132:2~5).

7.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해져 있는 것에 대하여 서원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되어 있는 의무를 방해하는 것이나, 또는 그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그 서원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약속이나 능력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행23:12,14; 막6:26;민30:5,8,12~13).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교황청의 수도원에서의 종신 독신 생활과 궁핍 생활과 규칙적인 순종의 생활에 대한 서원들은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는 것들로써, 미신적이고 죄악된 올무들이므로,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거기에빠져서는 안된다(마19:11~12;고전7:2,9;엡4:28;벧전4:2;고전7:23).

제23장 국가 공직자(公職者)

1. 온 세상의 최고의 주(主)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위정자들을 세우셔서 자기 아래 두시고 자기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

에게 무력(武力)을 허용하였으니 이는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는 한편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기 위함이다(롬13:1~4; 벤전2:13~14).

- 2. 그리스도인들이 공직자로 임명될 때에 공직(公職)을 맡아 수행하는 것은 적법하다(잠8:15~16;롬13:1~2,4). 그 직분에 종사함에 있어서 각 나라의 건전한 법률에 따라 특별히 경건과 공의와 평화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시2:10~12;딤전2:2;시82:3,4;삼하23:3;벧전2:13). 그 목적을 위하여 지금 신약시대에는 정당하고 필요한 경우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정당하다(눅3:14;롬13:4;마8:9~10;행10:1~2;계17:14,16).
- 3. 위정자들은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거나(대하26:18) 천국 열 쇠의 권세를(마16:19) 맡을 수 없다. 또는 그들이 조금이라도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자녀를 양 육하는 아버지와 같이 참된 교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그 럴 때에는 참된 교회의 어느 한 교파를 다른 교파들보다 우 대하지 말고, 모든 교역자들이 그신성한 직책을 완전히 자유롭게 수행하며, 폭력이나 위협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사49:23).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교회 안에 일정한 치리제도와 권징법을 제정하셨으므로, 어떤 참된 교회든지 자발적인 교회 회원들이 그들의 신앙고백과 신념에 따라 교회규율을 시행할 때국가의 법률이 간섭하거나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시105:15). 정부의 위정자들의 임무는 국민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해주되, 어떤 사람도 경건이나 불경건을 구실로 하여 어느 누가 다른 사람에게 모욕적인 언동이나 폭력이나 학대나 명예훼손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고, 또한 명령을 발하여 모든 종교 적인 교회의 집회들이 훼방이나 소동이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적당한 보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삼하23:3;딤전2:1~2;롬 13:4).

4.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딤전2:1~2),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며(벧전2:17),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을 바치고(롬13:6,7), 그들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하고 양심을 위하여 그들의 권한에 복종하는 것은 백성들의 의무이다(롬13:5;딛3:1).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신봉하는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그 위정자의정당하고 적법한 권위를 인정치 않거나 순종치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벤전2:13~14,16).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롬13:1;왕상2:35;행25:9~11;벤후2:1,10~11;유8~11). 하물며 위정자들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때에 교황이 그들에 대하여, 또는 그들의 백성에 대하여 어떤 권한이나 사법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만일 교황이 그들을이단으로 정죄하거나 또는 기타의 다른 구실로 그들의 통치권이나 생명을 빼앗을 권한은 전혀 없다(살후2:4;계13:15~17).

제24장 결혼과 이혼

1.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어떠한 남자이든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또한어떠한 여자이든 한 명 이상의 남편을 동시에 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창2:24;마19:5~6;잠2:17).

- 2.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도록 제정되었다(창2:18). 또한 합법적인 자손들을 통하여 인류가 번성하고, 경건한 후손들을 통하여 교회가 번성하고(말2:15), 부정(不貞)을 막기 위하여 제 정된 것이다(고전7:2,9).
- 3. 결혼에 응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결혼할 수 있다(히13:4;딤전4:3;고전7:36~38;창24:57~58).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안에서만 결혼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전7:39). 그러므로 참된 개혁신앙을 신봉하는 자는 불신자들이나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나 기타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되며, 생활면에서 노골적으로 사악하거나 저주받을 만한 이 단을 주장하는 자들과 경건한 자가 결혼함으로 해서 명에를 같이해서는 안된다(창34:14;출34:16;신7:3~4;왕상11:4;느1 3:25~27;말2:11~12;고후6:14).
- 4. 성경 말씀으로 금해져 있는 혈족이나 인척간에는 결혼이 불가하다(레18;;고전5:1;암2:7). 그러한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살게 되는 그 같은 근친상간적인 결혼은 어떤 인간의법이나 단체의 승인에 의해서도 적법한 것으로 되어 질 수가 없다(막6:18;레18:24~28). 남자는 자기 자신의 골육지친뿐만아니라 자기 아내의 골육지친 중의 아무와도 결혼해서는 안 되고, 여자도 자기 자신의 골육지친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의 골육지친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 5. 간음이나 사통(私通)은 비록 약혼 후에 범했을지라도 결혼전 에 발견되면, 순결한 측에서 약혼을 파기할 수 있는 정당한 근

거가 된다(신22:23~24). 결혼 후에 범한 간음죄의 경우에는 순결한 편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마5:31~32), 이혼 후에 는 죄를 범한 쪽이 죽었다는 듯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합법적이다(마19:9).

6. 사람의 마음은 부패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결혼식을 통하여 합해 주신 사람들을 부당하게 나누려고 이혼사유를 찾아내려는 경향이 있으나 간음 또는 교회나 세상의 법률에 의해서도 결코 어찌할 수 없는 고의적인 별거 외에는 결혼의 속박(束縛)을 해소하기에 충족한 사유가될 수 없다(마19:6,9). 이혼하는 경우에는 공적인 법적절차를 밟아야 되고, 당사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사건에서 자신들의 의지와 판단에 의해서 처리해서는 안 된다(신24:1~4;스10:3).

제25장 교회

- 1. 보편적 또는 우주적 교회는 무형적이다. 이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아래 하나로 지금까지 모여 들었고 지금 모여들고 있으며 장차 모여들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엡1:10,22~23,5:23,27,32;골1:18).
- 2. 복음시대에는 유형교회 또한 보편적이요, 우주적인 교회이다. 율법시대처럼 한 민족에게만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보이는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

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창17:7;막10:13~16; 행2:39;롬11:16;고전7:14). 그리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왕국이며(마13:47;골1:13), 하나님의 집이며, 권속이다(엡2:19,3:15), 이 교회를 떠나서는 즉, 교회 밖에서는 통상적으로 결코 구원 받을 수 없다(행2:47).

- 3. 그리스도께서 보이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의한 복음 사역의 방편들을 주셨다. 그것은 현세에서부터 세상 끝 날까지 성도들을 완성하시려는 목적인데, 그의 약속대로 그와 그 성령의 임재에 의하여 복음사역의 방편들을 효과적으로 작용케 하신다(사59:21;마28:19~20;고전12:28;엡4:11~13).
- 4. 보편적 교회의 식별되는 정도가 어떤 때에는 더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덜하기도 한다(롬11:3~4;계12:6,14). 그것은 그지체라고 할 수 있는 개체(個體)교회의 상황에 의해서 알려진다. 개체교회에서 복음전달과 그 받아들임이 순수한가, 혹은 덜 순수한가? 하나님 중심한 성례나 규례나 예배의 시행이 순수한가, 덜 순수한가? 이에 따라서 참된 보편적 교회에 대한 식별정도가 결정된다(고전5:6~7;계2~3장).
- 5. 지상에서는 가장 순수한 교회라도 불결함과 오착(製錯)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마13:24~30,47;고전13:12;계2~3장). 어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고 사탄의회라고 할 만큼 깊이 타락하였다(롬11:18~22;계18:2). 그러나 땅 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시72:17,102:28;마16:18,28:19~20).

6.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의 머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골1:18). 로마의 교황은 어떤 의미로든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마 23:8~10;살후2:3~4,8~9;엡1:22).

제26장 성도의 교통

- 1. 머리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 안에서 그와 교제를 갖는다(요일1:3;엡3:16~19;요1:16;업2:5~6;빌3:10;롬6:5~6;딤후2:12). 그리고 성도들은 사랑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있는 까닭에,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혜안에서 교통한다(엡4:15~16;고전12:7,3:21~23;골2:19). 또한 피차 덕을 세워 사람에게 안팎으로 유익되게 하는 의무들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다(살전5:11,14;롬1:1~12,14;요일3:16~18;갈6:10).
- 2. 공적으로 성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그들 상호간에 덕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다른 신령한 봉사를 하는 일과, 또한 그들의 각양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물질로 서로 도와주는 일에 있어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해야한다(히10:24~25;행2:42,26;사2:3;고전11:20). 이같은 성도들의 교통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디에서나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져야한다(행2:44~45;요일3:17;고후8:9;행11:29~30).
- 3.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갖는 이 교통으로 말미암아, 그들

이 그리스도의 신격의 본체를 소유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어느면에서든지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이들 중에어느 하나라도 긍정한다면 그것은 불경건하고 신성 모독적인것이 된다(골1:18~19;고전8:6;사42:8;딤전6:15~16;시45:7;히1:8~9). 또한 성도들 상호간에 갖는 교통으로 말미암아, 각자가 갖고 있는 물건이나 재산의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결코침해되는 것은 아니다(출20:15;엡4:28;행5:4).

제27장 성례(聖禮)

- 1. 성례는 은혜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호(標號)요 인호(印號)이다 (롬4:11;창17:7,10).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는데 (마28:19;고전11:23), 이는 그리스도와 그가 주시는 은혜를 나타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받는 유익을 확증하며(고전10:16,11:25~26;갈3:27,17),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나머지 사람들을 볼 수 있게 구별하며(롬15:8;출12:48;창 34:14), 교회에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엄숙하게 참예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롬6:3~4;고전10:16,21,16:21).
- 2. 각 성례마다 그 표호와 그 표호에 의해 의미되는 것 사이에는 영적인 관계, 즉 성례전적인 상징적 연합이 있다. 그러기에 그 표호의 명칭들과 효과들은 그 표호에 의해 의미되는 것으로부터 나오게 된다(창17:10;롬6:3~4;마26:27~28;딛3:5).
- 3.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례 되는 때에, 그 성례들을 통하여 나타나

는 은혜는 그것들 안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성례의 효력은 그것을 거행하는 자의 경건이나 의사(意思)에 좌우되지 않고(롬2:28~29;벤전3:21), 성령의 사역과(마3:11;고전12:13), 그 성례에 관한 말씀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에는 성례를 집행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과 함께, 합당하게 성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마26:27~28.28:19~20).

- 4.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복음서에 제정해 놓으신 성례는 두 가지 뿐이니 곧 세례와 성찬이다. 이 중에 어느 것도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 외에는 아무도 집행할 수가 없다(마28:19;고전11:20,23,4:1;히5:4).
- 5. 구약의 성례들이 상징하고 표현하는 영적인 뜻은 본질적으로 신약의 성례와 동일하다(고전5:7~8,10:1~4;골2:11~12).

제28장 세례(洗禮)

1.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로서(마28:1 9;막16:16), 세례받은 그 사람을 유형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키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고전12:13;갈3:27~28), 그 당사자에게는 은혜언약의 표호와 인호가 되며(롬4:11;골2:11~2),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갈3:27;롬6:50), 중생하고(딛3:5), 죄를 사함 받고(행2:38,22:16;막1:4),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로 하나님께 헌신하는(롬6:3~4) 표요, 인이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명하

신 것이기에 세상 끝 날까지 그의 교회 안에서 계속 집행되어야 한다(마28:19~20).

- 2. 이 성례에 사용되어야 하는 외형적인 요소는 물이며, 이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되,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입은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에 의해서 집례되어야한다(마3:11;요1:33;마28:19~20).
- 3. 세례받는 사람을 물속에 반드시 잠기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 머리 위에 물을 붓거나 뿌려서 세례를 집행하여도 무방하다(히9:10,19~22;행2:41,6:33;막7:4).
- 4. 그리스도에 대하여 신앙과 순종을 실제로 고백한 사람들뿐만 아니라(막16:15~16;행8:37~38), 양친이 다 믿거나 어느 한 편만 믿는 집의 유아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창17:7,9;갈3:9,14;골2:11~12;행2:38~39;롬4:11~12;고전7:14;마28:19;막10:13~16;눅18:15).
- 5. 이 의식을 모독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커다란 죄가 된다(눅7:3 0;출4:24,26). 그렇지만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중생할 수 없다거나 구원을 못 받는다든가(롬4:11;행10:2,4,22,31,45,47), 또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의심할 여지없이 중생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행8:13,23) 세례의식에 은혜와 구원이 불가분하게 속해 있는 것은 아니다.
- 6. 세례의 효력은 그것이 집행되는 그 순간에 꼭 발생되는 것은 아

니다(요3:5,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식을 옳게 집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때에, 하나님 자신의 뜻하신바 계획을 따라서 약속된 은혜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어른이든 유아이든)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또한 실제로 나타나고 부여된다(갈3:27;딛3:5;엡5:25~26;행2:38,41).

7. 세례의식은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오직 한 번만 베풀어져야 한다(딛3:5).

제29장 성찬(聖餐)

- 1.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그가 잡히시던 날 밤에, 그의 몸과 피로 세우신 성례, 곧 성찬을 제정하여 그의 교회에서 세상 끝 날까지 지키도록 하셨다. 이는 그가 죽으심으로 자신을 친히 희생제물로 드리신 것을 영구히 기념하게 하시고, 참 신자들에게 그희생이 주는 모든 은혜들을 보증하시기 위함이다. 그 안에서 그들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성장하며,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의무들을 보다 충성되게 이행하며, 주와 더불어 갖는 교통과주의 신비한 몸의 지체들로서 그들 상호간에 갖는 교통의 매는 줄과 보증이 되게 하려 함이셨다(고전11:23~26,10:16~17,21,12:13).
- 2. 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 그리스도께서 성부에게 실제로 바쳐지 거나, 또는 산 자와 죽은 자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희생제물이 실제로 드려지는 것은 아니다(히9:22.25~26.28). 다만 이 성찬

예식은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스스로 자신을 드린 그 희생을 기념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찬미를 영적으로 봉헌하는 것에 불과하다(고전11:24~26;마26:26~27). 그러므로 가톨릭의 희생제사인 소위 미사는 그리스도 께서 선택자들의 모든 죄를 위한 유일한 희생제물이 되시고 유일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가장 극단적으로 손상시키는 것이된다(히7:23~24,27,10:11~12,14,18).

- 3. 주 예수께서는 이 의식을 행함에 있어서 그의 사역자들을 택정하시어 이 예식에 대한 자신의 말씀을 일반회중에게 선포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떡과 포도주를 감사하게 하시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그것들이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다른 일반 떡이나 포도주와 성별하게 하사, 떡을 들어 떼게 하시고, 잔을 들게 하신 후에 떡과 잔을 자신들이 나눌 뿐만 아니라 수찬자(受餐者)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마26:26~28;막14:22~24; 눅22:19~20;고전11:23~26). 그러나 그 예식이 거행되는 시간에 회중가운데 참예하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에게도 나누어주지 못하게 하셨다(행20:7;고전11:20).
- 4. 사적(私的)인 미사, 즉 성례를 사제(司祭)나 기타 다른 사람에 게서 혼자 받는다든지(고전10:6), 또는 잔을 일반 회중에게는 나누어 주지 않는다든지(막14:23;고전11:25~29), 떡과 포도 주에게 절을 한다거나 숭배할 목적으로 높이 치켜들거나, 아니면 가지고 돌아다닌다거나, 혹은 겉치레만의 종교적인 용도를 위하여 그것들을 남겨 두는 일이 있다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은 이 예식의 본질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예식을

제정하신 본래의 뜻에도 어긋난다(마15:9).

- 5. 이 성례에 사용되는 외형적인 요소들인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 도께서 정하신 용도를 위해 정당하게 구별되어 있는 까닭에 이 요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와 깊은 관계가 있다. 그 관계는 참된 것이지만 상징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요소들은 때로는 그것들이 나타내고 있는 것들의 이름으로 불린다. 즉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불린다(마26:26~28). 그렇다 해도 그것들은 실체와 본질에 있어서는 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떡과 포도주로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고전11:26~28;마26:29).
- 6. 신부가 축사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의 실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체로 바뀐다는 교리(일반적으로 '화체설'이라고 불리 운다)는 성경에 모순될 뿐만 아니라 일반 상식과 이성에도 모순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리는 성찬의 본질을 뒤엎는 것이요, 여러 가지의 미신과 조잡한 우상숭배의 원인이 되어 왔고 지금도 그러한 요인이 되고 있다(행3:21;고 전11:24~26;눅24:6,39).
- 7. 합당한 수찬자들은 이 성례의 가견적 요소를 외형적으로 받을 때에(고전11:28), 또한 내면적으로는 믿음으로 받으며 물질적으로나 신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은혜를 받으며 또한 먹는다. 그러나 성찬을 받는 그 때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안에 함께, 또는 밑에,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루터교의 공재설). 그렇지만 그 가견적 요소들을 그 의식

- 에 참예하는 신자들이 그들의 외적 감각에 의해 알아보는 것처럼 실제적인 동시에 영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고전10:16).
- 8. 비록 무지하고 사악한 사람이 이 성례의 외적 요소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 요소가 의미하는 바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성례에 합당치 못하게 참예함으로 해서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지어 자신의 파멸을 자초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무지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교통을 갖기에는 부적합함으로 주의 상(床)에 참여할 자격이 없으며, 그들이 무지하고 불경건한 상태에 있는데도 이 거룩한 성찬예식에 참여하거나(고전11:27~29;고후6:14~16)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는 때에는(고전5:6~7,13;살후3:6,14~15;마7:6) 그리스도에 대하여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제30장 교회의 권징(勸懲)

- 1. 교회의 왕이요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 세속의 위정자와는 구별 된 교회 직원들 손에 교회의 정치를 제정해 주셨다(요18:36; 사9:6~7;고전12:28;딤전5:17;행20:17~18).
- 2. 주께서 이 직원들에게 천국열쇠를 맡겨주셨다. 이 열쇠의 권위에 의지하여 그들은 말씀과 권징을 적절히 사용함으로 죄를 보류시키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한다. 회개치 않는 자를 엄히 시벌함으로써 천국문을 닫기도 하고, 회개하는 죄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주고, 때에 따라 권징을 사면해 줌으로써 천국문을 열

어주는 일을 하게하셨다(마16:19,18:17~18;요20:21~23; 고후2:6~8).

- 3. 교회에 권징이 필요한 것은 범죄한 형제들을 교정(矯正)하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요, 다른 사람들이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기 위함이요, 전체 덩어리를 오염시킬지도 모르는 누룩을 깨끗이 제거하기 위함이요,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미연에 막기 위함이다(고전5;딤전5:20;마7:6;딤전1:20;고전11:27~34;유23). 그런데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 언약의 인치심을 악명 높고 완악한 범죄자들에 의하여 더럽혀지는 것을 신자들이 묵인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교회가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 4. 이러한 목적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교회의 직원들은 당사자의 범죄와 과실의 성격에 따라서 권계, 일시적인 수찬 정지, 그리고 교회에서의 제명을 과(課)할수 있다(살전5:12;살후3:6,14~15;고전5:4~5,13;마18:17;딛3:10).

제31장 총회와 노회

1. 더 나은 교회의 정치와 건덕(健德)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총회 나 노회로 불리우는 회의들이 있어야 한다(행15:2,4,6). 교회 의 감독자들이나 개체교회의 치리자들은(목사,장로) 교회를 파 괴하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직 책과 권한으로 이런 회의를 결성하며(행15), 교회의 유익을 위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로 적절히 소집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행15:22~23,25).

- 2. 총회와 노회는 신앙에 대한 논쟁과 양심에 대한 문제들을 확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와 하나님 교회의 정치가 더욱 질서 정연하도록 헌법과 규칙을 정하며 실책이 있는 경우 불평과고소를 접수하고 그 같은 것을 권위있게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있다. 이렇게 해서 정해진 명령이나 결의 사항은 만일 하나님의말씀에 일치하는 경우는 그것들이 말씀과 일치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 결정을 내린 권한 즉 말씀에서 정해진 권한이기때문에 경건하게 그리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행15:15,19,24,27~31,16:4;마18:17~20).
- 3. 사도시대 이후로 모든 총회나 노회는 전체적인 회의이든 아니면 개별적인 회의이든 실수를 범할 수가 있으며 실지로 많은 회의에서 실수가 범해졌다. 그러므로 그 회의들을 신앙이나 실제생활을 위한 법칙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신앙과 실제 생활면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만 이해해야 한다(앱2:20;행17:11;고전2:5;고후1:24).
- 4. 총회와 노회들은 교회에 관한 것 이외의 것을 다루어서는 안 되고 국가와 관련이 있는 사회문제를 간섭해서도 안 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겸허하게 청원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또는 위정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양심껏 충고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눅12:13~14;요18:36).

제31장 "대회와 협의회" (Of Synods and Councils)를"총회와 노회"로 의역하였다.

제32장 사후(死後)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

- 1. 인간의 육체는 사후(死後)에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되나(창3:19; 행13:36), 영혼은 불멸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눅23:43; 전12:7). 의인의 영혼은 죽는 순간에 즉시 거룩함으로 완전케 되어 지극히 높은 천국에 들어가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뵈오며,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히12:23;고후5:1,6,8;빌1:23; 행3:21;엡4:10). 그러나 사악한 자의 영혼은 즉시 지옥에 던지어져 거기서 고통과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지내며, 마지막날에 심판을 기다리게 되어 있다(눅16:23~24;행1:25;유6,7; 벤전3:19). 성경은 육신이 죽은 후에 영혼이 갈 곳으로 이 두장소(지옥과 천국) 외에는 아무 곳도 인정하지 않는다.
- 2. 마지막 날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로되 (살전4:17;고전15:51~52), 죽은 자들은 모두 전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부활한 몸은 질적인 면에서 전과 같지가 않으며 그 몸은 그 영혼과 영원토록 결합될 것이다 (욥19:26,27;고전15:42~44).
- 3. 불의한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굴욕을 받게 되나 의로운 자들의 몸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영광에 이르며 그리스도 자신의 영화로운 몸을 닮게

될 것이다(행24:15;요5:28~29;고전15:43;빌3:21).

제33장 최후 심판

- 1.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써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 놓으셨다(행17:31).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심판하는 권세가 성부로부터 주어져 있다(요5:22,27). 그 날에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고전6:3;유6;벤후2:4),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서 자기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전말을 밝히고, 그들이 선약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고후5:10;전12:14;롬2:16;14:10,12;마12:36~37).
- 2.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은 택함 받은 자들을 영원히 구원하여 그의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며(롬9:23;엡2:4~7), 사악하고 불순종하는 버림받은 자들을 정죄하여 그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롬2:5~6;살후1:7~8). 그때로부터 의인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며, 주 앞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기쁨과 유쾌함을 얻게 될 것이나(마25:31~34;살후1:7;시16:11),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사악한 자들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던지어져 주 앞으로부터, 그리고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파멸의 형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마25:41~46;살후1:9;막9:47~48).
- 3. 장차 심판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신시키고자 하셨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멀리하게

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역경을 당했을 때 큰 위로를 받게 하려함이었다(벤후3:11,14;고후5:10~11;살후1:5~7;눅21:27~28;롬8:23~25). 마찬가지로 그는 그날을 사람들에게 감추어두심으로 사람들이 육욕적인 안전감을 떨쳐 버리고 주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함으로 항상 깨어 있도록 하셨고,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하고 말할 수 있도록항상 준비하게 하셨다(마24:36,42~44;막13:35~37;눅12:35~36;계22:20).

4. 대요리문답

제 1 문. 사람의 제일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답. 사람의 첫째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롬 11:36;고전10:31), 그를 영원토록 마음을 다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다(시편73:24~28;요17:21~23).

제 2 문.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답.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의 빛과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준다(롬1:1 9~20;시19:1~3;행17:28).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과 성령만이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저희에게 하나님 을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계시한다(고전2:9~10;딤후 3:15~17;사59:21).

제 3 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답. 신·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롬1:19~20;벤후1:19~21;엡2:20;계2 2:18~19;사8:20;눅16:29,31;갈1:8~9,딤후3: 15~16).

제 4 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답.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충분히 나타내고있다. 성경은 장엄하고(사66:1;호8:12;시119:18,129), 순수하며(시12:6,119:140), 모든 부분이일치를 이루며(고전2:6~7,13), 어느 부분을 보더라

도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롬3:19,27). 성경은 빛과 권능이 있어서(행18:28;롬15:4;행2 0:32;히4:12;약1:18;시19:7~9) 죄인들을 확실히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며 신자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위로하고 교육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사람의 심령속에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확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만이 성경이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온전하게 증거 한다(요16:13~14,20:31;요일2:20,27).

제 5 문. 성경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가?

답.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임을 가르친다(딤후1:13).

제1부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이 믿어야 할 도리

- 제 6 문.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계시하고 있는가?
 - 답.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되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과(히11:6;요일5:17) 그분의 작정과 (행15:14~15,18) 그 작정을 실행하심(행4:27~28) 을 계시하고 있다.

제 7 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답. 하나님은 영이시다(요4:24). 곧 존재하심과(출3:1 4;&11:7~9), 영화로우심과(행7:2), 복되심과(딤전 6:15), 완전하심에(마5:48) 있어서 본래 스스로 무한하신 영이시다. 또한 자족하시고(창17:1;롬11:35~36), 영원하시고(시90:2;롬11:33), 불변하시며(말 3:6;약1:17;렘23:24;시139편), 사람이 이해할수 없는 이시며(왕상8:27;계4:8;시145:3;롬11:33), 어디든지 계시고(시139:1,27), 전능하시며(계4:8), 모든 것을 아시고, 지극히 현명하시며(히4:13;시147:5;롬16:27), 지극히 거룩하시고(사6:3;계15:4), 지극히 공의로우시며(신32:4), 지극히 자비로우시고 은 해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선하심과 진리가(출34:6)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제 8 문. 하나님과 같은 다른 신들이 있는가?

답. 오직 한 분뿐이시니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신6:4;고전8:4,6;렘10:10).

제 9 문.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있는가?

답. 하나님의 신격에는 삼위가 계시니 곧 성부(聖父)와 성자(聖子)와 성령(聖靈)이시며, 이 삼위는 홀로 참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본체가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나 각 위의 고유한 품성은 서로 달라서 구별이 된다(마3:16~17,28:19;고후13:14;요10:30;요일5:7).

제 10 문. 삼위 하나님의 위격의 고유성은 무엇인가?

답. 영원부터 성부가 성자를 낳으심은 성부에게 고유하며 (요1:14,18), 성자가 성부에게 낳으신바 되심은 성자에게 고유하고(히1:5~6,8), 성령이 성부와 성자에게 나오심은 성령에게 고유한 것이다(요15:26;갈4:6).

제 11 문.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답.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나타내 보여주신다. 즉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이름과(사 6:3,58;요12:41;행28:25;요일5:20;행5:3~4), 속성과(요1:1;사9:6;요2:24~25;고전2:10~11), 사역과(골1:1;창1:2), 예배를(마28:19;고후13:14) 성자와 성령에게 돌림으로써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밝히 나타낸다.

제 12 문.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인가?

답.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이 뜻하여 계획하신바, 지혜롭고 자유롭고 거룩한 행위들이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불변하게 미리 정하셨고, 특히 천사들과 사람들에 대하여 그렇게 하셨다(엡1:11;롬9:14~15,18,22~23,11:33;업1:4,11;시33:11).

제 13 문. 하나님은 천사들과 사람들에 대하여 특별히 무엇

을 작정하셨는가?

답.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그의 순전한 사랑으로 인하여, 영원불변한 작정으로 말미암아 때가 차면 나타날 그 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려고, 어떤 천사 들을 택하시고(딤전5:21),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 람들을 택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그것을 얻는 방법도 세우셨다(엡1:4~6;살후2:13~14).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뜻에서 나온 헤아릴 수 없는 도모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신다. 남은 사람들은 그들 의 죄에 대하여 벌을 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든지 불 명예와 진노 아래 있도록 미리 정하신 것이다(롬9:17 ~18,21~22;마11:25~26;딤후2:20;유4;벧전2:8).

제 14 문. 하나님께서 자기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시는가?

답.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경륜을 착오 없이 미리 아시는 지식과 자기 뜻에서 나온 자유롭고 불변하는 지혜를 따라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하는 일에서 자기의 작정 을 실행하신다(엡1:11).

제 15 문.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무엇인가?

답. 창조사역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신 일인데, 능력의 말씀으로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손수 엿새 동안에 아주 좋게 만드셨다(창1:1;히11:3;잠16:4).

제 16 문.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답.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사를(골1:16) 죽지 않고(마22:30), 거룩하며(마25:31) 지식(마24:36;삼하14:17)과 능력이(살후1:7) 뛰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일들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영(시104:4)들로 창조하셨다(시103:20~21). 그러나 그들은 변화될 수 있는 세계에 속하는 존재들이다(벤후2:4).

제 17 문.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답.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피조물을 만드신 이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창1:27).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몸을 빚으시고(창2:7)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빚으셔서(창2:22) 그들에게 생육하며 생각하고 죽지 않는 영혼을 부여하셨다(창2:7;전12:7;마10:28;눅23:43). 그리고 지식과(골3:10) 의로움과 거룩함(엡4:24)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창1:27) 지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신 율법과(롬2:14~15) 그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전7:29) 가졌으며,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창1:28). 그러나 그들은 타락하고 말았다(창3:6;전7:29).

제 18 문.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무엇인가?

답.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사역은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을 기국히 거룩하고(시145:17), 지혜롭고(시104:24;사28:29), 능력있게 보존하시고(히1:3), 다스리

시는(시103:19)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롬11:36;사63:14) 피조물들에 명하시는 일과 그들의 모든 행위 역시 섭리하심이다(마10:29~31;창45:7).

제 19 문.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답. 하나님은 어떤 천사들에게는 죄를 범하여 정죄를 당하도록(유6;벤후2:4;히2:16;요8:44) 섭리로써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말리시고 명령하셨음에도 자신들의 의지로, 그리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죄와 형벌에 빠졌다. 그러나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섭리하셨다(욥1:12;마8:31). 그리고 다른 천사들은 거룩하고 복되게 세우셔서(딤전5:21;막8:38;히12:22) 그기쁘신 뜻대로 그의 능력과 자비와 공의를 집행하므로 시중들게 하셨다(시104:4;히1:14, 왕하19:35).

제 20 문.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답.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그를 낙원에 두어 낙원을 가꾸게 하시고 땅에서 나는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이다(창2:8,15~16).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그의 지배 아래에 있게 하시며(창1:28), 그를 돕도록 혼인을 제정해 주시며(창2:18),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다(창1:26

~29,2:8). 또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창2:3), 사람이 항상 인격적이며 온전히 순종하는 조건으로(갈3:12;롬10:5) 생명나무가 보증되게 하시고,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창2:9).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하도록 금하셨고, 먹을 때는 죽음의 벌(창2:17)이 따른다는 것이다.

제 21 문.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그 상태 로 계속 남아 있었는가?

답. 우리의 첫 조상은 자신들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지만, 사탄의 유혹을 받아 금하신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 그러므로 그들은 처음 창조함을 받을 때의 무죄한 상태로부터 타락하였다(창3:6~8,13;전7:29;고후11:3).

제 22 문. 우리의 시조가 처음 범죄 하던 때 모든 인류가 타락하였는가?

답. 아담은 공적인 인물로서 언약을 맺었으므로, 그 언약은 아담 자신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후손에게도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적인 질서를 따라 그에게서 난 모든 인류가(행17:26)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하였으며, 처음 범죄가 있었을 때 그와 함께 타락하게 된 것이다(창2:16~17;롬5:12~20;고 전15:21~22).

제 23 문. 타락 때문에 인류는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가?

답. 타락 때문에 인류는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롬5:12,3:23).

제 24 문. 죄가 무엇인가?

답. 죄는 이성적 피조물에 법칙으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그 어느 것이라도 범하는 것이나 순종함에 부 족한 것을 말한다(요일 3:4;갈 3:10,12).

제 25 문.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의 요소는 무엇인가?

답.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의 요소는 아담이 처음 죄를 범하던 때의 죄책(罪責)에(롬5:12,19) 근거한다. 그리고 그가 지음을 받았을 때 가졌던 의로움이 없게 되었고 그의 성품이 부패하게 됨으로 전적으로 의욕을 잃게 되고 무능하게 되었으며 영적으로 선한 모든 것에 반대할 뿐 아니라 모든 악에 전적으로 계속 기울게 된 것이다(롬3:10~19,5:6,8:7~8;앱2:1~3;창6:5). 이러한 성향이 곧 원죄라는 것이며 모든 실제적인 범죄가 이로부터 발전하는 것이다(약1:14~15;마15:19).

제 26 문. 원죄가 우리의 시조로부터 후손들에게 어떻게 전해지는가?

답. 원죄는 우리의 첫 조상으로부터 후손에게 일반 생육법으로 자연적인 출생을 통하여 전수된다. 그에게서 나게 되는 모든 자손이 죄 가운데 잉태되고 출생하는 것

이다(시51:5;욥14:4,15:14;요3:6).

제 27 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임한 불행이 무 것인가?

답. 타락은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할 길을 상실하였으며(창3:8,10,24)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시는 일과 저주를 가져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요(앱2:2~3), 사탄에게 얽매인 노예이며(딤후2:26), 이 세상에서와 다가올 세상에서 벌을받아 마땅하다(롬6:23;창2:17;애3:39;마25:41,46;유7).

제 28 문. 이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무엇인가?

답. 이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내적인 것으로는 마음의 눈이 어두운 것(엡4:18), 버림받은 우둔한 감각(롬1:28), 헛된 망상(살후2:11), 강퍅한 마음(롬2:5), 양심의 공포(사33:14;창4:13;마27:4), 비열한욕정이다(롬1:26). 외적인 것으로는 우리 때문에 피조물들에 내린 하나님의 저주와(창3:17) 또한 죽음그 자체와(신28:15~18) 함께 우리의 몸과 명예와 재산과 인간관계에 또는 우리의 직업에 내리는 다른모든 재앙이다(롬6:21,23).

제 29 문. 내세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무엇인가?

답. 내세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임 재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과 영과 육이 아울러 한 시도 쉼 없이 영원한 지옥 불에서 받게 되는 지극히 비참한 고통이다(살후1:3;막9:43~44,46,48;눅1 6:24).

제 30 문.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죄와 불행의 상태에서 멸망하는 것을 원하시는가?

답.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행위언약이라고 불리는 첫 언약을 파기함으로(갈3:10) 말미암아 빠지게 된 죄와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내버리지는 않았다(살전5:9).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순전하신 사랑과 자비로 택한 자들을 구원하셔서 일반적으로 은혜언약이라고 불리는 둘째 언약으로 구원의 세계로인도하신다(딛3:4~7;갈3:21;롬3:20~22).

제 31 문. 은혜언약은 누구와 맺었는가?

답. 은혜언약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맺으시되 그분 안에서 그분의 자손격인 모든 택한 자들과 맺으신 것 이다(갈3:16;롬5:15~21;사53:10~11).

제 32 문. 하나님의 은혜가 둘째 언약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 가?

답. 둘째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인들을 위하여 값없이 중보자를 마련해 주시고 (창3:15;사42:6;요6:27), 중보자를 통하여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요일5:11~12). 그리고 죄인들로 하여금 중보자와 관계를 갖도록 하시는데, 그 조

건으로 믿음을 요구하시며(요3:16,1:12)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약속한 대로 성령을 주셔서(잠1:23) 믿게 하시며,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고후4:13;갈5:22~23). 그리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순종하도록 하신다. 이러한 순종은 곧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껠36:27) 감사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약2:18,22;고후5:14~15;엒2:18).

제 33 문. 은혜언약이 항상 같은 방식으로 맺어졌는가?

답. 은혜언약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다. 구약에서 은혜언약은 신약의 경우와 다르게 맺어졌다 (고후3:6~9).

제 34 문. 은혜언약이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맺어졌는가?

답. 은혜언약이 구약에서는 약속으로(롬15:8), 예언(행3 :20,24), 희생(히10:1), 할레(롬4:11), 유월절(고 전5:7) 및 다른 절기와 의식들로 맺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였으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충분히 양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히11:13,8~10). 당시에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약속된 메시아를 통하여 온전히 죄 사함을 얻고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갈3:7~9,14).

제 35 문. 은혜언약이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맺어지는가?

답. 신약시대에는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 보이셨는데 같은 은혜언약은 말씀이 전파될(막16:15) 때와세례와 주의 성찬이 집례될 때(마28:19~20) 맺어졌으며 현재도 집행되는 것이다. 그럴 때 은혜와 구원은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더욱 충분하고 명백하며 효과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이다(고전11:23~25;고후3:6~9;히8:6,10~11;마28:19).

제 36 문. 누가 은혜언약의 중보자인가?

답. 은혜언약의 유일한 중보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딤전2:5).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요1:1, 14,10:30;빌2:6), 성부와 한 본체시오, 동등하시며 때가 되매 사람이 되셔서(갈4:4) 그는 과거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성과 인성은 완전히 구별되지만, 영원히 한 인격이시다(눅1:35;롬9:5;골2:9;히7:24~25).

제 37 문.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참 몸과 합당한 영혼을 취하심으로써(요1:14;마26:38) 사람이 되셨다.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즉 마리아의실체의 몸에 잉태되어 그 몸에서 탄생하셨으나(눅1:27,31,42;갈4:4) 죄는 없으시다(히4:15,7:26).

제 38 문. 왜 중보자가 하나님이셔야 하는가?

답. 중보자가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은 그의 인성이 하나님 의 무한하신 진노와 사망의 권세 아래 침몰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지탱하기 위한 것이다(행2:24~25;롬1:4,4:25;히9:14). 그리고 그분의 고난과 순종과 중재하심에 가치와 효능을 주시는 것이다(행20:28,히9:14,7:25~28).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하며(롬3:24~26),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고(엡1:6), 특별한 백성을 값 주고 사며(딛2:13~14), 그들에게 그분의 영(성령)을 주시고(갈4:6), 그들의 모든 원수를 정복하여(눅1:68~69,71,74)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이다(히5:8~9,9:11~15).

제 39 문. 왜 중보자가 사람이어야 하는가?

답. 중보자가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성정 (性情)을 향상하시며(히2:16), 율법에 순종하며(갈4:4),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시며(히2:14,7:24~25),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자 함이었다(히4:15). 그리하여 우리가 양자가 되고(갈4:5) 위로를 받아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있게(히4:16) 하고자 함이다.

제 40 문. 왜 중보자는 한 위(位)안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셔야 하는가?

답. 하나님과 사람사이를 화목시켜야 할 중보자는 자신이 그 하나님과 사람이 되어야 하되 한 위안에 그렇게 되 어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신인 각성의 고유한 사역을 전인격의 사역으로 받아들이시게 하고 (마1:21,23,3:17;히9:14), 우리들에게는 전인격의 사역을 믿고 의지하게 하려 함이다(벧전2:6).

재 41 문. 왜 우리의 중보자를 예수라 부르게 하셨는가?

답. 우리의 중보자를 예수라고 부르게 하신 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다(마1:21).

제 42 문. 왜 우리의 중보자를 그리스도라 부르는가?

답. 우리의 중보자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성명을 한량없이 받으셨기 때문이다(요3:34;시45:1). 이로써 자기 교회의 선지자(행3:21~22;눅4:18,21), 제사장(히5:5~7,4:14~15), 왕(사9:6~7;시2:6;마21:5;빌2:8~11)의 삼중직을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빌2:8~11)에서 수행하도록 성별되고, 권세와 능력을 충만하게 덧입으셨기 때문이다(요6:27;마28:18~20).

제 43 문.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셨는 가?

답.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건덕과 구원에 관한 모든 일에 있어서(엡4:11~13;요20:31;행20:32) 그리고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요15:15) 여러가지 방법으로 시행하심으로(히1:1~2), 또한 그의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벧전1:10~12) 모든 세대의 교회에 계시하심으로(요1:18)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신다.

제 44 문.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시는 가?

답.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자 자신을 하나님께 흠 없는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 (히2:17,9:14,28), 그들을 위하여 계속 중보의 일을 하심으로써 제사장 직분을 다 하신다(히7:25).

제 45 문.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시는 가?

답.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자신에게로 불러내시고(행15:14~15;사55:4~5;창49:10;시 110:3), 그들에게 직분과(고전12:28;엖4:11~12) 율법과 권징을(시33:22) 주시고 책망하심으로써(마 18:17~18;고전5:4~5) 왕의 직분을 다 하신다. 주 님께서는 이로써 그들을 눈에 보이게 다스리시는 것 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부여하신다(행5:31). 그들이 순종하면 상을 주시고(계22:12;롬2:10), 범죄하면 징계하시며(계 3:19), 또한 그들이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겪거나 원 수를 제압하고 정복할 때(고전15:25;시110:1~2)에 는 그들을 보존하시고(사63:9) 도우신다. 하나님께 서는 당신의 영광과(롬14:10~11)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사물을 능력 있게 주관하신다(롬8:28).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순종치 않는 나 머지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으심으로써(살후1:8~9;

시2:8~9) 왕의 직분을 다하신다.

제 46 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상태는 어떠한가?

답.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상태는 잉태되시고, 탄생하시며, 자라시고(눅2:52), 살다가 죽으시고, 죽은 후에 부활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영광으로부터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상을 입은 것이다(빌2:6~8;고후8:9;눅1:31;행2:24).

제 47 문. 그리스도께서는 잉태되어 태어나실 때 자신을 어 떻게 낮추셨는가?

답.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탄생하심으로 자신을 낮추셨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품에 계셨으나 비천한 여자의 몸에 잉태되고 탄생하심으로써 때가 되매 기꺼이 인자(人子)가 되셨다. 그리고 비천한 사람들이 겪는 것보다 더 열악한 환경을 경험하셨다(요1:14,18;눅2:7;갈4:4).

제 48 문. 그리스도께서는 생애 가운데서 자신을 어떻게 낮추셨는가?

답.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사시면서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자신을 낮추셨다(갈4:4). 그럼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셨다(마5:17;롬5:19).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모욕과(시22:6;히12:2~3) 사탄의 유혹을 견디셨으며 (마4:1~12;눅4:13), 모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악과 특히 자신을 비하하신 처지에서 겪게 마련인 육

적 연약함을(히2:17~18,4:15;사52:13~14) 견디어 내셨다.

제 49 문.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실 때 자신을 어떻게 낮추 셨는가?

답.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실 때 자신을 낮추셨다.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마27:4),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하셨으며(마26:56),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으시고 배척을 당하셨다(사53:2~3). 빌라도에게 정죄를 받으시고 병사들의 고문을 당하셨다(마27:26~50;요19:34). 죽음의 공포와 어둠의 세력과 싸우시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몸소 느끼시며(눅22:44;마27:46)자기 몸에 지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저주받은 죽음을(빌2:8;히12:2;갈3:13) 견디심으로써 속죄의 제물로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셨다(사53:10).

제 50 문.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그의 낮아지심의 요소는 무엇인가?

답.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자신을 낮추신 일은 장사되셔서(고전15:3~4)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까지 계속 죽은 자로서 죽음의 세력 아래 계신 것이다(시16:10;행2:24~27,31;롬6:9;마12:40). 이 일을 가리켜 "지옥에 내려가시고"라고 표현해왔다.

제 51 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

답.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상태는 그분의 부활과(고전15:4), 승천하심과(막16:19),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엡1:20), 장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을(행1:11,17:31) 모두 포괄하여 말하는 것이다.

제 52 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어떻게 높아지셨는 가?

답.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높이 들리신 것이다. 그분 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썩지 않으셨으며(행2:24.2 7), 죽음이 그분을 가둘 수 없었다. 고난 받으신 바로 그 몸을 가지셨다(눅24:39). 그 몸은 육체의 기본적 인 성질을 다 갖추신 몸이었다.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볼 수 있는 연약함 을 지닌 것은 아니었다. 그분의 몸은 영혼과 참으로 연합하여(롬6:9;계1:18) 사흘 되는 날 죽은 자 가운 데서 자신의 힘으로 다시 살아나셨다(요10:18). 그 럼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롬1:4) 선포하셨으 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고 죽음을 이기시 고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를 정복하셨다. 그리하여 산 자와(롬8:34) 죽은 자의(히2:14) 주가 되셨다(롬14 :9).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교회의 머리되신(엡1:20,22~23) 공인으로서(고전15:21~ 22) 행하셨다. 신자들에게 의롭다 함을 주시고(롬4: 25) 그들을 은혜 가운데 생동하게 하시며(엡2:1.5 ~6;골1:12) 원수와 싸울 때 도우시며(고전15:25~ 27), 마지막 날에 그들이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확증

하셨다(고전15:20).

제 53 문.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실 때 어떻게 높아 지셨는 가?

답.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심으로 높이 들리셨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사십일 동안 지상에 계실 때에 사도들에게 자주 나타나셔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관하여 말씀하셨으며(행1:2~3),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탁하셨다(마28:19~20). 우리의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의머리되신(히6:20) 주님께서는 원수를 이기시고(엡4:8)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 높이 올라가셨다.거서 우리에게 주실 은사를 받으시고(행1:9~11;업4:10;시68:18)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애착을가지도록 하시며(골3:1~2) 우리를 위하여 있을 곳을준비하신다(요14:3). 그곳은 주님께서 계시는 곳이다. 세상 끝 날에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은 그곳에 머물러 계신다(행3:12).

제 54 문.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어떻 게 높아지셨는가?

답. 그리스도께서는 높이 들리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총을 입으셔서(빌2:9) 기쁨과(행2:28;시16:11) 영광(요17:5)뿐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충만히 가지시고

(엡1:22;벤전3:22) 당신의 교회를 모으시고 보호하 시며 성도들의 원수를 굴복하게 하신다. 주님의 사역 자들과 백성들에게 은사와 은혜를 베푸시며(엡4:10 ~12;시110:1~6) 그들을 위해 중재하신다(롞8:34).

제 55 문. 그리스도께서는 중재를 어떻게 하시는가?

답.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앞에 계속 우리의 인성을 가지신 모양으로 나타나 보이시며(히9:12,24) 지상에서 순종하시고 희생이 된 공로를(히1:3) 모든 신자에게 입혀 주시려는 당신의 뜻을 선포하신다(요17:9,20,24,3:16). 성도들을 고발하는 모든 송사에 대하여 답하시며(롬8:33~34) 그들에게 양심의 호소를 하게 하시며(요일2:1~2;롬5:1~2) 날마다 실패하지만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시며(히4:16) 성도들의 모습 그대로(엡1:6) 받으시며 그들의 봉사를 받으신다(벤전2:5).

제 56 문.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러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높아지시는가?

답. 그리스도께서는(행3:14~15)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도 높아지신다. 사악한 자들에게 불공정하게 재판을 받으시고 정죄되었으나 마지막 날에 다시 오 실 때에는 큰 권세를 가지시고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 의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내시면서(마24:30) 그의 모 든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마25:31). 그때 천사들은 큰 소리를 지르고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소 리가 울려 퍼지고(살전4:16), 그가 세상을 공의로 심 판하실 것이다(행17:31).

- 제 57 문.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중보를 통해서 무슨 유익 들을 마련하셨는가?
 - 답. 그리스도께서는 중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언 약에 따르는 다른 모든 유익(고후1:20)들을 마련하신다(히9:12).
- 제 58 문.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유익들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 답.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유익들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딛3:5~6)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써 가능하다(요1:11~12).
- 제 59 문. 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가?
 - 답. 구속은 그리스도께서 값 주고 사신 모든 성도에게 확실하게 적용될 뿐 아니라, 효과적으로 전달된다(엡 1:13~14;요6:37,39,10:15~16). 그들은 때가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능히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엡2:8;고후4:13).
- 제 60 문.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까닭에 예수 그리 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한 자들이 본 성의 빛을 따라 살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 답. 복음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롬10:14)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살후1:8~9;앱2:12;요1: 10~12) 믿지도 아니한 자들은 본성의 빛, 또는 그들이 신봉하는 종교의 계율에 따라(고전1:20~25),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할지라도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요8:24;막16:16;요4:22;롬9:31~32;빌3:4~9).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만이 그의 몸인 교회만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주시다(행4:12;앱5:23).

제 61 문. 복음을 듣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다 구원을 얻는가?

답. 복음을 듣고 유형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무형교회의 참된 지체가 되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는다(롬9:6;마7:14;요12:38~40;롬11:7).

제 62 문. 유형교회는 무엇인가?

답. 유형교회는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세계 각처에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과(고전1:2,12:13;롬15:9~ 12;계7:9;시2:8,22:27~31,45:17;마28:19~20; 사59:21) 그들의 자녀들로(행2:39;고전7:14;롬1 1:16;창17:7) 구성된 공동체이다.

제 63 문. 유형교회가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가?

답. 유형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돌봄과 다스리심을 받는 특권을 누린다(사4:5~6;딤전4:10). 시대마다 일어나는 원수들의 반대에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보호를 받고 보전되는 것이다(사31:4~5;슥12:2,4,8~9;시115:1~2,9). 그리고 성도의 교제와 구원의 통상적인 방편을 누릴 뿐 아니라(행2:39,42), 주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며(시147:19~20;롬9:4;엡4:11~12;막16:15~16), 주님께 오는 자는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증거하는 복음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든 지체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요6:37).

제 64 문. 무형교회는 무엇인가?

답. 무형교회는 머리되신 그리스도 아래 회집되어 왔었고, 현재도 회집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회집될 택함을 받 은 온 백성이다(요11:52;엡1:10,22~23).

제 65 문. 무형교회의 회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특별한 유익들을 누리는가?

답. 무형교회의 지체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영광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연합하며 교제하는 특권을 누린다(요17:21,24;엡2:5~6).

제 66 문. 택함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갖는 연합 은 어떤 것인가?

답. 택함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연합은 하나님의 은총의 사역이다(엡1:22,2:6~8). 그 연합을 통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영적이고 신비적이면서도 실제로 그리고 분리될 수 없도록 그들의 머리요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 것이다(고전6:17;요10:28;앱5:23,30). 그것은 그들이 유효한 부르심을 받아 이루어진다(고전1:9;벤전5:10).

제 67 문. 유효한 부르심이란 무엇인가?

답.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로 하시는 일이다(엡1:18~20;요5:25;딤후1:8~9). 그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향한 자의적이고 특별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도록 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딛3:4~5; 업2:4~5,7~9;롬9:11).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때에 그들을 당신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르시고(고후5:20,6:1~2;요6:44;살후 2:13~14) 인도하신다. 그들의 마음을 구원의 빛으로 밝히시며(행26:18;고전2:10)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하시고, 능력으로 결정하게 하신다(겔11:19,36:26~27;요6:45). 그리하여 비록 죄로 죽었지만, 당신의부르심에 스스로 응답하게 하시며 당신께서 주시는은총을 받게 하시고 끌어안게 하시는 것이다(엡2:5; 빌2:13;신30:6).

제 68 문. 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유효한 부르심을 받는가?

답. 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모두 유효한 부르심을 받는다 (행13:48). 말씀의 사역을 통하여 때로는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아(마22:14) 어느 정도 성령의 일반적인 은총을 경험하지만(마7:21~22.13:20~21;히6:4~ 6) 그들에게 제공되는 은혜를 고의로 소홀히 하거나 멸시하는 자는 불신앙에 그대로 내버려둠을 당하여 (요12:38,40;행28:25~27;요6:64~65;시81:11 ~12)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지는 못한다.

제 69 문. 무형교회의 회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갖는 은 해의 교통이란 무엇인가?

답. 무형교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갖는 은혜의 교제는 그들이 의롭다 함을 받고(롬8:30), 양자가 되고(엡1:5), 성화되며, 그 밖에 이 세상에서 그와 연합함을 나타내는 그 어떠한 일이 진행될 때 그리스도의 중보하시는 효능에 참여하는 것이다(고전1:30).

제 70 문. 칭의가 무엇인가?

답. 칭의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베푸시는 값없는 은혜의 행위이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함을 주심으로(롬3:22,24~25,4:5)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그들을 받아들여 주시고(고후5:19,21,롬3:22,24~25,27~28) 의로운 사람으로 간주해 주시는 것이다. 죄인들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혹은 그들이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고(딛3:5,7;엡1:7)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순종과 보상하시는 속죄 까닭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부여하시는 것인데(롬4:6~8,5:17~19)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갈2:16;빌3:9;행10:43).

제 71 문. 칭의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인가?

답. 비록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심과 죽으심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적절하게, 실제로 충분하고 만족하게 하셨지만(롬5:8~10,19),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실 담보로부터 배상을 받으실 터이므로 사람들에게 이 담보를, 즉자신의 의로움을 부여하시는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담전2:5~6;단9:24,26;롬8:32;사53:4~6,10~12;히7:22,10:10;마20:28;벧전1:18~19).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의롭다고 하심에 대하여(고후5:21) 믿음 이외에는(엡2:8) 아무것도 요구하시지않았다(롬3:24~25).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요, 그들의 칭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이다(엡1:7).

제 72 문. 의롭게 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답. 의롭게 하는 믿음은(히10:39) 죄인의 마음속에 성령과(고후4:13;엡1:17~19)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이다. 사람은 죄와 비참한 처지를 깨달으며(롬10:14,17), 자신을 비롯하여 다른아무 피조물도 자신을 그의 상실된 처지에서(요16:8~9,행2:37,16:30;엡2:1;행4:12;롬5:6) 회복할 능력이 없음을 깨달아 복음이 말하는 약속의 진리에 동의할(엡1:13) 뿐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며 죄를 용서받고(행10:43,16:31;요1:12)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용납하

시고 의롭게 보아주시도록 간절히 구하는 것이다(빌3:9;행15:11).

제 73 문. 믿음이 죄인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의롭게 하는가?

답. 믿음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의롭게 한다. 그러나 칭의와 함께 주시는 다른 은혜나 칭의의 열때로 맺어지는 선한 일때문에(갈3:11;롬3:28) 믿음이 죄인을 의롭게 하는 것은 아니며, 믿음의 은혜나 믿음에서 난 어떤 행위가 의롭다 함을 주는 것도 아니다(롬4:5,10:10). 믿음은 다만 그리스도와 그분의의를 받아들이고 적용하게 하는 도구와 같은 것일 뿐이다(빌3:9;갈2:16;요1:12).

제 74 문. 양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답.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엡1:5;갈4:4~5),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스스로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이다(요일3:1). 양자로 삼으심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시며(요1:12), 당신의 이름을 그들에게 붙여 주시고(계3:12;고후6:18), 아들의 영을 그들에게 주신다(갈4:6).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버지와 같이 돌보시고 다스리시며(시103:13;잠14:26;마6:32),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모든 자유와 특권을 허락하신다. 모든 약속을 이어받을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함께 나누는(롬8:17;히6:12) 상속자로 삼으신다.

제 75 문. 성화란 무엇인가?

답.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 람들이 시간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의 능력있는 역사 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적용받아 그들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는 것이며(엡1:4;고전6:11;살후2:13;롬6:4~6;엡4:2 3~24) 날마다 생활 속에서 회개하며 다른 모든 구원 의 은총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다(행11:18;요 일3:9).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끓어오르고 증가 하며 강력해져서(유20;골1:10~11;히6:11~12;엡3 :16~19) 성도들은 죄에 대하여 더욱더 죽고 다시 일 어나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롬6:4,6,14;갈5:24).

제 76 문.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인가?

답.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이다(딤후2:25). 그것은 죄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과 말씀을 통하여 (행11:18,20~21;슥12:10) 일어나는 것이다. 사람이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지경에 있을 뿐 아니라(겔18:28,30,32;눅15:17~18;호2:6~7), 더럽고 추한 죄 가운데(겔36:31;사30:32) 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참회하면서 자기의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는 것이다(고후7:11;렘31:18~19;욜2:12~13). 그래서 모든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고(행26:18;겔14:6

;왕상8:47~48) 모든 일에 새롭게 순종하는 가운데서 (시119:6,49,128;눅1:6;왕하23:25) 하나님과 동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제 77 문. 칭의와 성화는 어떤 점이 다른가?

답. 성화는 칭의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지만(고전6:11,1: 30), 둘은 서로 다르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 주시는 것이요(롬4:6,8) 성화는 성령께서 은총을 부어 주셔서 실천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다(젤36:27). 칭의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롬3:24~25), 성화는 죄를 이기게 하신다(롬6:6,14). 칭의를 통하여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벌하시는 진노로부터 면제를 받게 되며이 세상에서도 온전하여 신자들이 다시금 정죄 되는 일이 없다(롬8:33~34). 그러나성화는 사람에 따라 같지가 않다(히5:12~14;요일2:12~14). 그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아무도 완전한성화에 도달할 수는 없고(요일1:8,10) 다만 완전을향하여 성장해 갈 뿐이다(고후7:1;빌3:12~14).

제 78 문. 신자들의 성화가 불완전한 것은 어디에 기인하는가?

답. 신자들은 그들의 모든 부분에 숨어 있는 죄의 잔재와 그리고 성령을 끊임없이 거스르는 육신의 정욕 때문 에 성화를 온전히 달성할 수 없다. 그들은 유혹에 잘 넘어가고 많은 죄에 빠지기도 하며(롬7:18,23;막14 :66~72;갈2:11~12) 영적인 봉사를 하지 못 하도록 저지를 당한다(히12:1). 그리고 신자들이 하는 최선 의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완전하며 정결하지 못함에 기인한다(사64:6;출28:38).

제 79 문. 참 신자들은 저희의 불완전함과 많은 유혹과 죄 때문에 은혜의 상태에서 타락할 가능성은 없는가?

답.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렘31:3),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끝까지 붙드시는 작정과(딤후2:19~21;삼하23:5), 계속 베푸시는 은혜(견인)의 약속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을(고전1:8~9) 이루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을 위하여 계속 중재하고 계시며(히7:25;눅22:32) 성 령과 하나님의 씨가(요일3:9,2:27) 그들 안에 계시므로 참 신자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완전히 혹은 끝끝내 타락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보시고 지켜 주시는 것이다(렘32:40;요10:28;벧전1:5).

제 80 문. 참 신자들은 자기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 상태에서 끝까지 인내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는 것을 틀림없이 확신할 수 있는가?

답.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고 그분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은, 무슨 특별한 계시를 받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가질때 자신들이 은혜 아래 있으며 끝까지 붙드심을 받아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을 어김없이 보증을 받는 것이

다. 그것은 생명을 약속하시는 은혜들을 받은 사실을 성도들이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들의 영으로 더불어 증거 해주시는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요일2:3;고전2:12;요3:14,18~19,21,24,4:13,16;히6:11~12;롬8:16,요일5:13).

제 81 문. 모든 참 신자들은 저희가 현재 은혜의 상태에 있는 것과 미래에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을 항상 확신하는 가?

답.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것은 아니므로 참된 신자들은 오래 기다려서(엡1:13) 마침내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도 있다.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심신의 이상(異常)과 죄, 유혹, 패배의식 등을 통하여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약화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도 있다(사1:10;시88:1~3,6~7,9~10,13~15,77:1~12,51:8,31:22,2:1). 그러나 그들은 내버려둠을 당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영은 신자들이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욥13:15;시73:1~15,23;사54:7~10;요일3:9) 늘 같이하시고 도우신다.

제 82 문. 무형교회의 회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중에 갖는 교제가 무엇인가?

답. 무형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누는 영광의 교제를 이미 이 세상에서와(고후3:18) 죽은 직후에(눅23:43) 누리며 부활과 심판 날에(살전4:1

- 7) 온전히 누리는 것이다.
- 제 83 문. 무형교회의 회원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바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중에 갖는 교제가 무엇인가?
 - 답. 무형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영광의 첫 열매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 성도들은 그들의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므로 주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이 충만히 소유하고 계시는 영광을 함께 누린다(엡2:5~6). 그리고 그 영광을 열망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롬5:5;고후1:22) 깨닫게 되며 마음에 평안과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영광의 소망을(롬5:1~2,14:17) 갖게 한다. 그와 반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느낌과 양심의 공포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 두려움은 악한 자들이 죽음 후에 견디어야 하는 고통의 시작이다(창4:13;마27:4;히10:27;막9:44;롬2:9).

제 84 문. 모든 사람은 죽게 되는가?

- 답. 죄의 값은(롬6:23)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모든 사람은 다 한번 죽기 마련이다(히9:27).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롬5:12).
- 제 85 문. 죽음은 죄의 삯인데 의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면 왜 그들이 죽음을 당하는 가?

답. 의인은 마지막 날에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죽음에서도 사망의 쏘는 살과 저주로부터(고전 15:26,55~57;히2:15) 구원함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비록 죽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사 57:1~2;왕하22:20) 그들을 죄와 비참으로부터 온전히 해방해 주시며(계14:13;엡5:27)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중에 교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그리로 들어가게 해 주신다(눅23:43;빌1:23).

제 86 문. 무형교회 회원들이 죽자마자 즉시 누리게 되는바,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중에 나누는 교제가 무엇 인가?

답. 무형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죽은 직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영광의 교제는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천당으로 영접을 받아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뵈오며(히12:23;빌1:23;고후5:1,6,8;행3:21;엡4:10), 그들의 몸이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롬8:23;시16:9;고전13:12;요일3:2). 그들의 몸은 죽은 가운데서도(살전4:14) 계속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 있으며 마지막 날에 그들의 영혼과 다시금 연합할(사57:2;욥19:26~27) 때까지 침상에서 자듯이 무덤에서 쉰다. 그러나 악인이 죽으면, 그들의 영혼은 지옥으로 던짐을 받아 고통과 칠흑 같은 어둠에 머물게 된다. 그들의 몸은 부활과 최후의 심판 날까지(눅16:2

3~24;행1:25;유6~7) 마치 감옥에 갇혀 있듯이 무 덤에 있게 된다.

제 87 문.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답. 우리는 마지막 날에, 의인이나 불의한 자를 불문하고 죽은 자들이 모두 다 부활할 것임을 믿는다(행24:15). 그때 살아 있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고 무덤에 있는 죽은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그들의 영혼과 다시 연합하여(고전15:51~53;살전4:15~17;요5:28~29)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의인의 몸은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하여 그리고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능력으로 영적이며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고전 15:21~23,43~44;빌3:21). 그러나 악인의 몸은 그들이 거역하던 심판주가 되신 그리스도에 의하여(요5:27~29;마25:33) 부끄러운 부활을 맞이할 것이다.

제 88 문. 부활 후에 즉시 무엇이 있게 되는가?

답. 부활 후에는 곧 천사들과 사람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벤후2:4;유6~7,14~15;마25:46).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알지 못하므로 모두 깨어기도해야 하며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마24:36,42,44;눅21:35~36).

제 89 문. 심판의 날에 악인에게 무슨 일이 있게 되는가?

답. 심판 날에 악인은 그리스도의 왼편에(마25:33)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명백한 증거와 그들 스스로 양심의 충분한 확증에 근거하여(롬2:15~16) 그들에게 두려 우면서도 공정한 정죄의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마25:41~43). 그리고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심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영화로운 교제와 성도들과 모든 천사들부터 멀리 지옥으로 던짐을 받아육체와 영혼이 함께 마귀와 그 사자(使者)들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의 형벌을 영원히 받을 것이다(눅16:26;삼후1:8~9).

제 90 문. 심판 날에 의인에게 무슨 일이 있게 되는가?

답. 심판 날에 의인은 구름을 타고 그리스도에게 인도되어 (살전4:17) 그분의 우편에 서게 될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공개적으로 인지함을 받고 면죄를 받아(마 25:33,10:32) 그리스도께서 천사들과 사람들을 책 망하시는 심판에(고전6:2~3) 참여할 것이다. 그리고 는 천당으로 영접을 받아(마25:34,46) 거기서 모든 죄와 비참에서부터 온전하고, 영원한 자유함을 누릴 것이다(엡5;27;계14:13). 수많은 성도와 천사들과 함께 어울리며(히12:22~23) 특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직접 보이시고 나타나시는 가운데서 상상도 못할 기쁨을 만끽하며(시16:11), 육체와 영혼이 함께 영원토록 완전히 거룩하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요일3:2;고전13:12;살전4:17~18). 이것이 곧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부활과 심판 날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중에 누리

게 될 온전한 교제이다.

제2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람의 의무

제 91 문.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답.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계시된 하나님 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롬12:1~2;마6:8;삼상15:22).

제 92 문. 하나님이 순종의 규칙으로 사람에게 맨 먼저 계시하신 것이 무엇인가?

답. 무죄한 상태에 있는 아담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인류에 게 보여주신 순종의 법칙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특별한 명령과 함께 주신 도 덕법이었다(창1:26~27;롬2:14~15,10:15;창2:17).

제 93 문. 도덕법은 무엇인가?

답. 도덕법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하나님의 뜻에 개인적으로 영혼과 육체의 전 인격을 다하여(신5:1~3,31,33;눅10:26~27;갈3:10;살전5:23), 완전히, 항상복종하고 순종하도록 지시하시고 명하시는 하나님의뜻을 알리는 선포이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사람에게 거룩함과 의로움을 좇아야 하는 모든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눅1:75;행24:16),그것을 성취할 때 생명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지키지못할 때 죽음을 선고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선포이다(롬10:5;갈3:10,12).

제 94 문. 타락 이후로 도덕법이 사람에게 쓸모가 있는가?

답. 타락 이후에는 아무도 도덕법으로는 의와 생명을 얻을 수 없지만(롬8:3;갈2:16) 모든 사람에게 즉,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나 중생한 사람에게 다 크게 소용이 있는 것이다(딤전1:8).

제 95 문. 도덕법이 모든 사람에게 무슨 쓸모가 있는가?

답.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레1 1:44~45,20:7~8;롬7:12) 또한 그것을 좇아 행해야 하는 사람의 의무에 관하여 알려주므로(미6:8;약 2:10~11) 유용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도덕법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으며 그들의 성품과 마음과 생활이 죄로 물들었음을 인식하도록 하여(시19: 11~12;롬3:20,7:7) 죄와 비참을 깨닫는 가운데 겸손하게 해준다(롬3:9,23). 그래서 자신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한 순종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도록 도와준다(갈3:21~22;롬10:4).

제 96 문. 도덕법이 중생하지 아니한 자에게 무슨 특별한 쓸 모가 있는가?

답. 도덕법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장차 올 진노를 피하 도록(딤전1:9~10) 그들의 양심을 일깨워 그리스도 에게로 오게 하는데(갈3:24) 소용이 되는 것이다. 그 러나 그들이 계속 죄의 자리에 머물거나 죄의 길로 가 면 변명할 여지없이(롬1:20,2:15) 버림을 당하고 그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이다(갈3:10).

제 97 문. 도덕법이 중생한 자에게 무슨 특별한 쓸모가 있는가?

답. 중생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롬6:14,7:4,6; 갈4:4~5) 도덕법을 행위언약으로 받은 것이지만, 그들은 도덕법을 따라 의롭다 함을 받거나(롬3:20) 정죄 되지 않는다(갈5:23;롬3:1). 그러나 도덕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유효한 점 말고도 중생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소용되는 점은 그들이 도덕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롬7:24~25;갈3:13~14;롬8:3~4).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대신하고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도덕법의 저주를 견디어 내셨다. 그러므로 도덕법은 그들이 더욱 감사하게 하며(눅1:68~69,74~75,골1:12~14) 더 조심스럽게 순종의 법칙으로 도덕법에 복종하도록 일러주는 것이다(롬7:22,12:2;딛2:11~14).

제 98 문. 도덕법이 어디에 요약되어 있는가?

답. 도덕법은 십계명에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표현되고 있다.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손수 두 돌 판에 써주신 것이다(신10:4,출34:1~4). 그것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다. 첫 네계명은 하나님께 해야 할 우리의 의무에 관한 것이고,나머지 여섯 계명은 사람에게 해야 할 우리의 의무에 관한 것이다(마22:37~40).

제 99 문.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슨 규칙을 유념해야 하는가?

- 답. 십계명을 옳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규칙을 지켜 야 한다.
- 1. 율법은 완전하다. 그리고 그것은 각 사람에게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전 인격을 다하여 온전히 복종하며 영원토록 전적으로 순종하도록 요청한다. 그러므로 매일의 의무를 완전히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지극히 미미한 죄라도 범하지 않도록 금한다(시19:7;약2:10;마5:21~22).
- 2. 율법은 신령하여 영혼의 이해, 의지, 감정 및 다른 모든 능력에 와 닿는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말과 일과 행동 하나까지 그 효능이 미친다(롬7:14;신6:6;마2 2:37~39,5:21~22,27~28,33~34,37~39,43~44).
- 3. 여러 계명에서 같은 하나를 요구하고 금하고 있으나 그것은 다양한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골3:5;암8:5;잠1:19;딤전6:10).
- 4. 어떤 의무를 행하도록 명하는 곳에는(마5:21~25;앱 4:28) 그와 반대되는 죄를 금하고(사58:13;신6:13;마4:9~10,15:4~6) 있음이 함축되어 있다. 그러므로 어떤 약속이 부가되고 있으면 거기에는 그와 반대되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으며(출20:12;잠30:17) 경고가 부가된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약속이 포함되고 있다(렘18:7~8;출20:7;시15:1,4~5,24:4~5).
- 5.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어느 때를 막론하고 결코

- 해서는 안 된다(욥13:7~8;롬3:8;욥36:21;히11:2 5).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신4:8~9). 그러나 특정한 의무를 어느때나 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마12:7).
- 6. 하나의 죄목이나 의무 아래 그것들의 모든 원인과 방법들, 사건들, 현상들 및 그것들에 대한 도발과 함께모든 같은 죄목을 금하고 있거나 의무를 명령하고 있다(마5:21~22,27~28,15:4~6;히10:24~25;살전5:22;유23;갈5:26;골3:21).
- 7.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시고 명하신 것을 우리는 우리의 처지에서 힘써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처지에서 다해야 할 의무를 따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피하거나 명하신 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출20:10;레19:17;창18:19;수24:15;신6:6~7).
- 8. 다른 사람들에게 명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의 입지와 소명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후1:24).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금하신 것에 대하여 그들과 같이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딤전5:22;엡5:11).

제100문. 우리는 십계명에서 무슨 특별한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가?

답. 우리는 십계명에서 머리말과 계명의 기본 골격과 그 중 몇 계명에 이유를 드는 말씀으로 첨가되어 계명 을 더 강화하는 말씀들을 고려해야 한다.

제101문.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인가?

답. 십계명의 서문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주권을 영원불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셨다(출20:2;사44:6). 또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자존하시고 그의 모든 말씀과 하시는 일에존재를 부여하시는 이로 나타냈다(출3:14,4:3;행17:24,28). 또 옛날에 이스라엘과 맺으신 것과 같이자기의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과 같이우리를 영적노예의 속박에서 구출하신 것을 나타내셨으니(창17:7;롬3:29;눅1:74~75;벤전1:15~18)하나님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레18:30,19:37).

제102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네계명의 요점은 무엇인가?

답.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말씀하는 네 계명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온 마음과 영혼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눅10:27).

제103문. 제일계명은 무엇인가?

답. 제일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이다(출20:3;신5:7).

제104문. 제일계명에 요구된 의무들은 무엇인가?

답. 제일계명에 요구하는 의무는 하나님을 유일하고 참되 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고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그분만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해야 한다 (대상28:9;신26:17;사43:10;렊14:22). 그분만을 생각하며(말3:16), 묵상하며(시63:6), 기억하며(전 12:1), 높이며(시71:19), 존중하며(말1:6), 찬양 하며(사45:23), 선택하며(수24:15,22), 사랑하며 (신6:5), 사모하며(시73:25), 두려워해야 한다(사 8:13;시95:6~7,마4:10;시29:2). 그분을 믿고(출1 4:31), 신뢰하며(사26:4), 바라며(시130:7), 즐거 워하며(시32:11), 기뻐해야 한다(시37:4), 그분을 열망하고 그분에게 부르짖고 모든 찬양과 감사를 드 리고(빌4:6), 전인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며(렊7:2 3;약4:7), 그분을 기쁘시게 해 드리기 위하여 만사에 조심하며(요일3:22), 어떤 일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면 그 일을 슬퍼하면서(렊31:18;시119:136)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다(미6:8).

제105문. 제일계명에 금지된 죄들은 무엇인가?

답. 제일계명에서 금하시는 죄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무신론이다(시14:1;엡2:12). 그리고 하나 이 상의 많은 신을 모시거나 참 하나님 외에 많은 잡신들을 섬기는 우상숭배이다(렘2:27~8;살전1:9). 여호 와를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시81:11), 계명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것을 빠뜨리거나 소홀히 하며(사43:22~24),

망각하며(렊4:22;호4:1.6), 몰이해하고(렊2:32;행 17:23,29),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의견과(사40:18) 무가치하고 사악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시50:21). 하나님의 비밀을 무모한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며 (신29:29), 하나님을 모독하고(딛1:16;히12:16) 미워하는가 하면(롬1:30) 자기를 사랑하고(딤후3: 2) 자기 유익을 추구하며(빌2:21), 우리의 마음과 뜻 과 정성을 하나님께는 전혀 혹은 별로 향하지 않고 과 도하고 무절제하게 다른 사물에 두는 것이다(요일 1:6;삼상2:2 9;골3:2.5). 허망한 맹신(요일4:1). 불신(히3:12), 이단(갈5:20; 딛3:10), 미신(행26: 9), 불신뢰(시78:22;창4:13), 강퍅한 마음(렘5:3; 사42:25;롬2:5), 자만과 허풍(렊13:15;시19:13), 육신적 안도감(습1:12),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마4: 7),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일(롬3:8), 율법적 수단 을 신뢰하는 것(렊17:5), 육신적 쾌락(딤후3:4), 부 패하고 맹목적이고 무분별한 열심(갈4:17;요16:2; 롬10:2;눅9:54~55), 하나님의 일에 미지근하고(계 3:16), 무감각함(계3:1),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과 배교하는 일(겔14:5,사1:4~5), 죽은 성자(聖者) 나 천사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거나 어떤 형태로 든지 예배하는 일(계3:1), 마귀와 더불어 계약을 맺 거나 의논하는 일(레2 0:6.삼상28:7.11;대상10:13 ~14),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일(행5:3), 사 람을 믿음과 양심의 주관자로 만드는 일(고후1:24; 마23:9), 하나님과 그분의 계명을 무시하고 멸시하 는 일(신32:15;삼하12:9;잠13:13),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고 슬프게 하는 일(행7:51;엡4:30),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불만스럽게 여기고 참지못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하시는 징계 때문에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시73:2~3,13~15,22;욥1:22), 우리에게 속했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신에 운명이나(삼상6:7~9), 우상이나(단5:23), 우리 자신이나(신8:17;단4:30), 어떤 다른 피조물을 찬양하는 일(합1:16)등이다.

제106문. 제일계명에 "나 외에" 라는 말이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일계명에 "나 외에" 혹은 "내게"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사물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특별히 아주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가르친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상숭배를 말리려고 타이르시는 말씀이기도 하며 우상숭배가 하나님을 진노케하는 지극히 철면피한 행동임을 알림과(겔8:5~6;시44:20~21)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하듯이 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말씀이기도 하다(대상28:9).

제107문. 제이계명은 무엇인가?

답. 제이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 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하신 것이다(출20:4~6;신5:8).

제108문. 제이계명에 요구된 의무들은 무엇인가?

답. 제이계명에 요구된 의무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으로 제정하신 모든 종교적인 예배와 규례를 순수하 게 전적으로 받아 지키고 보전해야 한다(신32:46~ 47;마28:20;행2:42;딤전6:13~14). 특히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감사하는 일(빌4:6;엡5:20),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하고 듣는 일(신17:18 ~19;행15:21;딤후4:2;약1:21~22;행10:3), 성례 를 집례하고 받는 일(마28:19;고전11:23~30), 교 회를 다스리고 권장하는 일(마18:15~17.16:19;고 전5:1~13,12:28), 교회를 위하여 사역하며 유지하 는 일(엡4:11~12;딤전5:17~18;고전9:7~15), 종 교적인 금식(욜2:12~13;고전7:5), 하나님의 이름으 로 맹세하고(신6:13) 서약하는 일(사19:21,76:1) 등이다. 그뿐 아니라 모든 잘못된 예배를 인정하지 않 고 혐오하며 반대하는 일(행17:16~17;시16:4), 각 자의 처지와 부름 받으심을 따라 잘못된 예배를 배제 하고 우상숭배를 위한 모든 기념물을 제거하는 일이

다(신7:5;사30:22).

제109문. 제이계명에 금하는 죄들은 무엇인가?

답. 제이계명에 금하여진 죄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 신 일이 없는, 그 어떠한 종교적인 예배를 창안하거나 (민15:39), 권장하거나(신13:6~8), 명령하거나(호 5:11;미6:16), 이용하거나(왕상11:33), 어느 정도 인정하는(신12:30~32) 모든 행위이다. 사이비종교 를 관용하는 일(신13:6~12;슥13:2~3;계2:2.14~ 15.20.17:12.16~17), 즉 마음속으로 하든지 어떤 피조물의 형상을 따라 하든지 삼위(三位)의 하나님을 혹은, 그 가운데 어느 위(位)이든 하나님을 대표하는 형상을 만드는 일(신4:15~19;행17:29;롬1:21~2 3,25), 그리고 그 형상이나 그 형상이 대변하는 신에 게 예배하는 모든 일(단3:4;갈4:8), 가짜 신을 만들 고(단3:18;갈4:8;출32:5.8) 거기에 절하거나 섞기 는 일이다(왕상18:26.28;사65:11). 또한 우리 스스 로 창안하고(시106:39) 취하든지, 아니면 고대로부 터 있었던 관습이나(마15:9) 경건, 무슨 좋은 의향에 서라는 등(벧전1:18;렊44:17;사65:3~5,갈1:13~ 14), 무슨 다른 구실을 붙여(삼상13:11~12,15:21)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요소를 가감하여(신4:2) 예 배를 부패하게 하는(말1:7~8.14) 모든 미신적인 일 은(행17:22;골2:21~23) 금하시는 죄이다. 그 밖에 성직매매(행8:18), 신성모독(롬2:22;말3:8), 하나 님께서 정하신 예배와 규례를 무시하거나(출4:24~

26) 멸시하거나(마22:5;말1:7,13) 방해(마23:13) 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행위이다(행13:44~45;살전2 :15~16).

제110문. 제이계명을 더욱 강조하기 위하여 덧붙여진 말씀 은 무엇인가?

답. 제이계명을 더욱 강조하기 위하여 덧붙여진 말씀은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20:5~6)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예절을 요 구하시는(시45:11;계15:3.4) 이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만을 예배하도록 열망하시며(출34:1 3~14) 모든 잘못된 예배는 영적인 매춘행위이므로 (고전10:20~22;렍7:18~20:16:26~27;신32:16 ~20) 그것에 대하여 진노하신다는 말씀이다. 이 계명 을 어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간주하시 고 그들을 벌하시되 몇 세대에 걸쳐 벌하신다고 경고 하시고(호2:2~4), 이를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 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로 귀엽게 보시고 그들에게 많은 세대에 걸쳐 자비를 베푸시기로 약속하시는 말 씀이다(신5:29).

제111문. 제삼계명은 무엇인가?

답. 제삼계명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이다(출20:7).

제112문. 제삼계명에 요구된 의무들은 무엇인가?

답. 제삼계명에 요구된 의무들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묵상 하거나 말하고 글을 쓸 때. 혹은 거룩한 신앙고백을 하고 대화를 나눔 때,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 자신들 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야 하며, 하나님 의 이름과 칭호 및 속성(마6:9;신28;58;시29:2,68 :4;계15:3~4), 그리고 말씀(말1:14; 전5:1;시138 :2), 성례(고전11: 24~25,28~29), 기도(딤전2:8), 맹세(렘4:2), 서약(전5:2,4~6), 제비뽑기(행1:24, 26), 하나님의 역사(役事)(욥36:24), 그 외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며 존경하 는 마음으로 생각하고(말3:16), 묵상하고(시8:1,3~ 4.9), 말하며(골3:17;시105:2.5), 글을 써야(시10 2:18) 하는 한편, 하나님의 영광(고전10:31), 우리 자신과(렘32:39) 다른 이들의 선을 위하여(벧전2:1 2) 거룩한 고백과(벧전3:15;미4:5) 책임 있는 대화 를 할 것을(빌1:27) 요구하신다.

제113문. 제삼계명에 금하는 죄들은 무엇인가?

답. 제삼계명에 금하여진 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말2:2). 하나님의 이름을 무지하게(행17:23), 헛되게(잠30:9), 불손하고 불경

건하게(말1:6~7.12.3:14), 미신적으로 남용하거나 (삼상4:3~5;렊7:4.9~10.14.31.골2:20~22), 혹 은 사악한 마음으로 언급하는 것을 금한다. 그 밖에 하나님의 칭호(왕하18:30,35;출5:2;시139:20), 속성(시50:16~17), 규례(사5:13), 역사(役事)(왕 하19:22;레24:11)를 모독하거나 거짓 맹세함으로 써 이용하는 것과(슥5:4.8:17), 모든 죄악된 저주 (삼상17:43;삼하16:5), 맹세(렊5:7,23:10), 서약 (신23:18;행23:12,14), 제비뽑기(에3:7,9:24;시 22:18). 그리고 적법한 맹세와 서원을 범하는 것(시 24:4; 젤17:16.18~19), 불법적인 맹세와 서원을 지 키는 일(막6:26; 삼상25:22,32~34), 하나님의 작 정과 섭리에 대하여 불평하거나(롬3:5.7.6:1~2), 논 라하거나(시39:1~13;롬9:14,19~20), 그것을 호기 심으로 알아보려고 하거나(신29:29), 하나님의 말씀 이나 그것의 어느 부분을 잘못 해석하거나(벧후3:16 ;마22:24~31), 잘못 응용하거나(마5:21~28), 말씀 전체나 그 일부를 왜곡시키는 일(겔13:22), 속된 농 담(사22:13;렊23:34,36,38), 아무 유익이 되지 못 하는 질문들, 헛된 말다툼, 잘못된 교리를 고집하는 일(딤전1:4.6~7.6:4~5.20;딤후2:14;딛3:9), 점 을 치거나 죄악된 정욕이나 행위를 위하여(딤후4:3 ~4;롬13:13~14;왕상21:9~10;유4) 말씀을 위시하 여 피조물이나 하나님의 이름 아래 있는 어떤 사물을 남용하는 일(신18:10~14;행19:13), 하나님의 진리 와 은혜와 길에 대하여 악의를 푺거나(행13:45;요일

3:12), 조소하거나(시1:1; 벤후3:3), 욕하거나 (벤전4:4), 반대하는 일(행13:45~46,50,4:18,19:9;살전2:16;히10:29), 신앙을 고백하되 위선으로 하거나 사악한 목적을 위하여 하는 것(딤후3:5;마23:14,6:1~2,5,16), 신앙을 고백하는 일을 부끄러워하는 일, 불순종하며(시73:14~15), 우둔하게(고전6:5~6;엡5:15~17), 열매 없이(사5:4; 벤후1:8~9), 적대적인 처신을 하고 종교를 배반함으로써(롬2:23~24),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거나 그 이름에 수치를 돌리는 일(막8:38;갈3:1,3;히6:6) 등이다.

제114문. 제삼계명을 강조하기 위하여 덧붙여진 말씀은 무엇인가?

답. 제삼계명에 덧붙여진 말씀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출20:7). 여호와는 우리 주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되며, 어떤 모양으로든지 남용 해서도 안 된다(레19:12). 하나님께서는 특히 이 계명을 어기는 자를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삼상2:12,17,22,24,3:13). 비록 사람들이 정한 법이나 형벌은 혹시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로운 심판을 벗어나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것이다(겔36:21~23;신28:58~59;슥5:2~4).

제115문. 제사계명은 무엇인가?

답. 제사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 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이다(출20:8~11).

제116문. 제사계명에 요구된 의무들은 무엇인가?

답. 제사계명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정하신 시간을, 즉 이레 중 한 날을 종일토록 거룩하게구별하여 하나님께 거룩히 지키도록 요구하신다. 그날이 창세로부터 예수께서 부활하시기까지는 일곱째날이었다. 부활 이후부터 이레 중 첫날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계속된다. 이 첫날이 곧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신5:12~14;창2:2~3;행20:7;마5:17~18;사56:2,4,6~7)로, 신약에서는주의날(주일)이라고 부른다(계1:10).

제117문. 안식일 또는 주의 날을 어떻게 성수해야 하는가?

답. 안식일 또는 주일을 지키려면, 어느 때나 죄가 되는 일은 물론이고 다른 날의 합법적인 세상의 일이나 오락도 온 종일 쉬면서(출16:25~28;느13:15~22;렘1 7:21~22) 이 날을 구별해야 한다(출20:8,10). 이

날에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자비를 베푸는 일을 위하여 시간을 할애하는 일을(마12:1~13) 제외하고 는 하나님을 공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일에 모든 시간을 즐겨 바쳐야 한다(사58:13;눅4:16;행20:7;고전16:1~2;사66:23;레23:3).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이 날을 바라면서 우리가 종사하는 세상일을 열심히, 절제 있게, 시기에 맞추어 수행하고 처리하여 이 날을 지키기에 더 자유롭고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출20:8;눅23:54,56;출16:22.25~26.29;느13:19).

제118문. 제사계명이 특별히 가족의 어른들과 다른 윗사람들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답.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두고 가장(家長)과 윗사람들에 게 책임을 더 지우는 특별한 이유는 그들은 스스로만 이 날을 지킬 뿐 아니라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잘 지키는지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때때로 아랫 사람들에게 일을 시켜 이 날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출20:10;수24:15;느13:15,17;렘17:20~22;출23:12).

제119문. 제사계명에서 금하는 죄들은 무엇인가?

답. 제사계명에 금하여진 죄들은 요구하시는 모든 의무를 저버리는 일(젤22:26), 부주의 하는 일, 게으른 일, 무익하게 실행하는 일, 싫증을 내는 일들이다(행20: 7,9;젤33:30~32;암8:5;말1:13). 또한 게으름을 피 위 이 날을 속되게 하는 일, 죄악된 일을 하는 것(껠2 3:38), 우리가 종사하는 세상일과 오락에 관하여 모든 쓸데없는 일을 하거나 말하며 생각하는 것이다(렘 17:24,27;사58:13).

제120문. 제사계명을 더욱 강조하기 위하여 덧붙여진 말씀 은 무엇인가?

답. 제사계명을 더욱 강조하기 위하여 덧붙여진 말씀은 형 평(衡平)을 배려하시는 말씀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을 위하여 이레 중 엿새를 허락하시고, 하루를 당신을 위하여 지키도록 이렇게 말씀하신다.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출20:9), 그리고 안식일을 특별한 예절을 갖추어 잘 지키도록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이라고 말씀하시고(출20:10),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본 받도록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날을 복 주어 당신을 섬기는 날이 되도록 구별하실 뿐 아니라, 그 날을 우리가 거룩히 지킴으로써 복 받는 방편이 되도록 제정하셨다(출20:11).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121문. 제사계명의 첫머리에 왜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셨는가?

답. 제사계명의 첫머리에 '기억하여'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출20:8) 안식일을 기억함으로써 크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출16:23;눅23:54.56;막15: 42;느13:19). 이 날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될뿐더러 또한 이 날을 지킦으로써 나머지 다 른 계명들도 더 잘 지킬 수 있으며(시92:13~14;겔2 0:12.19~20), 우리 종교적 신앙의 요점이 되는 하 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위대하신 두 역사(役事)를 기 억함으로써 계속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창2: 2~3;시118:22,24;행4:10~11;계1:10). 한편으로 는 우리가 이 날을 잊어버리기를 잘하지만(겔22:26; 느9:14) 자연의 빛이 우리를 기억하도록 일깨워 주지 는 못하며 이 날이 합법적인 다른 시간에 일할 수 있 는 우리가 본래 가진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이다(출3 4:21). 또한 안식일이 이레 만에 한번 있는데 세상일 에 할 것이 많아서 안식일을 생각하는 일에 정신을 쓰 거나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거나 성별할 겨름이 없기 때문이다(신5:14~15;암8:5). 그리고 사탄은 온갖 수단을 다 써서 영광을 차단하려고 하며 심지어는 안 식일을 기억하는 일조차 못하게 방해하며, 불신앙과 불경건을 가져오기 때문이다(애1:7;렊17:21~23.1 $3:15\sim23$).

제122문. 사람에 대한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나머지 여섯 계명의 요점은 무엇인가?

답.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말씀하는 여섯계명을 요약 하자면, 이웃을 우리 자신들 사랑하듯이 사랑하고(마 22:39) 남이 우리에게 해 주었으면 하는 대로 남에게 하는 일이다(마7:12).

제123문. 제오계명은 무엇인가?

답. 제오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이다(출20:12).

제124문. 제오계명의 "부모"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답. 제오계명의 "부모"는 육신의 부모를 가리킬 뿐 아니라 (잠23:22,25;엡6:1~2) 나이가 많거나(딤전5:1~2) 보다 훌륭한 은사를 가진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창4:20~22,45:8). 특히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가정이나(왕하5:13) 교회(왕하2:12,13:14;갈4:19)에서 우리 위에 있거나 국가의 공직에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사49:23).

제125문. 왜 윗사람들을 부모로 생각해야 하는가?

답.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부모로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육친의 부모처럼 아랫사람들에게 해야 할 모든 의무를 다하도록 가르치며 여러 면에서 아랫사람들에게 사랑과 유순함을 나타내기 위함이며(엡6:4;고후12:14;살전2:7~8,11;민11:11~12), 또한 아랫사람들로 하여금 윗사람들에게 해야 할 의무를 마치 부모에게 하듯이 자발적으로 즐겁게 수행하도록 함이다(고전4:14~16;왕하5:13).

제126문. 제오계명의 일반적 범위는 무엇인가?

답. 제오계명의 일반적 범위는 아랫사람이나 윗사람으로 서, 혹은 동등한 처지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사람들 이 피차간에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 는 것이다(엡5:21;벧전2:17;롬12:10).

제127문.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마땅히 드려야 하는 존경 은 어떤 것인가?

답.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표해야 하는 경의는 마음으로 (말1:6;레19:3), 그리고 말이나(잠31:28;벧전3:6) 행동으로, 마땅한 존경을 표하는 것이다(레19:32;왕 상2:19). 윗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감사하며(딤 전2:1~2), 그들의 덕망과 은혜를 본받으며(히13:7; 빌3:17), 옳은 명령이나 충고에 기꺼이 순종하고(엡 6:1~2.5~7; 벧전2:13~14; 롬13:1~5; 히13:17; 잠4:3~4,23:22;출18:19,24), 잘못을 지적할 때 순 순히 받아들이며(히12:9;벧전2:18~20), 그들의 서 열과 지위를 따라 그들의 인품이나 권위를 보호하고 유지케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며(딛2:9~10), 윗사 람들의 약젂들을 관용하고(삼상26:15~16;삼하1 8:3;에6:2;마22:21;롬13:6~7;딤전5:17~18;갈6 :6;창45:11,47:12), 사랑으로 덮어 주어(벧전2:1 8;잠23:22;창9:23) 그러한 약점들이 그들 자신과 그들이 다스리는 일에 명예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다(시127:3~5;잒31:23).

제128문.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하여 범하는 죄들은 무엇인가?

답.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범하는 죄는 그들이 윗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며(마15:4~6) 윗사람들이 옳은 충고를(삼상2:15) 하거나 명령하고 잘못을 지적할 때 그들의 인격이나(출21:15) 위치(삼상10:27)를 질시하거나(민11:28~29) 멸시하고 (삼상8:7;사3:5), 그들에게 반발하는 일(신21:18~21;삼하15:1~12), 저주하고 조소하는 일, 그리고 그들 자신과 그들이 다스리는 직무에 부끄러움이 되고 불명예가 되는 불복종하고(잠19:26) 중상하는(잠30:11,17) 모든 행위이다.

제129문. 아랫사람에 대하여 윗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윗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권세를 따라 그리고 자기들이 서있는 위치를 따라 아랫사람들을 사랑하고(골3:19; 딛2:4) 위하여 기도하며(삼상12:23;욥1:5) 축복하는 것이다(왕상8:55~56;히7:7;창49:28).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신6:6~7), 견책하며 그들에게 충고하며(엡6:4), 일을 잘하는 사람을 격려하고(벧전3:7), 칭찬하며(벧전2:14;롬13:3), 포상하는(에6:3) 반면 잘못하는 사람에게는 경고하고(롬13:3~4) 견책하고 징벌하는 것이다(잠29:15;벧전2:14). 또한 아랫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영(엡6:4), 육으로(딤

전5:8)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이다(욥29:12 ~17;사1:10,17). 이 모든 일을 당당하고 현명하며 거룩하게 모범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딤전4:12; 딤후2:3~5) 자신들에게는 명예가 되도록 해야 하며(왕상3:28)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권위를 지키는 일이다(딛2:15).

제130문. 윗사람의 죄는 무엇인가?

답. 윗사람이 범하는 죄는 그들이 다해야 하는 의무를 소 홀히 할 뿐 아니라(겔32:2,4), 부당하게도 자신들의 영광(요5:44,7:18), 안일, 유익 또는 쾌락(사56:1 0~11,신17:17)을 추구하며(빌2:21), 비합법적인 일이나(단3:4~6;행4:17~18) 아랫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명하는 일(출5:10~18,마2 3:2,4), 악을 행하는 자를 자문하고(마14:8;막6:2 4) 고무하며(삼하13:28),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일 (삼상3:13;요7:46~49;골3:21;출5:17). 그들의 잘 못을 부당하게 고치려고 하는 일(벧전2:18~20;히12 :10;신25:3), 잘못된 일이나 유혹이나 위험에 부주 의하게 빠지게 하거나 그냥 내버려두는 일(창38:11, 26;행18:17). 아랫사람들을 노엽게 하는 일(엡6:4) , 옳지 못하거나 경솔하거나, 가혹하거나, 게으른 행 위로 어떻게든 불명예를 자취하거나 자신들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다(창9:21;왕상12:13~16;왕상1: 6;삼상2:29~31).

제131문. 동료 간의 의무는 무엇인가?

답. 동료 간의 의무는 먼저 남을 존경으로 대함으로써(벤전2:17) 상대방의 인격과 존엄성을 존중하며(롬12:10), 상대방의 재능과 발전을 자기 것처럼 기뻐하는 것이다(롬12:15~16;빛2:3~4).

제132문. 동료 간에 범하는 죄는 무엇인가?

답. 동료 간의 범하는 죄는 마땅히 서로에게 다해야할 의무를 소홀히 할 뿐 아니라(롬13:8) 남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며(딤후3:3) 남이 가진 재능을 질시하거나(행7:9;갈5:26) 남이 잘되는 일에 배 아파하고(민12:12;에6:12~13) 남이 자기보다 뛰어난 것을 모함하는일이다(요삼1:9;눅22:24).

제133문. 제오계명을 더욱 강조하기 위하여 덧붙여진 말씀 은 무엇인가?

답. 제오계명에서 이유를 덧붙여 하시는 말씀은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이다. 이 말씀은(출20:12)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되고 자신들에게유익이 되는 한, 장수와 번영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약속을 표현하신 것이다(신5:16;왕상8:25;엡6:2~3).

제134문. 제육계명은 무엇인가?

답. 제육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는 것이다(출20:13).

제135문. 제육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무엇인가?

답. 제육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우리 자신과(엡5:28~29) 남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주의 깊게 연구 조사하 고 법을 따라 노력하는 것이다(왕상18:4), 그러기 위 해서 모든 격정을 제어하고(렊26:15~16;행23:12. 16~17,21,27) 불법한 자들이 타인의 생명을 해치 려는 충동을(엡4:26) 받게 하는 사건들이나(삼하2: 22; 신22:8) 유혹이나(마4:6~7,1:10~11,15~16), 행동을(삼상24:12.26:9~11;창37:21~22) 사전에 막아야 하며, 폭행에 대하여 정당하게 방어하며(시8 2:4; 잠24:11~12; 삼상14:45) 조용한 마음과(살전 4:11; 벧전3:3~4; 시37:8~11) 쾌활한 정신을 (잠17 :22)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한다(약5:7~11;히12:9). 그리고 먹고(잠25:16~ 7), 마시고(디전5:23), 약 쓰는 일을(사38:21) 적절 히 하고 수면을(시127:2) 취하거나 노동하며(전 5:12;살후3:10,12;잒16:26) 오락을 즐기는 일도 적당히 해야 한다(전3:4.11). 박애정신과(삼상19: 4~5,22:13~14) 사랑(롬13:10), 남을 불쌍히 여기 는 마음을 가지며(눅10:33~34), 온유하고, 관대하 며, 친절하며(골3:12~13), 온화하고(약3:17) 정중 한 말씨와 행동을 가져야 한다(벧전3:8~11;잠15:1 ~3). 그리고 오래 참으며, 즐겨 화해하며, 피해를 볼 때 참고 용서하며(마5:24;엡4:2,32;롬12:17,20~ 21), 악을 선으로 갚으며 실의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 고 도우며, 무죄한 자를 보호하고 변호해야 한다(살 전5:14; 욕31:19~20; 마25:35~36; 잒31:8~9).

제136문. 제육계명에 금한 죄는 무엇인가?

답. 제육계명에 금해져 있는 죄는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행16:28) 남의 생명을 해치는 모든 행위이다(창9: 6). 단, 재판의 선고를 집행할 경우(민35:31.33), 합 법적인 전쟁이나(렊48:10;신20:1~20) 불가피한 정 당방어는(출22:2~3) 예외이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 하여 취해야 하는 합법적이며 불가결한 방법을 소홀 히 하거나 취하지 않는 일(마25:42~4;약2:15~16; 전6:1~2), 죄악된 분노(마5:22), 미워하는 일(요일 3:15.레19:17), 시기하는 일(잠14:30), 원수를 갚 으려는 마음(롬12:19), 모든 과격한 격정(엡4:31),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일(마6:31,34), 무절제하게 먹 고 마시고(눅21:34,롬13:13) 일하고(전12:12, 2:22~23), 오락을 즐기는 일(사5:12), 싸움을 거는 말(잠15:1,12:18), 압제하는 일(겔18:18;출1:14), 싸움(갈5:15;잠23:29), 사람을 치는 일, 상처를 입히는 일(민35:16~18,21), 그리고 남의 생명을 파 멸로 이끄는 모든 일이다(축21:18~36).

제137문. 제칠계명은 무엇인가?

답. 제칠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이다(출20:14).

제138문. 제칠계명에 요구된 의무들은 무엇인가?

답. 제칠계명에 요구된 의무들은 몸과 마음에 그리고 사 랑하고(살전4:4;욥31:1;고전7:34), 말하고(골 4:6), 행동하는 일에 정숙을(벧전2:3) 요구하신다. 우리 자신과 남들에게 정숙함을 지니도록 하는 일(고 전7:2,35~36), 사람들의 눈과 모든 감각을 조심스럽게 살피는 일(욥31:1), 자제하는 일(행24:24~25), 정숙한 친구를 사귀는 일(잠2:16~20), 옷을 수수하게 입는 일(딤전2:9), 욕정을 자제할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결혼하는 일(고전7:2,9), 부부간에 사랑하는 일(잠5:19~20), 별거하지 않는 일(벧전3:7), 직업에 열심히 종사하는 일(잠31:11,27~28), 부정한 모든 일을 피하고, 그러한 유혹을 물리치는 일(잠5:8,창39:8~10) 등이다.

제139문. 제칠계명에 금한 죄는 무엇인가?

답. 제칠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요구된 의무들을 소홀히 (잠5:7) 하는 외에 간통과 사통(히13:4;갈5:19;삼하 11:4,27;마5:28;잠:32~33;신22:25), 강간, 근친 상간(삼하13:14;고전5:1;막6:18;레18:1~21;갈5:17,19;고전6:18), 남색, 모든 부자연스러운 정욕, 모든 부정한 상상과 생각, 목적 및 애정이며(롬1:24, 26~27;레20:15~16;엡5:3;왕상15:12), 부패하 거나 더러운 모든 서신 왕래, 혹은 그것에 귀를 기울이며, 음탕한 표정, 뻔뻔스럽고 가벼운 행동(마5:28, 15:19;골3:5;엡5:3~4;렘5:7), 근신치 않는 무례한 옷차림을 하는 것. 또한 합법한 결혼을 금지하고.

불법한 결혼을 시행함이며, 매음을 허락, 관용, 보존하며 그들에게 종종 가는 것이며(잠7:5,21~22;사3: 16;벤후2:14;잠7:10,13;딤전4:3;말2:11~12;신 23:17~18;레19:29;마19:5,10~11;고전7:7~9), 불의의 이혼 혹은 유기이며(창38:26;말2:14~16;마5:8), 그리고 게으름, 폭식, 술 취함, 음란한 친구 사귐이며, 음탕한 노래와 서적, 춤, 연극(겔23:14~16;사23:15~17;막6:22),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음란을 자극하는 것이나 음란의 행위(사3:16;롬13:14;벧전4:3;왕하9:30;렘4:30;겔23:40) 자체들이다.

제140문. 제팔계명은 무엇인가?

답. 제팔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는 것이다(출20:15).

제141문. 제팔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무엇인가?

답. 제팔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사람들 간에 맺는 계약과 상거래에서 진실하고 성실하며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 다(시15:2,4;슥7:4,10,8:16~17). 누구에게나 빚 진 것은 갚고(롬13:7), 정당한 소유자로부터 불법적 으로 점유한 물품은 상환하는 일이다(레6:2~5;눅1 9:8). 우리가 능력있고 남이 필요로 할 때 자유롭게 주거나 빌려주는 일(눅6:30,38;요일3:17;엡4:28; 갈6:10), 세상 물건에 대하여는 우리의 판단이나 의 지나 애착심을 절제하는 일(딤전5:8), 우리의 체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하고 편리하며 우리의 조건에 적절한 물건들을 취하고 보존하고 사용하며(잠27:23~27; 전2:24,3:12~13;딤전6:17~18) 버리는 일을 두고 신중하게 살피며 연구해야 하는 일(고전7:20;창2:1 5,3:19), 합법적인 직업과(고전7:20;창2:15,19) 그 일에 열심히 종사하는 일(엡4:28;잠10~4), 검약 하는 일(요6:12;잠21:20), 불필요한 소송을(고전6 :1~9) 하거나 보증을 서거나 그와 비슷한 일을 하는 것을 피하는 일(잠6:1~6,11:15), 우리뿐 아니라 남 들도 부와 재산을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획득 하고 보전하도록 노력하는 일이다(레25:35;신22:1 ~4;출23:4~5;창47:14,20;빌2:4;마22:39).

제142문. 제팔계명에 금한 죄는 무엇인가?

답. 제팔계명에 금해져 있는 것은 요구하시는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약2:15~16;요일3:17), 이외에 절도(앱4:28), 강도(시62:10), 사람을 훔치는 일(딤전1:10), 장물을 취득하는 일(잠29:24), 사기를 치는 일(살전4:6), 저울과 자를 속이는 일(잠11:1,20:10), 토지의 경계표시를 옮기는 일(신19:14;잠23:10), 사람들 간의 계약이나 신용거래를 불공정하게 그리고 불성실하게 맺거나(암8:5;시37:21;눅16:10~12) 이행하는 일, 압제(겔22:19;레25:17), 강탈(마23:25;겔22:12), 고리대금(시15:5), 수뢰(욥15:34), 소송의 남용(고전6:6~8;잠3:29~30), 부당하게 울타리를 치고 사람들을 내쫓는 일(사5:8;미2:2), 가격을 올리기 위한 매점매석하는 일(잠11:26), 비합법

적인 직업, 이웃의 물건을 불공정하고 죄악된 방법으로 취하거나 압류하는 일(행19:19,24~25),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부를 쌓는 일(욥20:19;약5:4;잠21:6), 탐욕(눅12:15), 세상의 물건을 과도하게 취하고 사용하는 일(딤전6:5;골3:2;잠23:5;시62:10), 세상 물건들을 신용할 수 없게 산만하게 살펴 그것들을 취하고 보존하고 사용하는 일(마6:25,31,34;전5:12), 남의 번영을 질투하는 일(시73:3,37:1,7), 그러면서 게으르고 낭비하며(살후3:11;잠18:9) 방탕한 놀음을 하는 일, 그 밖에 여러 다른 길로 우리 자신의외적인 재산에 부당하게 손상을 주는 일(잠21:17, 2:20~21,28:19),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산을 적절히 이용하고 거기서 편이를 보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 사취(詐取)하는 일 등이다(전4:8,6:2; 담전5:8).

제143문. 제구계명은 무엇인가?

답. 제구계명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라" 는것이다(출20:16).

제144문. 제구계명에 요구된 의무들은 무엇인가?

답. 제구계명에 요구된 의무들은 사람들 간에 있어야 하는 진실함과(숙8:16) 우리 자신들의 명예뿐 아니라 우리 이웃의 명예를 지키고 증진하는 일이다(요삼 12).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공중 앞에 나서는 일(잠 31:8~9), 진실을 마음으로부터(시15:2) 진지하게

(고후1:17~18;엖4:25;대하19:9), 자유롭게(삼상1 9:4~5), 명백하게(수7:19), 그리고 충분하게 말하는 일(삼하14:18~20), 재판에 임하여서나 그 밖에 어 떤 다른 경우에도 진실만을 말하는 일(레19:15;잒 14:5,25), 우리의 이웃을 자애(慈愛)로 평가하는 일 (히6:9;고전13:7), 그들의 명예를 사랑하고 갈망하 며 즐기는 일(롬1:8;요이4;요삼3~4), 그들의 연약 한 점을 슬퍼하며(고후2:4,12:21) 덮어주는 일(잠1 7:9; 벧전4:8), 그들의 재능과 은사를 아낌없이 인정 해 주고(고전1:4~5.7; 딖후1:4~5), 그들의 무죄를 변호해 주는 일(삼상12:14), 이웃에 대해 좋은 소식 은 쉽게 받아들이지만(고전13:6~7), 나쁜 소식은 쉽 사리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자세(시15:3), 말을 옮 기거나(잠25:23) 아첨하거나(잠26:24) 남을 중상하 는 자를 저지하는 일(시101:5), 우리 자신의 명예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잠22:1;요8:49) 필요할 때 는 변호하는 일, 합법적인 약속을 지키는 일(시15:4) , 참되고 정직하며 사랑스러운 일이나 좋게 소문난 일 은 무슨 일이든 잘 배워서 실천하는 일 등이다(발4:8).

제145문. 제구계명에 금지된 죄들은 무엇인가?

답. 제구계명에 금지된 죄들은 우리 자신의 명예가(삼상 17:28; 삼하16:3,1:9,10,15~16) 아니라, 우리 이 웃의 명예에 손상을 주는, 특히 법정에서 그러는 모든 일이다(레19:15;합1:4). 거짓증거를 대는 일(잠19

:5.6:16.19), 거짓증언을 하도록 부추기는 일(행6 :13), 사악한 송사를 위하여 고의로 나타나 호소하며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거나 억압하는 일(렘9:3,5; 행24:2.5;시12:3~4.52:1~4), 불공정한 판결을 내 리거나(잠17:15;왕상21:9~14)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고 하는 일, 옳은 일로 인하여 악한 자에 게 상주고, 악한 일로 인하여 옳은 사람을 벌하는 일 (사5:23), 위조하는 일(시119:69;눅19:8,16:5~7), 진실을 은폐하는 일, 법정에서 부당하게 침묵하는 일(레5:1;신13:8;행5:3,8~9;딤후4:6), 불법에 대 하여 우리 스스로 비난해야 하고(왕상1:6;레19:17) 다른 사람들이 불평해야 하는 시점에 우리의 평화를 유지하는 일(사59:4;잠29:11), 진실을 때를 가리지 않고 말하거나(레19:16)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 고 진실을 말하거나(시56:5;요2:19;마26:60~61) 진실을 나쁜 의미로(창3:5.26:7.9) 왜곡시키거나(사 59:13) 의심스럽거나 모호한 표현으로 말하여 진실 혹은 정의에 손상을 주는 일이다. 진실 아닌 것을 말 하고(레19:11;골3:9), 거짓말하며(시50:20), 비난 하고(시15:3), 모함하며(약4:11;렊38:4), 비방하며 (레19:16), 말을 옮기고(롬1:29~30), 수군거리며 (창21:9;갈4:29), 조소하며(고전6:10), 욕하며(마 7:1), 경솔히(행28:4), 거칠게(창38:24; 롞2:1), 그 리고 편파적으로 비평하는(느6:6~8;롬3:8;시69:1 0;삼상1:13~15;삼하10:3) 등등의 일, 남의 의도나 말이나 행동을 곡해하는 일(시12:2~3), 아첚하는 일

(딖후3:2), 헛되게 자랑하는 일(눅18:9.11;롬12 :16;고전4:6;행12:22;출4:10~14), 우리 자신이나 남을 너무 과장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일(욥27:5~6, 4:6), 하나님의 은사와 은총을 부인하는 일(마7:3~5), 작은 실수를 악화시키는 일(작28:13,30:20;창3: 12~13;렘2:35;왕하5:25;창4:9), 죄를 거리낌 없이 고백하라는데도 숨기거나, 변명하거나, 가볍게 생각 하는 일(창9:22;잒25:9~10), 남의 약점을 불필요하 게 찾아내는 일(출23:1), 거짓 소문을 퍼뜨리거나(잠 39:12) 잘못된 보고를 받아들이고 장려하는 일(행7 :56~57;욥31:13~14)과 정당한 변호에 귀를 막게 하는 일(고전13:5;딤전6:4), 악의에 찬 의심(민11: 29;마21:15), 남이 당연한 좋은 평가를 받는 데 대 하여 질투하거나 배 아파하며(스4:12~13) 어떻든 그 것을 해치려고 안달하는 일(렘48:27), 남이 불명예 와 수치를 당하면 기뻐하는 일(시35:15~16, 21;마 9), 조소하고 경멸하는 일(유16;행12:22), 몰지각하 게 선망하는 일(롬1:31;딤후3:3), 합법적인 약속을 파기하는 일(삼상2:24), 좋은 소식에 속하는 일 등을 무시하는 일, 남에게 불명예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피하려고도 하지 않고 막으려고도 하지 않으 며 그냥 실행하는 일 등이다(삼하13:12~13;잠5:8~ 9.6:33).

제146문. 제십계명은 무엇인가?

답. 제십계명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이 다(출20:17).

제147문. 제십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인가?

답. 제십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우리 자신의 처지를 흡족하 게 여기며(히13:5;딤전6:6) 이웃에 대하여 우리의 온 영혼을 다하여 사랑하며 이웃 사람의 마음에 감동 을 줄만큼 이웃과 이웃의 재산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 이다(욥31:29;롬12:15;시122:7~9;딤전1:5;고전 13:4~7).

제148문. 제십계명에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답. 제십계명에 금해져 있는 죄는 우리의 처지에 대하여 불만스럽게 여기는 일(왕상21:4;에5:1;고전10:10) , 이웃의 재산을 질시하거나(갈5:26;약3:14,16) 시 기하는 일(시112:9~10;느2:10), 그리고 그에게 속한 것에 대하여 도리에 벗어난 감정이나 애착을 두는 것이다(롬7:7~9;골3:5;신5:21).

제149문.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가?

답. 사람은 아무도 혼자 힘으로나(약3:2;요15:5;롬8:3) 이 세상에서 받은 어떠한 은혜로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는 없다(전7:20;요일1:8,10,갈5:17; 롬7:18~19). 우리는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창6:5,8:21)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롬3:9~19,약3 :2~13).

제150문. 계명에 대한 모든 범죄는 본질상,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돗듯하게 악한가?

답.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모든 범죄는 양편에 다 가증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속에 있는 어떤 죄들은 여러 면으로 더 악화하여서 다른 죄들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가증한 것이 있다(요19:11;젤8:6,13,15;요일5:16;시78:17,32,56).

제151문. 어떤 죄들을 다른 죄보다 더 흉악하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인가?

- 답. 죄가 더 악화하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 1. 법을 어기는 사람에 의하여(렘2:8;욥32:7,9;전4:1 3), 만일 그들이 비교적 성숙한 나이에 있으며 더 많은 경험을 가졌고, 은혜를 맛본 자이면(왕상11:4,9) 그리고 뛰어난 직업인이며(삼하12:14;고전5:1), 그의 재능과(약4:17;눅12:47~48) 직위가(렘5:4~5; 삼하12:7~9;겔8:11~12) 남을 지도할 만한 위치에 있다면(롬2:17~24) 사람들은 아마도 그를 쉽게 본받을 것이다(갈2:11~14).
 - 2. 범법의 피해자에 의하여(마21:38~39) 누구든지 하 나님과(삼상2:25;행5:4;시51:4) 그분의 속성들을 (롬2:4;말1:8,14) 대적하거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 혜에 대적하고(히2:2~3,12:25), 성령과 그분의 증

거와 역사에 대적하며(히10:29;마12:31~32;엡4: 30;히6:4~6) 뛰어난 사람들에게(유8;민12:8~9;사 3:5)와 특히 우리와 관련이 있고 같이 일하는 상사에 대하여(잠30:7;고후12:15;시55:12~15) 대적하면 죄는 악화한다. 그리고 어느 한 성도에게 특히 약한 형제들에게(습2:8,10~11;마18:6;고전6:8;계17:6) 그들의 영혼들에나 그 어느 한 영혼에 범법하거나(고전8:11~12;롬14:13,15,21;껠13:19;고전8:12;계18;12~13;마23:15) 모든 사람에게 아니 적어도 사람 다수에게 공통되는 선(善)을 거슬려 범법하면 죄는 악화한다(살전2:15~16;수22:20).

3. 범법의 성격과 특질로부터(잠6:30~33) 문자로 명시된 율법을 거스르거나(스9:10~12;왕상11:9~10) 많은 계명을 어기면(골3:5;딤전6:10;잠5:8~12,6:32~33;수7:21) 그리고 그 범법에 많은 죄가 내포되어 있으면 죄가 악화한다. 만일 마음으로 생각할 뿐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범하거나(약1:14~15;마5:22;미2:1) 남에게 올무가 되거나(마18:7;롬2:23~24) 아무런 고침을 받기를 허락지 않으면(신22:22,28~29;잠6:32~35) 그리고 만일 방편이나(마18:7;롬2:23~24), 자비(사1:3,신32:6), 판단(암4:8~11;렘5:3), 자연의 빛(롬1:26~27), 양심의 확신(롬1:32;단5:22;딛3:10~11), 공적이거나 사적인 징벌(잠29:1), 교회의 권징(딛3:10;마18:17), 시민사회의 형벌 등을 거스르면(잠23:35,27:22), 또한 우리의 기도, 목적, 약속, 서약, 언약, 하나님이나 사람에

게 한 약속들에 반대하면(시78:34~37;렘42:5~6, 20~21;전5:4~6;잠20:25;레26:25) 그리고 만일 고의로(시36:4;렘6:16) 의도적으로 주제넘고 뻔뻔 스럽게(민15:30;출21:14;렊3:3;잒7:13;시52:1) 자랑하면서 악의에 차서(요삼10;겔35:5~6), 자주 (민14:22), 고집 세게(슥7:11~12), 즐기면서(잠2: 14), 계속(사57:17), 회개한 다음에 다시 나쁜 길로 빠지면 죄가 더 악화한다(렊34:8~11;벤후2:20~2 2). 때와(왕하5:26) 장소의(렘7:10;사26:10) 상황 때문에 주일이나(겔23:37~39) 또는 다른 예배시간 에(사58:3~5;민25:6~7), 혹은 예배시간 직전이나 (사58:3~5;민25:6~7) 직후에(고전11:20~21) 혹 은 그러한 실패를 방지하거나 구제할 다른 도움이 있 으면(렊7:8~10;잠7:14~15;요1:27.30) 그리고 만 일 공중 앞에서나 쉽게 충동을 받고 오염될만한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죄가 악화할 수 있다(삼하16:2;삼 **상2:22~24**).

제152문. 모든 죄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받아 마땅한가?

답. 모든 죄는 아무리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약2:1 0~11) 선하심과(출20:1~2) 거룩하심을(합1:13; 레10:3,11:44~45) 거스르고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을 어기는 것이므로(요일3:4;롬7:12) 이 세상이나 (애3:39;신28:15~68) 장차 오는 세상에서(마25:4 1)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하며(엡5:6;갈 3:10)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사유함을 받을 수가

없다(히9:22; 벧전1:18~19).

- 제153문. 율법에 대한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 답. 우리가 율법을 어김으로 받게 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행20:21;미3:7~8;눅13:3,5;행16:30~31;요3:16,18)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중보기도가 유익함을 알려주시는 외적인 방편을 부지런히 이용하도록 요구하신다(잠2:1~5,8:33~36).
- 제154문.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중보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해 사용하는 외적 방편은 무엇인가?
 - 답.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교회에 당신의 중보가 유익함을 알려주시는 외적이며 보편적인 방편은 당신이 정하신 모든 규례이다.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이 모두가 다 택함을 받은 자가 구원을 이루는데 효력을 주는 것이다(마28:19~20,행2:42,46~47).
- 제155문.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데 말씀이 어떠한 효력이 있는가?
 - 답. 말씀을 읽을 때 특히 설교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유효한 방편이 되게 하셔서 죄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느용:8;행26:18;시19:8) 확신하게 하시며

겸손하게 하신다(고전14:24~25; 대하34:18~19,26~28). 또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벗어나서 그리스도께 오도록 하시며(행2:37,41,8:27~39)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고후3:18),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며(고후10:4~6;롬6:17) 유혹을 물리치고 부패하지 않도록 힘을 주신다(마4:4,7,10;엡6:16~17,시19:11;전10:11). 또한 은혜로 양육하시며(행20:32;딤후3:15~17) 그들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신다(롬16:25;살전3:2,10~11,13;롬15:4,10:13~17).

제156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가?

답. 비록 모든 사람이 회중 앞에서 말씀을 읽도록 허용되고 있지는 않지만(신31:9,11~13;노8:2~3,9:3~5) 사람들은 누구나 혼자서(신17:19;계1:3;요5:39;사 34:16) 혹은 가족과 더불어 말씀을 읽어야한다(신6: 6~9;창18:17,19;시78:5~7). 그러한 목적으로 원 어성경을 사람들의 일상용어로 번역한 것이다(고전1 4:6,9,11~12,15~16,24,27~28).

제157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답. 성경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아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시19:10; 는8:3~10; 출24:7; 대하34:27; 시66:2). 다시 말하면 성경이 곧 하나님 의 말씀이라는 사실과(벤후1:19~21) 하나님께서만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이해하게 하실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눅24:45;고후3:13~16). 말씀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려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신17:10, 20) 말씀의 주제와 관점이 무엇인지 알려고 부지런히(행17:11) 주의를 기울여야(행8:30,34;눅10:26~28)한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시1:2,119:97)적용하며(대하34:21) 자기를 부인하고(잠3:5;신33:3) 기도해야한다(잠2:1~6;시119:18;느7:6).

제158문.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선포할 수 있는가?

답. 하나님 말씀의 선포는 그 일을 위하여 충분한 은사를 받은 자로서(딤전3:2,6,엡4:8~11;호4:6;말2:7;고후3:6) 정식으로 인정을 받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렘14:15;롬10:15;히5:4;고전12:28,29;딤전3:10,4:14,5:22)하는 것이다.

제159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직분에 부르심은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어떻게 선포해야 하는가?

답. 말씀사역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때를 얻든 지 못 얻든지(딤후4:2) 부지런히(행18:25) 바른 교리를 설교해야 한다(딛2:1,8). 쉬운 말로 해야 하며, 사람의 지혜로 사람을 끌려고 하기 보다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고전3:2,2:4).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낱낱이(행20:27) 충성스럽게(렘23:28;고전4:1,2) 알게 하며 청중에게 무엇이

필요하며(골1:28;日후2:15) 받아들일 것인지를 알아서 거기에 자신들을 적응시켜야 한다(고전14:19; 히5:12~14;눅12:42). 하나님과(고후5:13~14;빌1:15~17)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 불붙는 사랑을 가지고(골4:12;고후12:15) 열심히 하며(행18:25;고후2:17,4:2)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살전2:4~6;요7:18) 삼음과 동시에 사람들이 거듭나고(고전9:19~22) 교화를 받아 구원에 이르도록 열심히 해야한다(고후12:19;엡4:12;딤전4:16;딤후2:10;행26:16~18).

제160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답.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말씀을 듣기 위하여열심히 하며(잠8:34) 준비하고(벧전2:1,2;눅8:18),기도함으로(시119:18;엡6:18~19) 참여해야한다. 그들이 듣는 것을 성경말씀에 비추어 검토하고(행17:11),진리를 믿음과(히4:2),사랑과(살후2:10),온유함과(약1:21),열린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며(행17:11) 하나님의 말씀으로(살전2:13) 받아들여야한다.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눅9:44;히2:1) 참고하며(눅24:14;신6:6~7) 마음에 간직하며(잠2:1;시119:11)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도록 해야한다(눅8:15;약1:25).

제161문.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효과적인 방편이 되는가?

답. 성례는 그 자체가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성례를 집례하는 이의 경건과 의도에서 나오는 어떤 덕성 때문이 아니고 성령의 일하심과 성례를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축복 때문이다(벧전3:21;행8:13,23;고전3:6~7,12:13).

제162문. 성례는 무엇인가?

답.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를 위하여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이다(창17:7,10;출12:1~51;마28:19, 25:26~28). 첫째, 은혜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중보의 유익들을 나타내고 인치기 위함이다(롬15:18,출12:48). 둘째, 믿음과 여타의 모든 은혜를 강화하고 증가시키기 위함이다(행2:38;고전10:16). 셋째, 그들로 하여금 순종케 하기 위함이다(롬4:11;고전11:24~25). 넷째, 상호 간에 사랑과 교제를 증거하고 간직케 하기 위함이다(롬4:11;갈3:27). 다섯째, 성도들을 성례가 없는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함이다(고전10:21;엡4:2~5;고전12:13;엡2:11~3;창34:14).

제163문. 성례의 요소는 무엇인가?

답. 성례는 두 부분이 있다. 그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심을 따라 사용되는 외적이며 느낄 수 있는 징 표이며 다른 하나는 이 징표가 상징하는 내적이며 영 적인 은혜이다(마3:11;벤전3:21;록2:28~29).

제164문. 그리스도께서는 신약시대에 교회 안에 몇 가지 성례를 제정하셨는가?

답.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 아래 있는 당신의 교회에 두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을 제정하셨다(마28:19;고전1 1:20,23;마26:26~28).

제165문. 세례가 무엇인가?

답. 세례는 새 언약의 성례인데,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도록 제정하셔서(마28:19) 성도들이 당신 자신에게 접붙임을 받으며(갈3:27), 당신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막1:4;계1:5),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며(딛3:5;엡5:26), 양자가 되고(갈3:26~27),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는 징표요, 인(印)침이 되게 하셨다(고전15:29;롬6:5).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보이는 교회의 지체로 엄숙히 영접되며 (고전12:13), 전적으로 주님께만 속한 사람이 되겠다고 공적으로 고백함으로써 언약관계에 진입하는 것이다(롬6:4).

제166문.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어지는가?

답.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약속의 언약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베풀지 못한다(행2:38,8:36~37).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할 것을 고백할 때 비로소 베풀 수있다. 양부모가 혹은 부모 중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기로 고백할 때, 그들의 자녀는 언약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세례를 받게 한다(창17:7,9;

갈3:9,14;골2:11~12,행2:38~39;롬4:11~12;고 전7:14;마28:19;눅18:15~16;롬11:16).

제167문. 우리가 받은 세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답. 우리의 세례를 증진하는 일은 필요한 일임에도 소홀히 하고 있다. 그 일은 우리가 평생을 두고 실천해야 하 는데 특히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와 남의 세례식에 참 여할 때 그래야 한다(골2:11.21;롞6:4.6.11). 우리 는 세례의 본질과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제정하신 목 적과 세례가 의미하고 표상하는 특권과 유익에 대하 여, 그리고 세례받을 때 우리가 한 엄숙한 서약에 대 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고 감사해야 한다(롬6:3~5). 우리가 죄로 더럽혀졌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우리의 삶이 세례가 주는 은혜와 우리가 한 약속에 미치지 못 하며 오히려 반대로 하고 있음을 생각하고 겸손해야 한다(고전1:11~13;롬6:2~3). 그리고 우리는 더 성 장하여 죄 사함을 받음에 대한 확신과 성례로 우리에 게 확약해 주시는 모든 다른 축복에 대해 확신을 하도 록 자라 가야 한다(롬4:11~12;벧전3:21).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분 의 죽으심과 사심에서 힘을 얻어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은혜에 대하여는(롬6:3~5)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갈 3:26~27).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이름을 그리스도에게 바쳐버린 그리스도인으로서(행2:38) 믿음으로 살면서 거룩하고 의로운 대화를 나누려고 애써야 하며(롬6:22), 같은 영으로 한 몸에 연합하게

하는 세례를 받았으므로 형제를 사랑하며 걸어가야 한다(고전12:13,25~27).

제168문. 성찬이란 무엇인가?

답. 주의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새 언약의 성례이다(눅22:20). 성찬을 존 중하면서 받는 이들은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 영적인 영양을 공급받고 은혜가운데 성장하며(마26:26~28;고전11:23~26)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제하게됨을 확인하는 것이다(고전10:16).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고전11:24) 서약뿐(고전10:14~16,21) 아니라 신비한 한 몸의 지체로서 다른 성도들과 나누는 사랑과 교제를 확증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다(고전10:17).

제169문.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주고 받으라고 명하셨는가?

답.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시중드는 성찬식을 집례할 때, 떡과 포도주를 일상사용할 때와는 달리 구별하고, 제정의 말씀을 하고, 감사와 기도를 드리고는 떡을 취하여 떼고, 떡과 포도주를 참여자에게 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몸을 찢기시고 내어주시며 피를 흘리신 사실을 기념하는 것이다(고전11:23~24,막14:22~24;마26:26~28;눅22:19~20).

제170문. 성찬식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게 되는가?

답.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찬의 뗙과 포도주 안에, 또는 뗙과 포도주와 함께, 또는 그 아래 육체로나 육적으로 임재 하는 것은 아니다(행3:21). 그러나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영적으로 임재 한다. 그렇다고 하여 뗙과 포도주의 요소가 외적으로 의미하는 것(마26:26,28) 못지 않게 참으로 실재적(實在的)으로 임재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되 육적이 아니고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다(고전11:24~29). 그러나 참여자가 믿음으로 받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이 주는 모든 은택을 자신들에게 적용한다면 참으로, 그리고 실재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고전 10:16).

제171문. 성찬식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답. 성찬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찬식에 오기 전에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고(고후13:5) 자신들의 죄와 부족함을 살핌으로써(고전5:7;출12: 15,고전11:28) 준비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자신들의 지식과(고전11:29) 믿음과(고전13:5;마26:28) 회개함이(슥12:10;고전11:31) 진실하고 충분한지,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며(고전10:16~17;행2:46~47) 모든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며(고전5:8,11:18

,20) 자기들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지(마5: 23~24) 살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사55:1;요7:37) 마음을 새롭게 하여 순종하는지(고 전5:7~8) 진지하게 묵상하고(고전11:24~25) 열심히 기도함으로써(대하30:18~19;마26:26) 이러한 은혜를, 즉 주를 사모하고 새롭게 순종하는 일을 새롭게 실천하는지를 살펴야 한다(고전11:25~26,28;히 10:21~22,24;시26:6).

제172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성찬에 참례할 합당한 준비가 되어있는지를 의심하는 자도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가?

답.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의심하는 사람이나 성찬에 참례할 준비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비록 확신은 없더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관심은 둘 수 있다. 자신이 믿음이 적음을 제대로 알고(사54:7~10;마5:3~4;시 31:22,73:13,22~23),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기를 참으로 원하여(빌3:8~9;시10:17,42:1~2,5,1 1) 죄를 멀리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사1:1 0;요일5:13;시77:1~12,88:1~18;욘2:4,7;딤후2:19;시66:18~20). 그리고 연약하고 의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구하기 위하여 약속을 주시고 성례를 제정하셨으므로(사40:11,23,31;마11:28,12:20,2 6,28), 그가 자신의 불신앙을 슬퍼하고(막2:24) 자신의 의심을 해결하려고 힘쓴다면(행2:37,16:30)

그 사람은 더 강전함을 받기 위하여 성찬을 받을 수 있으며, 또 받아야 한다(롬4:11;고전11:28).

제173문. 신앙을 고백하고 성찬식에 참례하고자 하는 자일 지라도 성찬을 금할 수 있는가?

답. 신앙을 고백하고 성찬 받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무지하거나 거리낌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께서 당신의 교회에 맡기신 권세로(고전11:27~31; 마7:6;고전5:1~13;유23;딤전5:22) 그들이 교훈을 받고 잘못을 고칠 때까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할 수 있으며, 막아야 한다(고후2:7).

제174문. 성찬식이 집례 되는 때에 그것을 받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바는 무엇인가?

답. 성찬식이 집례 되는 동안, 성찬을 받는 사람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규례를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레10:3;히12:28;시5:7;고전11:17,26~27), 떡과 포도주와 성례를 집례하는 절차와 언행을 정숙히 지켜보며(출24:8;마26:28), 주의 몸을 조심스럽게 분별하고(고전11:29), 주의 죽으심과 고난을 애정을 다하여 마음으로 묵상하며(눅22:19), 자신이 받은 은혜를 따라 열심히 살기로 다짐하고(고전11:26,10:3~5,11,14), 자신들을 판단하며(고전11:31), 죄를 슬퍼하고(슥12:10), 그리스도를 주리고 목말라 하듯사모해야 한다(계22:17). 또한 믿음으로 주를 먹고(요6:35), 주의 충만하심을 받으며(요1:16),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며(발1:16),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시63:4~5;대하30:21),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시22:26), 자신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과(렘1:5;시1:5),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해야 한다(행2:42).

제175문. 성찬식에 참예한 이후에 성도들이 행해야 하는 의무는 무엇인가?

답. 그리스도인들이 성차을 받은 후에 이행해야 할 의무는 자신들이 성찬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바르게 처신했는 지(시28:7.85:8;고전11:17.30~31), 그리고 성찬 식을 잘 마치게 되었는지를 진지하게 살펴야 한다. 만 일 그들이 소생함과 위로를 받은 것으로 믿어지면 그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며(대하30:21~23. 25~26;행2:42.46~47) 그러한 은혜가 계속되기를 빌며(시36:10;아3:4;대상29:18) 해이해지지 않도 록 조심하며(고전10:3~5,12), 자신이 한 서약을 실 행하고(시1:14), 성찬에 자주 참여하도록 힘써야 한 다(고전11:25~26;행2:42,46), 그러나 만일 당장에 유익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례를 위하여 준비 하고, 참예한 과정을 더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아5:1 ~6;전5:1~6). 만일 그러는 과정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와 자기들의 양심에 비추어 온 힘을 다한 것으 로 스스로 인정한다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것이므 로 기다려야 한다(시123:1~2.42:5.8.43:3.5). 그 러나 만일 그들이 잘못한 것으로 인정하면 겸손해져 야 하고(대하30:18~19;사1:16,18) 앞으로는 더 조 심하고 부지런히 성찬식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고후 7:11;대상15:12~14).

제176문. 세례와 성찬은 어떤 점에서 일치하는가?

답. 세례와 성찬이 합일한 점은 그 둘을 제정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점이다(마28:19;고전11:23). 두 성례의 영적인 면은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유익이다(롬6:3~4,고전10:16). 둘 다 같은 언약의 인(印) 침이다(롬4:11;골2:12;마26:27). 성례는 복음의 사역자가 집례할 수 있고 다른 아무도 할 수 없다(요1:3;마28:19;고전11:23,4:1;히5:4).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교회에서 계속 시행하는 것이다(마28:19~20;고전11:26).

제177문. 세례와 성찬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답. 세례와 성찬의 다른 점은 세례는 물로써 단 한번만 받는 것이며,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스도에게로 접붙임을 받는 것에 대한 징표이며 인(印)침이다(마3:11;딛3:5;갈3:27). 따라서 세례는 유아에게도 시행되는 반면에(창17:7,9;행2:38~39,고전7:14) 성찬은 떡과 포도주로 자주 행하는 성례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한 영적 양식이 됨을 대변하고(고전11:23~26) 나타내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자람을 확증하는(고전10:16) 것이다. 그러므로 성찬은 오래 믿고 자신들을 점검할 수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고전11:28~29).

제178문. 기도란 무엇인가?

답.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16:23), 성령의 도움을 받아(롬8:26)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시62:8). 기도에서 우리는 죄를 고백하며(시32:5~6;단9:4)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를 드린다(빌4:6).

제179문.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하는가?

답.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속을 살피시고(왕상8:39;행 1:24;롬8:27) 간구를 들으시고(시65:2) 죄를 용서하시며(미7:18) 모든 사람의 소원을 성취해 주실 수있다(시145:18~19).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고(롬10:14) 경건하게 예배해야 한다(마4:10). 기도는 예배의 특별한 부분인데(고전1:2), 모두가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하며(시1:15) 다른 누구에게도 해서는 안 된다(롬10:14).

제180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답.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자비를 구하는 것이다(요14:13~14,16:24;단9:17). 그냥 이름만 들어 말하는 것이 아니고(마7:21)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기도할용기와 담대함과 힘을 얻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하는 것이다(히4:14~15;요일5:13~15).

제181문.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답. 사람의 죄악됨이 너무나 크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 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떠나 있으므로, 중보자가 없 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요14: 6;사59:2;엡3:12). 하늘과 땅에 그리스도 말고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되어 있거나 할 수 있는 이가 없으므로(요6:27;히7:25~27),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한다(딤전2:5;골3:17;히13:15).

제182문.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가?

답.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간절히 구할 것인가를 이해하도록 해 주신다. 성령께서는 비록 누구에게나 항상 같은 정도 로는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 기도의 의무를 옳게 실 천하는데 필요한 이해와 열정과 은혜를 갖게 해주시 고 일깨워 주신다(롞8:26~27;시10:17;슼12:10).

제183문.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가?

답. 우리는 땅 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엡6:18;시28:9) 기도해야 하고, 공직자들과(골4:3) 목사들을 위하여(딤전2:1~2) 기도해야 하며, 우리 자신들과(창32:11) 형제들을 위하여(약5:16), 아니 원수들을 위해서도(마5:44) 기도해야 할 뿐 아니라 살아 있는 모든 사람과(딤전2:1~2)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사람을 위하여(요17:20)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죽은 자를 위해서나(삼하7:29,12:21~23)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을(요일 5:16) 위하여 기도해서는 안 된다.

제184문.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가?

답.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마6:9) 되는 모든 사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교회가 왕성하도록(시51:18,122:6) 기도하고, 우리 자신과(마7:11) 이웃의 안녕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시125:4). 그러나 비합법적인 일을 위하여 기도해서는 안 된다(요일5:14).

제185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답.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경외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며(전5:1), 우리 자신이 무가치하고(창1 8:27,32:10) 가난한 죄인임을(눅15:17~19) 깊이인식하며(눅18:13~14)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회개하고(시51:17) 감사에(빌4:6) 벅찬 마음으로 기도하며(삼상1:15,2:1), 이해와(고전14:15) 믿음을(막11:24; 약1:6) 가지고 진지하게 열정적으로(시145:18,17:1) 사랑과(약5:16) 참을성을(딤전2:8)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엡6:18) 그분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마7:7) 기도해야 한다(마26:39).

제186문. 하나님께서 기도의 의무에 관한 지침으로 어떠한 규칙을 주셨는가?

답.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기도의 의무에 대한 지침으로 사용되지만(요일5:14) 특별한 기도의 지침은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자기제 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양식을 따르도록 하셨다. (마6:9~13;눅11:2~4).

제187문. 주기도문은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는가?

답.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지침이요, 모범적인 양식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도이다. 그러므로 기도할때 우리는 이해와 믿음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기도의 의무를 올바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른 은혜들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마6:9;눅11:2).

제188문. 주기도문은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답. 주기도문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으니, 머리말과 간구 와 맺는말이다.

제189문. 주기도문의 머리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답.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주기도문의 머리 말은(마6:9)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부성적(父性的) 선하심에 대한 신뢰감과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답.

가까이 나아가야할 것을 가르친다(눅11:13;롬8:15). 또한 경외하는 마음과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함과 (사64:9) 하늘을 소망하는 열정을 가질 뿐 아니라(시123:1;애3:41) 절대주권을 가지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비로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것을 믿어야 하며 (사63:15~16;느1:4~6)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함을 가르친다(행2:5).

제190문. 첫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첫째 간구 에서(마6:9) 우리 자신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적당 함을 알고(고후3:5;시51:15)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올바로 영화롭게 해야 함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시67:2 ~3) 당신의 성호와(시83:18) 속성(시86:10~13,1 5), 규례, 말씀(살후3:1;시147:19~20, 138:1~3; 고후2:14~15), 역사하심, 그리고 당신 자신을 알리 기를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알고 깨달으며 지극히 높 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한다(시145:1~21). 우리의 생각과 말 과 햇동으로(시19:14,103:1)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 도록 기도하며(시97:7),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시 67:1~4), 무지(엡1:17~18), 우상숭배(시97:7), 불경죄와(시74:18,22~23) 그 밖에 하나님을 불명 예스럽게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방지하시고 제 거하시며(왕하19:15~16)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

든 것을 섭리로써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도록 기도한다 (대하20:6,10~12;시83:1~18,140:4,8).

제191문. 두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답. "나라이 임하시오며" 라는 둘째 간구에서(마6:10). 우리는 우리 자신과 모든 인류가 날 때부터 죄와 사탄 의 지배아래 있음을 인식하면서(엡2:2~3), 죄와 사 탄의 나라가 파괴되고(시68:1;계12:10~11), 복음 이 온 세상에 전파되며(살후3:1) 유대인들이 부르싞 을 받고(롬10:1)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기를 기도한 다(요17:9,20;롬11:25~26;시67:1~7), 또한 복음 의 사역자들과 규례를 갖춘 교회가(마9:38;살후3 :1) 연단을 받아 부패로부터 새로워지며(말1:11;습3 :9) 세상정부가 교회를 돕고 지지하도록 기도하며(딤 전2:1~2),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규레가 가감 없이 시 행되어서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개 종하도록 하며 이미 개종한 자들을 굳건히 하고 위로 하며 양육하는 효능을 발휘하도록 기도한다(행4:29~ 30;엒6:18~20;롞15:29~32,살후1:11,2:16~17).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며(엡3:14~2 0) 주님의 재림시기를 서두르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 님과 더불어 영원히 다스리시도록 기도하며(계22:2 0) 주님께서 온 세상을 능력으로 다스리시기를 기뻐 하셔서 이러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도록 위하여 기도 한다(사64:1~2;계4:8~11).

제192문. 세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답.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이다"라는 셋째 가구에서(마6:10), 우리는 우리와 모든 인류는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없으며 그러려고 하지 않을 뿐 아니라(욥21:14;고전 2:14)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며(롬6:17) 그분의 섭 리에 대하여 투덜대고 불평하는가 하면(출17:7;민1 4:2) 전적으로 육의 뜻을 행하는 경향이 있음을 인식 하면서(엡2:2)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눈먼 것과(엡 1:17~18) 연약함과(엡3:16) 의욕상실과 완고한 마 음을(마26:40~41) 당신의 영으로 제거해 주시며(렍 31:18~19) 모든 일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사6:2~3;시103:20~21;마18:10) 겸손하고(미6:8) 즐거움을 가지고(시100:2;욥1:21 ;삼하15:25~26) 충성스럽게(사38:3) 부지런히(시 119:4~5) 열심과(롬12:11) 성실핚을(시119:80) 가지고 꾸준하게(시119:112) 당신의 뜻을 알고 행 하며 순종할 수 있게 하시며 그럴 마음을 주시도록 기 도한다(시119:1.8.35~36;행21:14).

제193문. 네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가?

답.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넷째 간구에서(마6:11), 우리는 아담 안에서 지은 죄와 우리 스스로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현세의 모든 외적인 축복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빼앗겼으며, 그러

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들을 완전히 앗아 가시고 우리가 그 복들을 누리려 할 때, 마땅히 저주가 되게 하실 수 있음을 인식하며(창2:17,3:17;롬8:20~22 ;렊5:25.28:15~68) 또한 외적인 복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돕거나(신8:3) 우리에게 이로움이 되거나(창 32:10) 혹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복을 얻을 수 없음을 인식하면서(신8:17~18) 다만, 불법적으 로 그것들을 바라며(렊6:13;막7:21~22), 얻어(호1 2:7)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약4: 3).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들과 남들을 위하여 우리가 모두 날마다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주시는 적절한 몫을 즐겨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한다(창4 3:12~14.28:20; 엒4:28; 살후3:11~12; 빌4:6~7. 19), 이렇게 주시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요 아 버지의 지혜로 주시는 최선의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몫을 거룩하게 우리의 안녕을 위하여 사용할 때 (딤전4:3~5), 우리는 그 몫을 계속 축복 가운데 받으 며(딤전6:6~8) 현재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도움과 위 로를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 주시기를 기도 한다(잠30:8~9).

제194문. 다섯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답.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다섯째 간구에서(마6 :12) 우리는 모두가 원죄와 자신들이 실제로 범한 죄로 말미암아 죄책이 있으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죄인임을 인식하며 우리나 다른 아무런 피조물 도 그 죄의 값을 조금도 치를 수 없음을 인식하면서 (롬3:9~22;마18:24~25;시130:3~4) 우리는 우리 자신과 남을 위하여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께서 그리스도가 순종하시고 죄의 값을 치르신 일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실을 알고 적용할 때, 우리를 죄책과 형벌로부터 면제해 주시며(롬3:24~ 26; 히9:22)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영접해 주 시기를 기도한다(엡1:6~7). 그리고 당신의 호의와 은혜를 계속 베푸시며(벤후1:2) 매일의 생활에서 우 리가 범하는 실패를 용서하시며(호14:2;렊14:7) 우 리에게 평안과 기쁨으로 채우시며(롬15:13;시51:7 ~10.2) 용서받음에 대한 확신을 날마다 더해 주신다.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증거를 소유할 때 우리는 남의 잘못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도록 격려해 주시고 용기 를 주시도록 구하고 기대하는 것이다(눅11:4;마6:1 4~15.18:35).

제195문. 여섯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가?

답.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 시옵소서"라는 여섯째 간구에서(마6:13) 우리는 지 극히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 다른 거룩하고 의로운 목적을 위하여 우리로 하 여금 잠시 시험을 당하거나 받도록 일을 진행하신다 는 사실을 인식하며(대하32:31) 사탄과(대상21:1) 세상과 육이 우리를 막강한 힘으로 곁길로 가게 하여 학정에 빠뜨리는가 하면(눅21:34;막4:19) 우리가 비 록 죄의 용서를 받은 후에도 자신들의 부패와(약1:1 4) 연약함과 부주의함 때문에(갈5:17) 시험을 당하 고 시험에 늘 노출될 뿐 아니라(마26:41), 우리 스스 로 시험에 저항하거나 그것에게서 벗어날 능력이나 의지가 있기는 커녕 그 세력을 더 키워 주고(마26:6 9~72;갈2:11~14;대하18:3.19:2) 그 세력의 지배 아래 내버림을 당하기에 마땅한 존재임을 인식하면서 (롬7:23~24;대상21:1~3.대하16:6~10) 하나님 께서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다스리기를 기도한 다(시81:11~12). 육을(요17:15) 복종하게 하시며 사탄을 제어하시고(시51:10;시119:133) 모든 사물 을 조정하시며(고후12:7~8)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방편을 주시고 축복을 베푸시며(고전10:12~13) 우 리로 하여금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도록 일깨우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그분의 섭리로 죄 를 짓도록 하는 시험에서 보호를 받도록 기도한다(시 81:11~12), 만일 시험을 받으면, 그분의 영을 통하 여 강하게 도움을 받아 시험의 때를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시며(마26:41;시19:13)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회복하여(엡3:14~17;살전3:13;유24) 성화와 발전 을 위한 발판으로 삼도록 해주기를 기도한다(시51:1 2; 벧전5:8~10). 그리고 우리의 성화와 구원이 완성 되며(고후13:7.9) 사탄을 밟아(롬16:20;슥3:2;눅2 2:31~32) 죄와 시험과 모든 악으로부터 영원토록

완전히 해방되기를 기도한다(요17:15;살전5:23).

제196문. 주기도문의 맺는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 답. 다 아멘" (마6:13) 하는 주기도문의 맺는 말은 우리 가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자신이나 어떤 피조물의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 있으므로(단9:4.7~9,16~19) 더 간절히 구해야 함 을 가르친다(롬15:30), 그리고 기도로써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과 전능하심과 지극히 영화로우싞을 찬양한다(대상29:10~13;빌4: 6),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므로 우리를 도우실 능 력이 있으시고 그러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엡3:20 ~21;눅11:13) 믿음으로 당신께 호소하도록 우리를 격려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구하는 바를 이루어 주실 것을 조용한 가운데 믿고(대하14:11) 신뢰하는 것이 다(대하20:6.11).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소원과 확 신을 확언하기 위하여 "아멘" 이라고 말한다(고전1 4:16;계22:20~21).

소요리 문답

- 제 1 문.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 **답.**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고전10:31;롬11:36)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다(시73:25~28;요17:22~24).
- 제 2 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 할 것인가를 지시하기 위해 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 답.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딤후3:15~17;벤후3:2,15~16)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신 유일한 규칙이다(눅16:29~31;요15:11~12;요일1:3~4;갈1:8~9).
- 제 3 문. 성경이 가장 주요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 답.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요5:38~39,20:31;고전1 0:11)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딤후1:13,3:16;미6:8;롬15:4;요일1:3~4).
- 제 4 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 답. 하나님은 영이신데(요4:24) 그의 존재하심과(출3:1 4;시90:2), 지혜와(시147:5), 권능과(계4:8;출13: 3,14,16,3:8), 거룩하심과(계5:4), 공의와(신32:4;

사30:8) 인자하심과(롬2:4;시100:5,103:11,17)진 실하심이(출34:6~7;시115:1,117:2),무한하시며 (욥11:7~9), 무궁하시며(시90:2), 불변하시다(말 3:6;약1:17).

제 5 문.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답. 한 분 뿐이시니 참되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다(신 6:4;렘10:10;요17:3;고전8:4).

제 6 문.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

답.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三位)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 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이시다(고후13:13;마3:16~17, 28:19;고후8:14;요1:1,4:18;행5:3~4;히1:3).

제 7 문.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

답.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계획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장차 일어날 모 든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엡1:4,11;롬9:22~2 3,11:33,행2:23,4:27~28;시33:11;엡2:10).

제 8 문.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정을 어떻게 실행하시는가?

답.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이루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의 사역을 실행하신다(계4:11;엡1:11;단4:35;사40:26).

제 9 문.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무엇인가?

답.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은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써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모든 것이 매우 좋았다(창1:1,31;히11:3;계4:11;시33:9).

제 10 문.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답.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사 모든 생물을 주 관하게 하셨다(창1:26~28;골3:10;엡4:24).

제 11 문.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답.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시145:17) 지혜와(시104:24;사28:29) 권능으로써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히1:3) 통치하시는(시103:19;마10:29~31) 모든 일이다.

제 12 문.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 님께서 그를 향하여 어떤 특별한 섭리를 실행하 셨는가?

답.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써 금하셨다(갈3:12;창2:17;롬5:12~14,10:5;눅12:25~28).

제 13 문. 우리의 시조는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그대로 있

었는가?

답. 우리 시조가 자유함을 인하여 임의대로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지위에서 타락하였다(창 3:6~8,13;전7:29;고후11:3;롬5:12).

제 14 문. 죄란 무엇인가?

답.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이다(요일3:4;약4:17;롬3:23,4:5;약2:10).

제 15 문. 우리의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 게된 죄가 무엇인가?

답.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된 죄는 그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이다(창3:6,12~13 문13 참조).

제 16 문. 아담이 처음 죄를 범할 때 전 인류가 타락하였는가?

답.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저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 후손을 위한 것으로 그로부터 일반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인류는 아담이 처음 죄를 범할 때에 그의 안에 있어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창2:16~17;롬5:12;고전15:21~22).

제 17 문.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떠한 지위로 떨어지게 되었는가?

답. 이 타락은 인류로 하여금 죄와 불행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롬5:12;갈3:10).

제 18 문.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의 요소가 무엇인가?

답.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 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에 대한 죄책(罪責)과 본래의(原義)가 없는 것과(롬5:2,19;엡2:1~3)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일 반적으로 원죄라 하는 것이요, 아울러 원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실제적인 죄(自犯罪)들이다(약1:14~15;마15:19;고전15:22;롞8:7~8;찾6:5).

제 19 문.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맛보는 불행은 무엇인가?

답. 모든 인류는 타락하므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창3:8,10,24)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엡2: 2~3;갈3:10) 이 세상에서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내세에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었다(애3:39;롬6: 23;마25:41,46).

제 20 문.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와 불행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답.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엡1:4~7)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으니 이는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 내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다(롬3:20~22;갈3:21~22,딛1:2;요17:6).

제 21 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가 누구신가?

답.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신데(딤전2:5~6),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요1:14;갈4:4), 한 위(位)에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을 가지셨으니 영원토록 하나님이자 사람이시다(롬9:5;눅1:35;골2:9;히7:24~25).

제 22 문.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의 몸과(히2:14,16,10:5)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시어 (마26:38)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너 마리아에게 잉태 되어 탄생하셨으나(눅1:27,31,35,42;갈4:4) 죄는 없으시다(히4:15,7:26).

제 23 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시는가?

답.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선지자와(행3:21~2 2;히12:25;고후13:3), 제사장(히5:5~7,7:25), 왕 의(시2:6;사9:6~7;마21:5;시2:8~11), 직분을 행 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단계를 통해서 하신 다.

제 24 문.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시는 가?

답.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다(요1:18; 벧전1:10~12;요15:15,20:31;벤후1:21;히1:1~2).

제 25 문.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시는 가?

답.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며 (히7:24~25,8:1,9:14~28),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히2:17),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절히 구하시는 것이다(히7:24~25).

제 26 문.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답.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행15:14~16), 우리를 다스리시며(사33:22), 보호하시고(사32:1~2), 자기와 및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이다(고전15:25;시110:1~7).

제 27 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떻게 되는가?

답.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의 탄생함인데 비천한 지위에 나셔서(눅2:7)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갈4:42)이 세상에 여러 가지 비참함과(히12:2~3;사53:2~3)하나님의 진노하심과(눅22:44;마27:46)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임을 당하시고(빌2:8) 묻히셔서(고전

15:3~4)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이다 (행2:24~27,31).

제 28 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떠한가?

답.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고전15:4) 하늘로 올라가신 것 과(막16:19)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과(엡1:20)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 이다(행1:11,17:31).

제 29 문.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값 주고 사신 그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가?

답. 우리로 그리스도의 값 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딛3:5~6)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있게 적용하심을 인함이다(요1:11~12).

제 30 문.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값 주고 사신 구속을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답.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값 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엡1: 13~14;요6:37,39;엡2:8) 효력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엡3:17;고전1:9).

제 31 문. 유효한 부르싞이란 무엇인가?

답.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니(딤후 1:9;살후2:13~14),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행2:37)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행26:18)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껠36:26~27) 우리를 권고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이다(요6:44~45;빌2:13).

제 32 문.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무슨 유익을 얻는가?

답.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의롭다 하 심과(롬8:30) 양자로 삼으심과(엡1:5) 거룩하게 하 심을 얻고 이 세상에서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유익들을 얻는다(고전1:26,30).

제 33 문. 의롭다 하심이란 무엇인가?

답. 의롭다 하심이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하신 것인데, 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롬3:24~25,4:6~8) 그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 받으시는 것이니(고후5:19,21) 이는 다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롬5:17~19) 우리는 오직 믿음만으로받는다(갈2:16;빌3:9).

제 34 문. 양자됨이란 무엇인가?

답. 양자됨이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하신 것인데(요

일3:1),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효 중에 들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요1:12;롞8:17).

제 35 문.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인가?

답. 거룩하게 하심이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인데 (살후2:13),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사람의 전인격(全人格)이 새로워짐을 얻고(엡4:23~24) 점점 죄에 대해서는 죽게 하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해주시는 것이다(롬6:4,6,8:1).

제 36 문. 의롭다 하심과 양자됨과 거룩하게 하심에 수반되거나 여기서 나오는 유익들은 무엇인가?

답. 이 세상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 따라서 생기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과 양심의 화평함과(롬5:1~2,5)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과(롬14:17)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잠4:18) 받아 거기서 끝까지 견디어 가는 것이다(요일5:13,벤전1:5).

제 37 문. 신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로부터 무슨 유익을 받는 는가?

답. 신자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히 12:23), 즉시 영광중에 들어가고(고후5:1,6,8;빌1 :23;눅23:43)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살전4:14) 부활할 때까지(욥19:26~27) 무덤에서 쉰다(사57:2).

제 38 문. 신자는 부활할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답. 신자가 부활할 때는 영광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고 전15:43) 심판 날에 밝히 안다 하심과 죄없다 하심을 받고(마25:23,10:32) 온전한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요일3:2;고전 13:12;삼전4:17~18).

제 39 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답.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의 계시 된 뜻을 순종하는 것이다(미6:8;삼상15:22;눅10:2 8;신29:29).

제 40 문. 하나님께서 순종의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계시하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답.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의 법칙이다(롬2:14~15,1 0:5).

제 41 문. 이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는가?

답. 이 도덕의 법칙은 십계명에 간략히 요약되었다(신10 :4;마19:17;출31:18).

제 42 문. 십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인가?

답. 십계명의 대강령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또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마22:37~4 0).

제 43 문.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인가?

답. 십계명의 서문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20:2) 하신 것이다.

제 44 문. 십계명의 서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답.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 (主)도 되시고, 우리 하나님도 되시고, 또 우리의 구 속자도 되시므로 우리가 마땅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눅1:74~75;벧전1:15~19).

제 45 문. 제일계명은 무엇인가?

답. 제일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출20:3;신5:7)하신 것이다.

제 46 문. 제일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제일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신이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인정하 여(대상28:9;신26:17) 마땅히 그에게 경배하며 영 화롭게 하라는 것이다(마4:10;시29:2).

제 47 문. 제일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제일계명에 금하는 것은 참 신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거나(시14:1) 우리의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과(롬1:21) 그에게만 드리기에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다른 이에게 드리는 것이다(롬1:25~26).

제 48 문. 제일계명의 "나 외에" 라는 말씀의 특별한 교훈은 무엇인가?

답. 제일계명 중에 "나 외에" 란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하는 것은 만물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 기는 죄를 내려다보시고 분하게 여기시는 것이다(겔 8:5~6;시44:20~21).

제 49 문. 제이계명은 무엇인가?

답. 제이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20:4~6; 신5:8~10)하신 것이다.

제 50 문. 제이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이계명에 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 중에 정하신 종교상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 순종하며 깨끗하고 온전하게 지키라는 것이다(신32:46;마28:20;행2:42).

제 51 문. 제이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이계명에 금하는 것은 우상을 하나님처럼 경배하거 나(신4:15~19;출32:5,8) 하나님 말씀에 정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신12:31~32).

제 52 문. 제이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답. 제이계명을 지키라 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 자가 되시며(시95:2~3,6)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며 (시45:11) 홀로 자기에게만 경배하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다 (출34:13~14).

제 53 문. 제삼계명은 무엇인가?

답. 제삼계명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출20:7;신5:11)하신 것이다.

제 54 문. 제삼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삼계명에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마6:9;신 28:58), 칭호와(시6:4), 속성과(계15:3~4), 규례와 (말1:11), 말씀과(시138:1~2), 행사를(욥36:24),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이다.

제 55 문. 제삼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삼계명에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을 훼방하거나 악용하는 것이다(말1:6~7,12,2:2,3:14).

제 56 문. 제삼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답. 제삼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가 비록 사람에게는 형벌을 피할 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저희로 하여금 그 의로우신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다(삼상2:12,17,22,29,3:13;신2 8:58~59).

제 57 문. 제사계명은 무엇인가?

답. 제사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 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20:8~11;신5:12~16)하신 것이다.

제 58 문. 제사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사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명하신 절기를 그의 앞에 거룩히 지키는 것이니 특별히 칠일 중에 하루를 종일토록 그의 거룩하신 안식일로 삼으라는 것이다 (신5:12~14).

제 59 문. 하나님께서 이래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는다가?

답. 세상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하기까지는 하나 님이 이레 중에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고 그 후 부터 세상 끝날까지는 이레 중에 첫날로 명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다(창2:2~3;고전16:1~2 ;행20:7;눅23:56;출16:23).

제 60 문. 어떻게 하여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가?

답.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쉼으로 할 것이니(출20:8,10,16:25~28) 다른 날에 합당한 여러 가지 세상일과 오락을 그치고(느1 3:15~19,21~22) 온종일을 공적 또는 사적예배에 바쳐 사용할 것이요(눅4:16;행20:7;사66:23) 그 외에는 부득이한 일과 긍휼을 베푸는 일에 사용할 수 있다(마12:1~12).

제 61 문. 제사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사계명에 금하는 것은 그 명한 바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혹 주의하지 아니하여(겔22:26;암8:5;말1:13) 나태함으로 그날을 더럽게 하거나(행20:7,9) 죄되는 일을 행하거나(겔23:38) 세상의 사업과 오락에 대하여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다(렘17:24~26;사58:13).

제 62 문. 제사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답. 제사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 업을 위하여 매주 여섯 날을 허락 하시고(출20:9;창 2:3) 제 칠일은 자신의 날로 특별히 정하시며 자기가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과 안식일을 축복하신 것이다 (출20:11,출31:15~16).

제 63 문. 제오계명은 무엇인가?

답. 제오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출20: 12;신5:16) 하신 것이다.

제 64 문. 제오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오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와 인류 관계의 상하와(윗사람과 아래 사람)(엡5:21; 벧전2:17) 평등을(롬12:10,13:1;엡6:1~5)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명예를 지켜주고 행할 본분을 하라는 것이다.

제 65 문. 제오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오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와 명예와 본분을 소홀히 하거나 마땅히 높일 것과 행할 일을 하지 않거나 막는 것이다(마15:4~6;껠34:2~4;롬13:8).

제 66 문. 제오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답. 제오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장수함과 유익이 되는 복을 약속하심이니 이약속은 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이익이 있도록 성취해 주시는 것이다(신5:16;엡6:2~3;출20:12).

제 67 문. 제육계명은 무엇인가?

답. 제육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출20:13,신5:17)고 하신 것이다.

제 68 문. 제육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육계명에 명하는 것은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기울여 우리 생명과(엡5:28~29) 남의 생명을(왕상18:4) 힘 써 보존하라는 것이다.

제 69 문. 제육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육계명에 금하는 것은 우리 생명과 이웃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거나 해하는 일들이다(행16:28;창9:6;잠24:6,11).

제 70 문. 제칠계명은 무엇인가?

답. 제칠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출20:14;신5:18) 하 신 것이다.

제 71 문. 제칠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칠계명에 명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정조와 순결을 보존하라는 것이다(고 전7:2~3,5,34,36;골4:6;벧전3:2).

제 72 문. 제칠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칠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모든 부정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다(마15:19,5:28;엡5:3~4).

제 73 문. 제팔계명은 무엇인가?

답. 제팔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 (출20:15;신5:19) 하신 것이다.

제 74 문. 제팔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팔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합당한 법대로 자신과 남의 재물과 산업을 획득하고 또 증진케 하라는 것이다 (창30:30;딤전5:8;레25:35;신22:1~5;출23:4~5;창47:14.20).

제 75 문. 제팔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팔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자신과 남의 재물과 산업

을 불의하게 방해하거나 혹 방해될 만한 일이다(잠2 1:17,23:20~21,28:19;엡4:28).

제 76 문. 제구계명은 무엇인가?

답. 제구계명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출20:16;신5:20) 하신 것이다.

제 77 문. 제구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구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특히 증거하는 일에(잠 14:5,25) 피차 진실함과(숙8:16) 또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며 증진케 하라는 것이다(요삼12).

제 78 문. 제구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구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함에 해되는 일이나 혹은 이웃의 명예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삼상17:28;레19:16;시15:3).

제 79 문. 제십계명은 무엇인가?

답. 제십계명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20: 17;신5:21) 하신 것이다.

제 80 문. 제십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십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우리의 형편을 만족히 여기며 (히13:5;딤전6:6) 이웃과 그 있는 모든 것에 대

하여 의롭고 자비로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다(욥31: 29;롬12:15;딤전1:5;고전13:4~7).

제 81 문. 제십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십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리의 처지를 부족히 여기거나(왕상21:4;에5:13;고전10:10)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투기하거나(갈5:26;약3:14,16) 이웃에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한 불의한 행동과 애착이다(롬7:7~8,8:9;신5:21).

제 82 문. 사람이 능히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가?

답. 타락한 후로 사람으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고(전7:20;요일1:8,10;갈5:17) 날 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범한다(창6:5,8:21;롬3: 9~21;약3:2~13).

제 83 문. 율법을 범한 모든 범죄는 똑같이 악한가?

답. 어떠한 죄는 그 본질에서 죄악을 가중(加重)시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악하다(곌8:6,1 3,15;요일5:16;시78:17,32,56).

제 84 문. 모든 죄마다 무엇으로 보응을 받는가?

답. 모든 죄마다 받을 보응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이다(엡5:6;갈3:10;애3:39;마25:41).

- 제 85 문. 우리가 죄 탓에 하나님께 마땅히 받아야 하는 진 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 답. 우리가 죄 탓에 하나님께 마땅히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행 20:21)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여러 가지 규례들을 힘써 사용하라는 것이다(잠 2:1~5.8:33~36;사55:3).

제 86 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인가?

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의 은혜인데(히10: 39) 이로 말미암아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오직 예수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는 것이다(요1:12;사26:3~4;빌3:9;갈2:16).

제 87 문.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인가?

답.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인데(행11:18)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의 죄를 참으로 알고(행2:3 7~38)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욥2:12;렘3:22) 자기의 죄를 원통히 여기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렘31:1 8~19;겔36:31) 든든하게 결심하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새롭게 순종하는 것이다(고후7:11;사1:16~17).

제 88 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기

위해 주신 외형적 그리고 통상적인 방편은 무엇인가?

답.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통상적인 방법은 그의 규례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이것이 모두 그 택하신 자에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한다(마28:19~20;행2:42,46~47).

제 89 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데 유효한가?

답.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설교하는 것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효력있는 방법으로 죄인을 깨닫고 회 개케 하시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를 받는데 굳게 세우시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느8:8; 고전14:24~25;행26:18;시19:8;행20:32;롬1:1 6,10:13~17,15:4;딤후3:15~17).

제 90 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유효하게되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답.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게 하려면, 마땅히 부지런함과(잠8:34) 마음에 준비와(벧전2:1~2) 기도함으로(시119:18) 그 말씀을 생각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서(히4:2;살후2:10)우리 마음에 두고(시119:11) 생활에서 실천해야 할 것이다(눅8:15;약1:25).

제 91 문.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유효한 방편이 되는가?

답. 성례가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 방편이 되는 것은 성례 자체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베푸는 자의 덕으로 됨도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께서 축복함으로 되며 (벧전3:21;마3:11;고전3:6~7), 또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 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이다(고 전12:13).

제 92 문. 성례는 무엇인가?

답.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데, 그리스 도와 새 언약의 유익을 물질적인 표호에 의하여 제시 되며 인(印)쳐 신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창17:7, 10;출2:1~51;고전11:23,26).

제 93 문. 신약의 성례는 무엇인가?

답.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마28:19) 성찬이다(마26:26~28).

제 94 문. 세례는 무엇인가?

답.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마28:19),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接合)과 은혜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함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조함을 표시하여 인(印)치는 것이다(롬6:4;갈3:27).

제 95 문.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가?

답. 세례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그에게

복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베풀 것이요(행8:36), 또 입교한 자의 자녀에게 베푸는 것이다(행2:38~39; 창17:7,10,12;고전7:14;갈3:17~18,29).

제 96 문. 주의 성찬은 무엇인가?

답. 주의 성찬은 곧 성례이니 그리스도가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써 그의 죽으심을 나타냄이다. 성례를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와 정욕으로 참여함이 아니요, 믿음으로써 그의 몸과 피와 및 그의주시는 은혜에 참여하여 영적 양식을 받아 은혜로 자라나게 된다(고전11:23~26,10:16;마26:26~27; 눅22:17~20).

제 97 문. 주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 주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으려면 마땅히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것과(고전11:28~29)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과(고후13:5) 회개와(고전11:31) 사랑과(고전10:16~17) 새로 순종함에 대하여 다짐이 있어야 한다(고전5:7~8). 합당치 않게 참여하면 먹고마시는 것이 정죄함을 자청함이 될 것이다(고전11:28~29).

제 98 문. 기도란 무엇인가?

답.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16:23)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함인데(시62:8),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절히 구하며(요일5:14) 죄를 자복하며(시32:5

~6;단9:4)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 이다(빌4:6).

제 99 문. 하나님께서 기도의 지침으로 우리에게 무슨 규칙을 주셨는가?

답.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지시하심에 유용한 것이나(요일5:14), 특별히 지시하신 법칙은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니 보통으로 "주기도문"이라 하는 것이다(마6:9~13;눅11:2~4).

제100문. 주기도문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주기도문의 머리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6:9)한 것이니, 이는 자녀가 그 능하고 보호하시 기를 예비한 아버지에게 가는 것과 같이 우리가 모든 거룩하게 공경하는 뜻과 든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가르치고(롬8:15;눅11:13)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이다(행12:5;딤전2:1~2).

제101문. 주기도문의 첫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답. 주기도문의 첫째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6:9)함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모든 일에 우리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능히 그를 영화롭게 하고(시67:2~3),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처리하여 그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

이다(시83:1~18).

제102문. 주기도문의 둘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답. 주기도문의 둘째 간구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마6: 10) 함은,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시68:1,18)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여(계12:10~11)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 항상 거하게 하시고(살후3:1;롬10:1;요17:9,20), 또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이다(계22:20).

제103문. 주기도문의 셋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답. 주기도문의 셋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6:10) 함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가 능히 감사한 마음 (感心)으로 범사에 그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를(시67:1~7,119:36;마26:39;삼하15:25;욥1:21) 하늘에서 천사들이 행함과 같이 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시103:20~21).

제104문. 주기도문의 넷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답. 주기도문의 넷째 간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6:11) 함인데,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사로 이 세상에 여러 좋은 것 중에 충분한 분깃

을 받게 하시고 아울러 그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구한 것이다(잠30:8~9;창28:20;딤전4:4~5).

제105문. 주기도문의 다섯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답. 주기도문의 다섯째 간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6:12) 함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하여 주시기를 구함인데(시51:1~2,7,9;단9:17~19),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능히 진심으로 다른 이의 죄를 용서하였으므로 용기있게 할 수 있다(눅11:4;마18:35).

제106문. 주기도문의 여섯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답. 주기도문의 여섯째 간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6:13) 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시험을 받아 죄를 범하지 않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거나(마26:41),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를 보호하여 구원하옵소서 하는 기도이다(고후12:7~8).

제107문. 주기도문의 맺는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답. 주기도문의 마지막 말씀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6:13) 하는 것

이니, 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 믿어 용기를 얻도록 하심이고(단9:4,7~9,16~19), 또 기도할 때 에 그를 찬송하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 음을 고백 하도록 가르친 것이다(대상29:10~13). 또 우리가 우리의 소유에 대한 확증과 소원을 아뢰고 들어주실 줄 아는 확신으로 아멘 하는 것이다(고전1 4:16;계22:20~21).

정 치 (政 治)

정치서언 (政治緒言)

본 장로회 정치는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본으로 한 것이니 웨스트민스터 헌법은 영국정부의 주관으로 121명의 목사와 30명의 장로가 1643년 런던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 모여 초안한 교회헌법을 영국 각 노회에 수의 가결한 연후에 총회가 교회헌법으로 채용공포하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는 1912년 총회를 조직하였고 1917년 제6회 총회에서 헌법을 제정할 때에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초로 수정 편성하였고, 역사에 따라 몇 차례에 걸쳐 수정 혹은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제1장 원리(原理)

제 1 조 양심의 자유(良心自由)

양심의 주재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셔서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 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이 권리를 침해(侵害)하지 못한다(행23:1).

제 2 조 교회의 자유(敎會自由)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보장된 것처럼 어떤 교회, 어떤 교파 든지 각기 교인의 입회와 출회, 직원의 자격, 교회정치의 모든

제도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설정할 자유권이 있으며 교회는 국가의 권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국가에서 각 종 교기관의 안전을 보장하며 동일시함을 바랄뿐이다.

제 3 조 진리와 행위

계시된 진리는 신앙과 행위의 기초이다. 진리가 진리 되는 증거는 사람을 성결케 함에 있다. 그러므로 신앙과 행위는 상호연락하고, 진리와 본분은 일체이며 신앙의 행위와, 진리가 부여한의무는 분리될 수 없다.

제 4 조 교회의 직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인 교회에 직원을 두어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며, 교인들이 진리와 본분을 준수함으로 덕을 세우게 하셨으니 교회의 직원은 성경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로 해야 한다.

제 5 조 치리권

치리권은 교회가 택하여 세운 대표자로서 행사하게 한다. 치리 권의 행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칙 으로 주신 성경말씀에 의거하여야 하며, 어떤 치리회든지 회원 의 양심을 속박할 규칙을 자의로 제정할 권리가 없고 오직 하나 님의 계시하신 뜻대로 해야 한다.

제 6 조 권징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권징을 행사한다. 권징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계신된 말씀의 권위에 의거하며, 교회의

거룩한 성품과 진리의 수호를 위하여 행사하는 것이요 국법에 의한 시벌이 아니다(딤후2:22:~26).

제2장 교회(敎會)

제 7 조 교회의 정의

하나님께서 친히 만국만민 중에서 자기백성을 선택하사 저희로 영원토록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게 하셨으니 저희를 가리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딤전3:15), 예수 그리스도 의 몸이요(엡1:23), 성령의 전(殿)(고전3:16)이라 부른다. 이 택함 받은 백성은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성도들이니 이를 거 룩한 공회(公會), 곧 교회라 한다.

제 8 조 교회의 구별

신령적으로 교회를 두 가지로 구별하는데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이다. 보이는 교회는 온 세계 곳곳에 있는 교회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이며, 세계 곳곳에 있는 교회는 행정적으로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로 구별한다.

제 9 조 개체교회(個體敎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과 그 자녀들이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교훈에 따라 삼위일체 하나 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 하여 활동하며, 규례대로 회집하면 이를 개체교회라 한다(행2: 46~47).

제10조 개체교회의 설립

- 1. 일정한 교인들이 예배할 장소를 준비하고 기도처로 회집하다가 교회를 설립하고자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행20:17).
- 2. 교회설립에 필요한 교인의 수는 세례교인 15명 이상이어야 한다.
- 3. 교회설립청원서는 해당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야한다.

제11조 교회의 분립ㆍ합병

- 1. 개체교회가 분립하거나 합병하려면 각 교회의 당회와 공동 의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2. 청원을 받은 노회는 위원을 파송하여 분립 또는 합병될 교회의 형편과 여건을 살펴 합당하면 허락한다.
- 3. 파송받은 위원은 분립 또는 합병에 필요한 재산 및 행정 처리를 확고히 하여야 한다.

제12조 개체교회의 폐지

- 1. 개체교회를 폐지하려면 그 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2. 그 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가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할 시찰위원회가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 3. 노회가 어떤 교회의 폐지 불가피성을 인정할 때 이를 결의하고 위원을 파송하여 제반업무를 처리한 후, 교회명부에서 삭제하고 교인들의 교적은 시찰위원회에 맡겨 관리한다.

제13조 교회의 소속변경

- 1. 개체교회가 소속노회를 변경하려면 당회에서 결의하고 당회 회의록 사본과 공동의회결의서 및 사유서와 당회원이 연서 날인한 청원서를 관계 양 노회에 제출한다.
- 2. 교회의 소속노회 변경 청원서를 접수한 관계 노회는 결의된 노회 회의록 사본과 청원서 및 의견서를 각각 총회에 제출하 고,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장 교인(敎人)

제14조 교인의 정의

교인이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바, 개체교회의 공동예배 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자이니 그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제15조 교인의 신급(信級)

교인의 신앙경력에 따라서 원입교인, 학습교인,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입교인)으로 구분한다.

제16조 교인의 의무

- 1. 교회가 정한 예배회와 기도회와 모든 집회에 정기출석 하여 야 한다(히10:24~25).
- 2. 봉사와 협력, 교제와 섬김으로 교회발전에 힘쓰며 사랑과 선행(善行)을 실천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고전 10:31.발2:1~4).
- 3. 교회운영경비와 사업비를 협조하며 자선과 전도사업 및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여야 한다.

- 4. 성경의 도리를 힘써 배우며 전하고, 성경말씀대로 실행하기 를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생활에서 나타내어야 한다.
- 5. 진리(眞理)를 보수(保守)하고, 교회법규(法規)를 준수하며 교회헌법에 의지한 치리에 대하여 복종하여야 한다.

제17조 교인의 권리

- 1. 입교인은 개체교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 2. 세례교인(=입교인)은 공동의회 회원권과 성찬참여권이 있다(고전11:23~29).
- 3.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믿음의 분량(分量)에 따라 일할 봉사권이 있다(롬12:6~11,벧전4:10~11).
- 4. 교회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지분권이 없는 총유재산권이 있다.
- 5. 교단의 헌법을 따라 청원, 소원, 상소할 수 있다.

제18조 교인의 자격정지

- 1. 교인으로서 무고(無告)하게 1년 이상 정기예배와 교회의식 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 2. 타 지방으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교회를 떠나 교인의 의무 와 권리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 3. 위와 같은 경우에 교인의 자격이 자동 정지되고 그의 교적은 별명부로 옮긴다.

제19조 교인의 이명절차

1. 교인이 타 지방으로 이주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다른 교

회로 옮겼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본인이 이명을 청원해야 하고 당회는 이명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2. 타 교단에 속한 교회로 이명을 요청할 때는 권면하여 총회가 인정하는 교단의 교회에 이명증서를 교부한다.

제20조 교인의 회복

- 1. 별명부로 옮겨졌던 교인이 교회로 돌아왔을 경우,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교인으로 회복된다.
- 2. 권징조례에 의하여 시벌되었던 자가 교회로 돌아 왔을 경우에는 당회가 법에 의하여 해벌한 후에 교인으로 회복할 수 있다.

제4장 교회의 직원

제21조 창설직원(創設職員)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초에 이적을 행할 권능이 있는 사도들을(마10:8) 선발하사 각 나라 중에 자기교회를 세우셔서 (시2:8,계7:9) 한 몸(고전10:17)에 지체가 되게 하셨으니 곧 교회의 창설직원이다.

제22조 항존직원(恒存職員)

교회의 항존직원이라 함은 그 직분이 항상 존재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목사, 장로, 집사가 있고, 이에 준하는 권사가 있다.

- 1. 당회를 조직하는 직원은 목사와 시무장로이다.
 - 1)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使者)로서 말씀선포와 성례 와 치리를 수행하는 자이니 개체교회를 대표한다.

- 2) 장로는 목사와 협력하여 교인의 치리를 담당하는 자이니 교인들을 대표한다(행20:17,20:28,딤전3:2~7).
- 2. 당회의 지도를 받아 교회를 섬기는 직원은 집사이며 이에 준하는 직원으로 여자교인 중에서 권사를 둔다.
- 3. 항존직원의 정년은 만75세가 된 해의 생일까지로 한다. 단, 정년이 되기 전에 은퇴하려면 소속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야 하고 복직은 할 수 없다.

제23조 준직원(準職員)

교단 및 노회가 시행하는 일정한 고시에 합격하고, 교회의 직원이 되기 위하여 준비 중인 자를 준직원이라 하며, 준목과 목사후보생이 있다. 단, 목사후보생은 신학대학원이나 신학대학원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이어야 한다.

제24조 임시직원

개체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안수없이 임시로 세우는 직원이니 전 도사와 서리집사가 있고, 그 시무 기간은 1년이며 연임할 수 있 다. 단, 연임의 경우 75세가 되는 해의 생일까지 시무할 수 있 다.

제5장 목사(牧師)

제25조 목사의 의의(意義)

목사는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도 존귀하며, 섬기는 직분으로서 (롬11:13) 성경에 나타난 목사에 대한 명칭과 그 의의는 다음 과 같다.

- 1. 예수 그리스도의 양 무리인 교인을 양육하는 자이므로 목자라 한다(렘3:15,딤전3:1벧전5:2~4).
- 2.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종 또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라 한다(빌1:1,고전4:1,고후3:6).
- 3. 엄숙하고 지혜롭게 행하여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고 교회를 근실히 치리하는 자이므로 장로라 한다(벧전5:1~3).
- 4.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므로 교회의 사자라 한다(계2:1).
- 5.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죄인에게 전파하며, 하나님과 화목하라 권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사신, 혹은 복음의 사신이라한다(고후5:20,엡6:22).
- 6. 정직한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역하는 자를 책망하여 각성(覺醒)하게 하는 자이므로 교사라 한다(딛2:1~9,딤전2:7,딤후1:11).
- 7. 죄악에 빠진 자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이므로 전 도인이라 한다(딤후4:5).
- 8.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율례를 시행하는 자이므로 하나님의 오묘한 도를 맡은 청지기라 한다 (눅12:42,고전4:1~2).

제26조 목사의 자격

- 1. 세례교인으로서 흠 없이 7년 이상을 경과한 자.
- 2. 연령 만30세 이상 된 자. 단, 군목, 선교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3. 본 교단의 직영(인준)신학교를 졸업한 자.
- 4.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본 교단 직 영(인준) 신학교에서 최종과정을 이수한 자.

- 5. 교단이 실시하는 준목고시에 합격하여 노회의 인허를 받은 후 1년 이상 교역에 종사하고, 청빙(개체교회, 노회, 기관)을 받아 소속노회의 목사고시에 합격된 자.
- 6.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딤전3:1~6).
- 7. 신(信), 불신(不信)간에 신임과 존경을 받는 자.

제27조 목사의 고시

- 1. 구비서류
 - 1) 당회장의 시취청원서1통.
 - 2) 준목인허증 사본1통.
 - 3) 이력서1통.
 - 4)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1통.
 - 5) 청빙서 사본1통.
 - 6) 노회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 2. 고시과목: 신조, 개혁이념, 예배와 예식규범, 권징조례, 목회학, 면접.

제28조 목사의 직무

- 1. 개체교회를 시무할 때는 양 무리된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예배를 인도 하며, 성례를 집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축복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교육하며, 고시하고, 교인의 가정을 심방 하며,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난당한 자를 위로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 2. 종교상 도리와 본분을 교훈하는 교사의 직무를 맡을 때는 목 자같이 돌아보며 구원하기 위하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말

씀의 씨를 뿌리고 결실되도록 힘쓴다.

- 3. 선교사로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역할 때는 성례를 집례하며 교회를 설립하고 조직할 권한이 있다.
- 4. 기독교 신문이나 서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경우에는 교회에 덕의(德義)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하도록 힘써야 한다.
- 5. 기독교 교육지도자로서 노회나 개체교회, 혹은 교회와 관계 되는 교육기관으로부터 청빙을 받으면 교육하는 일에 종사 할 수 있다.

제29조 목사의 칭호

목사의 사무형편에 따라 위임, 전임, 전도, 교육, 군종, 기관, 음악, 선교사, 원로, 공로, 무임, 은퇴목사라 칭한다.

제30조 목사의 임직

목사의 임직은 "정치 제5장 제26조 목사의 자격" 요건을 구비한 자를 먼저 노회가 고시한 후에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직한다.

제31조 목사의 청빙(詩聘)

- 1. 청빙의 절차
 - 1) 개체교회가 목사를 청빙하려면 시찰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 2) 전임(前任)목사와 후임목사의 노회이명 결의는 같은 날 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청빙의 종류
 - 1) 위임목사

- (1) 위임목사의 청빙은 조직교회라야 하며, 당회의 결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2)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도 반대하는 소수가 극심히 반대하는 경우에는 회장이 그 결정을 연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3) 노회에 제출하는 공동의회 회의록에는 흠 없는 입교인 의 과반수가 날인한 연명부(連名付)를 첨부하여야 한다.
- 2) 전임목사 미조직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하려면 전임목사로 청빙 해야 하고 그 절차는 위임목사 청빙에 준한다.

3) 임시목사

- (1) 조직교회는 위임목사를 청빙하여야 하나 교회의 형편상 임시목사로 청빙할 경우는 위임 목사청빙에 준하며, 임 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 청빙서에 시무기한을 명기해야 한다.
- (2) 미조직 교회가 임시목사를 청빙하려면 치리회장(당회 장)이 공동의회의 결의로 청빙수속을 해야 하며, 그 절 차는 위임목사 청빙에 준하고, 임기만료 후 계속시무를 원할 때는 동일한 방법으로 연장할 수 있고, 계속시무를 원치 아니하면 자동해임 된다.
- (3) 노회의 결의에 따라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

4) 기관목사

(1) 기관에서 목사를 청빙하려면 그 기관의 이사회나 그에 준하는 결의기구에서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목사가 소속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기관목사는 개체교회의 위임목사가 될 수 없고 임시로 시무할 수는 있다.

제32조 은퇴목사와 원로목사의 예우

- 1. 은퇴목사는 은퇴할 당시 교회가 소속된 노회에 속하나 이명 절차에 따라 목사의 주거지역 노회에 소속할 수 있다.
- 2.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위임목사가 정년이 되어 은 퇴하면 원로목사가 되고, 그 교회에서 일정한 생활비를 정하 여 예우한다. 단, 생활비는 당회가 정하고 공동의회의 결의 를 거쳐야한다.
- 3. 목사가 은퇴하면 노회 언권은 유지되나 노회의 상비부원 또 는 위원회의 위원은 될 수 없다.
- 4. 은퇴목사는 소속치리회의 소속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 5. 은퇴목사가 교회를 개척(=설립)할 경우, 설교만 담당하고, 소속노회는 당회장을 파송하여야 한다.

제33조 타 노회 소속 목사의 청빙

- 1. 교회가 타 노회소속목사를 청빙하려면 청빙청원서를 청빙서 와 함께 교회 소속노회에 제출한다.
- 2. 노회가 이를 합당히 여겨 허락하면 노회장의 이름으로 청원 서를 청빙서와 함께 청빙받은 목사의 소속노회에 제출한다.
- 3. 청원서를 접수한 노회가 허락하면 청빙서를 청빙받은 목사와 청빙한 교회에 교부하고 동시에 이명증서를 발급한다.
- 4. 타 노회 소속 준목을 청빙한 경우에는 그 교적을 개체교회의 소속노회로 이명하여 목사안수 후 청빙을 허락한다.

제34조 청빙 허락

- 1. 노회에 청빙서류가 접수되면 노회는 청빙한 교회의 대표와 청빙받은 목사의 의견과 사정을 살핀 후에 청빙승인 가부를 결정한다.
- 2. 위임목사 및 전임 목사청빙의 경우,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목사로 변경하거나 청빙을 기각할 수 있으나, 임시목사청빙을 위임목사나 전임목사로 변경할 수는 없다.
- 3. 청빙이 허락되면 노회장은 청빙서를 청빙받은 목사에게 교 부한다. 단, 노회의 허락없이 교회나 기관이 청빙서를 목사 에게 직접 교부하지 못한다.
- 4. 개체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의 경우 본인의 배우자를 동일 교회내의 항존직원 청빙이나 임직을 허락할 수 없다.

제35조 목사의 위임예식

- 1. 목사의 위임예식은 노회가 주관한다. 단, 시찰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2. 위임목사의 효력발생은 위임예식을 통하여 공포하는 때로부 터이다. 단, 위임예식을 거행하지 못했을 때에는 1차에 한하 여 연장을 청원할 수 있다.

제36조 타 교단소속 목사의 가입

다른 교단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본 교단소속노회에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 1. 노회에 제출할 구비서류.
 - 1) 가입청원서 2) 가입사유서 3) 이력서 4) 본 교단소속목사 2인의 추천서

- 2. 본 교단의 직영(인준) 신학교에서 1년 이상 수학한다.
- 3. 교단에서 시행하는 준목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 4. 노회에서 목사 임직서약을 한다.
- 5. 이상의 절차를 마칠 때까지는 교회의 청빙을 받을 수 없고, 치리권도 없다. 단, 노회의 언권회원이 될 수 있다.
- 6.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교에서 칼빈주의 신학을 수학하고, 총 회직영(인준)신학교의 교수자격을 갖춘 자로서 노회의 가입 허락을 받은 자는 위 2, 3항 과정을 면제한다. 단, 필답고사 는 면제하고 면접은 필해야 한다.

제37조 목사의 사임 및 사직

1. 자의사임(自意辭任)

목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임원(辭任願)을 노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으로 사임하게 하고 그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2. 권고사임(勸告辭任)

목사가 이단에 연루되었거나 그 행위가 부덕하여, 목사직을 계속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노회는 당사 자에게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3. 자의사직(自意辭職)

목사가 노회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노회는 이를 심사하여 사 직하게 하고 그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4. 권고사직(勸告辭職)

목사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그 교회가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시무사직의 권고를 노회에 건의하고, 노회는 그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사직을 권고할 수 있고, 이를 당사자가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노회가 처리한다.

제38조 목사의 휴무

- 1.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3개월 이상 휴무하고자 하면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1)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 2)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연수하게 된 때.
 - 3) 신체 및 정신상의 이유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때.
 - 4) 이상에 준하는 기타 사유가 있을 때.
- 2. 휴무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년 내에서 1차 연장을 허락할 수 있다.
- 3. 목사가 임의로 교회를 떠나면 위임목사와 전임목사는 자동으로 임시목사가 되고, 임시목사는 자동 해임된다.

제39조 목사의 복직

- 1. 사임 혹은 사직을 수리한 노회에 복직청원서를 제출하면 노회는 신중히 사실하여 해당사유가 해소되어 복직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복직을 가결한다. 단, 본 교단소속 목사 2인 이상의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2. 특별한 사유로 다른 노회에 복직을 청원했을 경우에는 그 노회는 사직 혹은 사임한 노회로부터 해당서류 일체와 동의서를 받은 후에 신중히 사실하여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복직을 결의할 수 있다.
- 3. 목사의 복직은 예배와 예식의 목사 임직식에 의하되 안수는

하지 않는다.

제40조 목사의 전임(轉任)

- 1. 목사는 노회의 승인없이 다른 교회로 전임하지 못하며, 청빙서를 직접 받지 못한다.
- 2. 본 교회의 결의로 청빙서와 청빙청원서를 노회서기에게 제출하고, 노회서기는 그 청빙사유를 청빙받은 목사와 해 교회에 즉시 통지할 것이며 합의하면 노회는 그 교회를 사면하게하고 청빙을 허락한다.
- 3. 다른 노회소속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은 목사가 해 교회와 합 의되면 본 노회는 그 교회를 사면하게하고 이명증서를 본인 에게 교부한다.

제41조 선교사

- 1. 선교사의 생활비와 선교에 필요한 비용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치리회나 교회에서 부담해야 하고, 소속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2. 외국인 선교사 : 외국인 선교사는 본 교단과 유관한 선교사를 지칭한다.
 - 1) 외국 장로교 선교사가 본 교단산하 노회 안에서 선교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명증서를 그 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서 그 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 2) 외국인 선교사에게 개체교회의 일을 맡겼을 경우에는 노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3) 노회가 직무를 맡기지 아니한 선교사와 파견증서만 받은 선교사는 노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단,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고, 상회 총대권이 있다.

- 4) 본 교단 소속노회에서 파견증서로 시무하는 선교사는 총회 헌법과 규칙을 준행할 의무가 있으니, 만일 도덕상 품행에 관한 범과나 본 교단의 교리신조, 정치를 위반한 때는 소 속노회가 심사하여 회원권을 박탈할 수 있다.
- 5) 외국인 선교사는 본 교단이 정한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6장 장로

제42조 장로의 기원과 의의

율법시대에도 장로가 있었으며(출3:16,18:25~26,민11:16), 복음시대에도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를 선정하여 세웠으니 그가 곧 장로이다(행15:4,딤전5:17).

제43조 장로의 권한

장로는 설교와 교훈에 있어서는 전무책임이 없으나 각 치리회에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딤전5:17,롬 12:7~8).

제44조 장로의 자격

- 1. 만35세 이상의 세례교인.
- 2. 세례를 받은 후 5년 이상 흠 없이 생활한 자. 단, 전입한 자는 본 교회 이명 후 3년 이상 경과 한 자.
- 3. 신앙과 행위가 복음적이어서 본이 되는 자.
- 4.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는 자.
- 5. 성품이 원만하여 덕망이 있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딤

전3:1~7).

제45조 장로의 직무

- 1. 목사를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한다 (딤전5:17;롬 12:7~8).
- 2. 교인들의 신령한 관계, 영적상태를 살핀다.
- 3. 교리를 오해 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한다.
- 4. 교인의 신앙생활을 살피고 심방하여 위로하고 교훈하며 격려한다.
- 5. 특별히 심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하며 목회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목사에게 협력한다.

제46조 장로의 선거절차

- 1. 조직교회에서는 당회의 결의로, 미조직교회에서는 치리회장 (당회장)이 당회의 조직이나 장로의 증원을 노회에 청원한다.
- 2. 노회는 개체교회의 형편을 사실하여 당회조직 및 증원 수를 승인한다.
- 3. 노회가 승인한 수를 개체교회의 공동의회에서 민주적인 선 거방법에 의하여 선출한다. 단, 당회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47조 장로의 고시

- 1. 장로로 선출된 후 당회의 지도로 6개월 이상 교양훈련을 한다.
- 2. 교양훈련을 마치면 당회 또는 치리회장이 노회에 고시를 청

원한다.

- 3. 구비서류
 - 1) 당회장의 시취 청원서 1통.
 - 2) 시취 받을 자의 이력서 1통.
 - 3) 가족관계 등록부 혹은 주민등록등본 각1통.
 - 4) 장로로 선출된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1통.
 - 5) 노회가 요구하는 기타서류.
- 4. 고시과목:1) 성경 2) 교단헌법(신조,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규범) 3) 일반상식 4) 면접.

제48조 장로의 임직

- 1. 고시에 합격하면 당회가 정한 일시에 교회에서 안수로 임직한다.
- 2. 타 교단 장로가 전입한 경우에는 노회의 고시를 거쳐야 한다.

제49조 장로의 칭호

장로의 칭호에는 시무, 휴무, 은퇴, 원로, 무임, 협동장로가 있다.

제50조 장로의 사임 및 사직

1. 자원사임

장로가 부득이한 사유로 당회에 사임원(辭任願)을 제출하면 당회의 결의로 그 사임을 허락할 수 있다.

2. 권고사임

장로가 사이비 이단에 연루된 사실이나 교회 내에서 현저하 게 실덕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공동의회의 결의로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단,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원을 제출하면 당회가 처리한다.

3. 자원사직

장로가 부득이한 사유로 당회에 사직서(辭職書)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회가 이를 심사하여 허락할 수 있다.

4. 권고사직

장로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직을 권고할 수 있다. 단,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원을 제출하면 당회가 처리한다.

제51조 장로의 휴무 및 휴직

장로가 개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휴무하고자 하면 당회의 결의로 일정한 기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 장로의 복직

- 자원사임 하거나 권고 사임된 장로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복직할 수 있으며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고 안수없이 복직한다.
- 2. 자원사직 하거나 권고 사직된 장로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교회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3. 휴무 및 휴직 중인 장로를 계속시무하게 하려면 일정한 기간 이 경과한 후에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교회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3조 은퇴장로와 원로장로의 예우

- 1. 은퇴장로는 은퇴할 당시의 개체교회에 계속 소속할 수 있고 자의대로 이명절차에 따라 본인의 주거지역 교회에 소속할 수 있다. 단, 그 교회에 계속 출석하면 제직회 및 공동의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 2. 동일한 개체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장로가 정년이 되어 은퇴하면 원로장로로서 그 교회의 제직회 및 공동의회의 회 원으로 예우한다.
- 3. 은퇴장로 및 원로장로를 노회의 총대로 파송할 경우, 언권회 원이 될 수 있으나 상비부원 또는 위원회의 위원은 될 수 없 다.

제7장 집사·권사

제54조 집사 및 권사의 의의

집사와 권사는 교회를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은혜롭고 매우 귀 중한 직분으로서(행6:5~7) 흠 없는 교인을 선택하여 임직한 다.

제55조 집사의 자격

- 1. 35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서 흠 없이 5년을 경과한 자로서 디모데전서 3장 8~13절에 해당하는 자.
- 2.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에 진실한자.
- 3.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서 존경(尊敬)을 받는 자.
- 4.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흠결이 없는 자.

제56조 집사의 직무

집사는 당회의 지도하에 교회를 봉사하고(딤전3:8~16),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와 일반재정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행6:1~3).

제57조 권사의 자격

- 1. 40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서 흠 없이 5년을 경과한 여자.
- 2.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
- 3.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딤전3:11).
- 4. 좋은 명성과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자.

제58조 권사의 직무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교인을 심방하고,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교인을 위로하고 격려하되 과부와 고아를 우선 돌아본다.

제59조 집사 및 권사의 선거

집사와 권사의 선출은 개체교회의 전권에 속하므로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공동의회에서 민주적인 선거방법대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제60조 집사 및 권사의 임직

집사와 권사는 6개월 이상 교양훈련을 받은 뒤에 당회의 고시에 합격하면 개체교회에서 임직한다.

단, 권사의 임직방식은 개체교회의 정관으로 정한다(행6:1~6, 딤전3:8~13,롬12:11,16:1~2).

제61조 집사 및 권사의 칭호

집사 및 권사가 개체교회 내에서 처한 위치에 따라 시무, 휴무, 무임, 은퇴 집사 및 권사라 한다.

제62조 집사 및 권사의 사임과 사직

1. 자원사임

집사나 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당회에 사임원(辭任願)을 제출하면 당회의 결의로 그 사임을 허락할 수 있다.

2. 권고사임

사이비 이단에 연루된 사실이나 교회 내에서 부적절한 행위로 현저하게 실덕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3. 자원사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당회에 사직원(辭職願)을 제출한 경우에 당회는 이를 심사하여 허락할 수 있다.

4. 권고사직

교회에서 행한 불미스러운 행위가 확인된 때에는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직을 권고할 수 있고, 그 권고에 따라 당사 자가 사직원을 제출하면 당회가 처리한다.

제63조 집사 및 권사의 복직

- 1. 당회원의 추천으로 복직 청원서를 당회에 제출한다.
- 2. 당회는 그 사임이나 사직사유가 충분히 해소된 여부를 살 핀 후, 당회의 결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복직을 허락한다.
- 3. 복직이 허락되면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한다.

제8장 준목·목사후보생

제64조 준목의 자격

준목은 총회신학교 또는 인준신학교를 졸업하고, 노회의 추천을 받아 교단 준목고시에 합격하여 노회가 준목으로 인허한 자이다.

제65조 준목의 고시

교단은 그 사람의 신덕과 종교상 이력을 시문(試問)하며 성역(聖 役)을 구하는 이유를 신중히 묻되 다음과 같이 고시를 시행한다.

1. 고시자격

목사후보생으로서 교단직영 또는 인준신학교 및 본 교단 이 인정하는 신학교를 졸업한 자이다.

2. 고시와 과목

총회 고시부는 고시일 5개월 이전에 고시에 관한 제반사 항을 교단기관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1) 필답고시과목
 - (1) 조직신학 (2) 헌법 정치편 (3) 교회사.
- 2) 원고 제출과목
 - (1) 논문 (2) 성경주해 (3) 설교.
- 3) 구술과목: 면접
- 3. 고시합격의 통지 고시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 발표하고 총회는 합격자 명단을 각 소속노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4. 고시합격증서 합격증서에는 총회장, 고시부장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66조 준목의 인허

- 1. 노회는 총회 이후 처음 회집된 정기회 기간에 준목 인허식을 갖는다.
- 2. 인허 후 이전(移轉)

준목이 다른 노회로 이거하려면 노회의 허락을 받고, 준목 이명증서를 이거노회에 제출하고 그 노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3. 인허의 취소

준목이 3년간 교회 및 그에 준하는 기관에서 시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준목으로서 덕을 세우지 못하고, 목사로 임직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노회가 그 인허를 취소할 수 있다.

제67조 준목의 청빙

- 1. 준목인허를 받은 자는 개체교회의 청빙을 받을 수 있다. 단, 청빙절차는 목사 청빙청원에 준한다.
- 2. 준목을 목사로 청빙할 때에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68조 목사후보생

주님의 몸인 교회를 봉사할 목사를 양성하는 일은 지극히 중대한 일이므로 목사를 지망하는 자를 다음 절차에 따라 목사후보생으로 선발한다.

- 1. 목사후보생의 시험
 - 1) 노회는 지원자의 성격, 가정환경, 교육정도 등 장차 목사되기에 합당한 자인가를 면밀히 시험 한다.
 - 2) 시험과목: (1) 소명의식 (2) 성경 (3) 신조 (4) 일반상식 (5) 면접.

2. 노회는 교단직영 또는 인준신학교에 목사후보생 추천서를 발급한다.

제69조 준목 및 목사후보생의 소속과 직무

목사후보생 및 준목은 개인적으로는 소속교회 당회의 치리 하에 있고, 직무상으로는 노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단, 준목의 직무는 목사에 준하나 치리권은 없다.

제9장 전도사·서리집사

제70조 전도사의 직무

당회 또는 당회장이 관리하는 개체교회에서 시무하는 유급 교역 자로서 당회의 지도를 받아 교인을 심방하고 목사의 사역을 도 우며, 미조직교회에서는 당회장의 허락으로 제직회 임시회장이 될 수 있다.

제71조 전도사의 자격 및 시험

- 1. 입교인으로서 흠 없이 5년을 경과한 자.
- 2. 신학대학교 혹은 신학교 2년 이상 수료한 자나 동등학력 의 소지자.
- 3. 만 25세 이상인 자.
- 4. 닦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
- 5. 노회의 전도사 자격고시에 합격한 자.
- 6. 전도사 자격시험 과목
 - 1) 성경 2) 신조 3) 교회사 4) 헌법정치 5) 예배와 예식규범
 - 6) 일반상식 7) 면접.

제72조 전도사 자격취소

전도사 자격을 부여 받은 자가 3년 이상 전도사 시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무 중이라도 품위를 손상하고 부덕하다고 인정할경우, 노회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73조 전도사 임직 및 해임

- 1. 전도사 자격고시에 합격한 자를 당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장이 나 치리회장이 임명하여 개체교회에서 시무하게 할 수 있다.
- 2. 당회장이나 치리회장은 교회의 형편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제74조 서리집사의 자격

개체교회의 형편에 따라 서리집사를 임명하여 집사의 직무를 하게 하되 그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1. 입교인으로서 2년을 흠 없이 경과한 자.
- 2. 성실하게 교인의 의무를 이행한 자.
- 3. 30세 이상 된 자.

제10장 회의 및 기관·단체

제75조 공동의회

공동의회는 개체교회의 입교인 총회로서 다음과 같다.

- 1. 공동의회의 회원은 흠 없는 세례교인으로 만14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단, 본 정치 제18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이어야하고, 재산권에 관한 결의는 18세 이상으로 제한한다.
- 2. 공동의회 회장은 당회장이, 서기는 당회서기가 겸직한다. 단, 당회장이 유고일 때는 당회나 교회가 노회에 요청하여

임시회장을 세워야 한다.

- 3. 공동의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 1) 당회장(미조직교회의 경우)이나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 2)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 3) 입교인 3분의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 4) 상회의 명령이 있을 때.
- 4. 회장은 개회할 날자와 시간, 장소, 상정할 안건을 1주일 전에 교회 앞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한다.
- 5. 공동의회의 결의사항
 - 1) 당회가 지시한 사항(상회의 명령).
 - 2) 연말회의에서는 제직회와 각부 및 기관보고, 예산 및 결산 의 심의.
 - 3) 목사청빙 및 교회직원의 선거.
 - 4)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단, 취득의 경우는 당회의 결의로, 처분은 공동의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5) 기타 요청되는 중요사항.
- 6. 목사청빙 및 직원선거는 총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고, 기타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른다.
- 7. 서기는 공동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장, 서기가 날인한 후 교회에 보관한다.

제76조 제직회

제직회는 개체교회의 모든 직원들의 회의이니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시무목사, 장로, 집사, 권사이며 준목, 전도사, 서리집사는 당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이 될 수 있다.

2. 임원

- 1) 회장은 당회장이 겸직하고 서기, 회계 및 필요한 부서는 당회에서 임명하거나 제직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 2) 미조직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집사와 임시직원으로 제직 회의 직무를 수행하고 치리회 회장이나 당회장의 허락으로 시무전도사가 제직회의 임시회장이 될 수 있다.
- 3.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 4. 정기와 임시로 소집할 수 있고 소집권자는 제직회 회장이다.
 - 1) 년간 4회 이상 정기회로 소집하여야 한다.
 -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당회의 결의가 있을 때, 제직회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청할 때, 임시회를 소집한다.
- 5. 제직회의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의 집행.
 - 2)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 예산 및 결산.
 - 3) 구제비 및 특별헌금의 관리.
 - 4) 당회가 요청한 사항.
 - 5) 교회가 요청하는 중요사항.

제77조 소속기관 및 단체

- 1. 소속기관 및 단체의 설립은 해당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2. 정관의 제정은 치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전도, 교육, 사회사업 등 교회발전을 도모하는 일을 해야 한다.
- 3. 개체교회의 소속기관 및 단체는 당회의 치리와 감독은 물론 감사를 받아야 한다.

4. 기관 및 단체가 치리회의 결의와 명령을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 책임을 대표자에게 물어야 하며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8조 교회의 선거

- 1. 교회와 각 기관 및 단체에서는 일반사회와 같은 선거운동을 금한다.
- 2. 교회의 항존직원으로 선출되려면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 득표해야 한다.
- 3. 직원선출과 특정한 경우 이외의 모든 투표는 과반수 득표로 결정한다.
- 4. 개표에 있어서 잘못 기록된 투표지와 백지는 투표수에 포함한다.

제11장 치리회

제79조 치리회의 의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딤전6:15,계17:13;19: 11~16) 말씀과 성령으로 그의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교회에 통치기구를 두셨으니 이를 치리회라 한다(행15:6,10:4).

- 1. 교회를 치리함에는 명백한 정치와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전 14:40).
- 2. 정당한 사리(事理)와 성경의 교훈과, 사도시대 교회의 행사 (行事)에 의지한즉 행정과 권징이 포함 된다.
- 3.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각 치리회에 있다(행15:6).

제80조 치리회의 구분

본 교단의 치리회는 당회·노회·총회로 구분하며, 노회는 당회, 총회는 노회의 상회(上會)로서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회를 지휘 감독한다. 단, 상회 혹은 하회라 함은 치리의 질서이니 하회는 상회에 순복하여야 하며, 확대회의로서의 직무도 이행하여야 한다.

제81조 치리회의 성질과 관할

- 1. 각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 조직한다.
- 2. 교회의 교리와 정치에 대하여 쟁론(爭論)이 발생하면 성경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성취하기 위하여 차서에 따라 상회에 상소한다.
- 3. 각 치리회는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고유의 독립권이 있다. 그러나 질서유지를 위해 법이 정한 순차대로 상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 4. 각 치리회는 유기체 성격의 연합기관이므로 한 치리회의 보 편적인 결정은 전국교회에 연결된다. 그러므로 각 치리회의 결정은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

제82조 치리회의 권한

- 1. 오직 도덕과 신령적인 사건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 하게 하는 것이다(눅12:2~14,요8:36,행15:1~3 2).
- 2.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정과 권징을 맡아 처리 한다.
- 3. 성경말씀과 헌법이 정하는 한도 안에서 자체의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다(눅12:2~14,요18:36,행15:1~32,마18:1

~17,고전5:4~5).

제83조 치리회의 회집

- 1. 당회는 매년 1회 이상, 노회는 매년 2회 이상, 총회는 1년 1 차 회집하며, 예배로 개회하고 폐회한다.
- 2. 당회와 노회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필요시에 임시회로 모일수 있다.

제84조 치리회 결정의 성격

- 1. 각 치리회는 고유의 권한은 있으나 독립된 개체는 아니므로 어느 치리회에서든지 법대로 결정된 사안은 교단산하 교회 가 준거(準據)할 수 있는 결정이 된다.
- 2. 각급 치리회는 고유한 특권은 있으나 순차대로 상급치리회의 기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85조 치리회 결의의 방법

- 1. 치리회의 결의는 헌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다수결로 한다.
- 2. 치리회의 결의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86조 치리회의 회장

각 치리회는 사무를 질서있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을 선정하되 목사를 회장으로 한다.

제87조 치리회 회장의 권한

- 1. 그 치리회의 규칙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개회와 폐회를 주관.
- 2. 회무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안처리를 위한 일체의 권한보유.
- 3. 규칙의 준수와 질서 유지를 위한 제반 조치의 권한.
- 4. 회원 상호간의 언권 침해 행위, 모욕, 풍자적 언행의 금지 조치.
- 5. 안건 심의의 숙의와 신속한 처리.
- 6. 회의 중 이석(離席)의 제지.
- 7. 안건의 설명과 결정의 공포.
- 8. 비상정회의 선포.

제88조 치리회의 서기

각 치리회는 그 회의록과 문서를 보관하기 위하여 서기를 선정한다.

제89조 서기의 직무

- 1. 회의록을 기록하고 관리 보관한다. 단, 총회의 회의록은 회의록 서기가 기록하고 서기가 보관한다.
- 2. 각종 문서와 장부를 보관하며 각종 문서의 수발업무를 관장한다.
- 치리회 소관문서와 장부의 등본 및 초본을 발행할 수 있고,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단, 서기가 날인한 등초본 은 원본과 같이 인정한다.

제90조 회의록 검사 기준

- 1. 회의록의 기록 사항이 사실대로 되어 있는지 여부.
- 2. 회의록이 규칙대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 3. 회의의 결정이 교회의 법에 합당한지 여부.
- 4. 회의의 결정이 지혜있고 공평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도록 되었는지 여부.

제91조 회의록의 시정

상회가 하회의 회의록을 검사하여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해당 하회로 하여금 바로 잡도록 지시할 것이며, 그 하회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에 그 결과를 상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2조 수습위원 및 전권위원

노회나 총회는 각급 치리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습위원이나 전권위원을 파송할 수 있다.

제93조 전권위원회의 구성

노회 전권위원은 5인(목사3인, 장로2인), 총회 전권위원은 7인 (목사4인, 장로3인)으로 각각 구성하되, 개회 중에는 본회의에서, 폐회 중에는 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94조 전권위원회의 업무 한계

- 1. 노회 전권위원회는 노회를 대행하는 전권으로 사정에 따라 본 교회의 당회장과 당회원의 권한을 일시정지하고 다른 목 사를 임시 또는 대리당회장으로 임명하여 행정권으로 수습 할 수 있다.
- 2. 총회 전권위원회는 총회를 대행하는 전권으로 사정에 따라본 노회의 노회장과 임원들의 권한을 일시정지하고 행정권으로 수습할 수 있다.

제95조 전권위원회 결정의 효력과 상소

- 1. 전권위원회의 결정은 이를 고지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고,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다.
- 2. 전권위원회의 결정은 치리회의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96조 이의와 항의

1. 이의서

각급 치리회에서 결정한 사안에 관하여 소수의견측이 단독 혹은 연서로 해당치리회에 제출하는 것으로써 치리회는 그 이의서를 회의록에 기록함으로 종결한다.

2. 항의서

소수가 다수의 결정에 불복하는 의사의 표명으로서 단독, 혹은 연명으로 치리회에 제출하는 것으로써 치리회는 답변위원을 선임하여 답변서를 작성케 하고, 본회의에서 낭독한 후항의서와 답변서를 회의록에 기록함으로 종결한다.

3. 이의나 항의는 결의 후 즉시 해야 하며, 소란한 중에는 할 수 없고 질서가 준수되는 중에 처리해야 한다.

제12장 당회

제97조 조직과 구분

- 1. 당회는 그 교회의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조직한다.
- 2. 시무장로가 2명 이상인 경우를 당회라 하고, 시무장로가 1명 만 있는 경우를 준 당회라 한다.

제98조 조직 요건

- 1. 미조직교회가 당회를 조직하려하면 15인 이상의 장년 세 레교인이 있어야 한다.
- 2. 교회가 시무장로를 증원하려면 세례교인 15인당 1인의 비율로 한다(행14:23,딛1:5).
- 3. 교회의 치리회장은 당회조직 청원서나 장로증원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99조 회집

- 1. 정기당회는 매년 2회 이상 정기 소집하여야 한다.
- 2. 임시당회
 - 1)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장로 반수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 3) 상회가 회집을 지시할 때.
- 3. 당회장은 시무장로 전원이 소집사항을 인지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제100조 성수

- 1. 당회는 당회장과 장로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대 리 당회장은 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2. 준 당회는 당회장과 장로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101조 준 당회의 직무처리

준 당회라 할지라도 당회의 직무를 처리할 수 있으나, 그 장로의 치리문제나 기타 사건에 있어서 장로가 불복할 경우 노회에 청원하여 위탁처리하고 그 결의에 순복해야 한다.

제102조 당회장

개체교회의 당회장은 다음 각항에 의거하여 노회에서 선임 파 송한다.

- 1. 위임목사는 개체교회의 당회장이 된다.
- 2. 전임목사는 노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될 수 있다.
- 3. 위임목사 유고시에 노회는 당회장을 파송한다.
- 4. 위임목사가 병중에 있거나 출타할 경우 그 당회의 결의로 임 시당회장을 청한다.
- 5. 개체교회의 당회장 유고시 특수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회장이 위임한 자나 혹은 당회원이 합의하여 대리당회장 을 위촉할 수 있다. 단, 대리당회장은 결의권이 없으나 해 당 교회의 당회원이 대리당회장에 위촉된 경우에는 결의권 을 갖는다.

제103조 직무

- 1. 교인의 신앙과 행위의 총찰.
- 2. 예배와 집회의 주관, 소속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3. 교인의 입회와 탈회에 관한 업무의 총괄.
- 4. 선출된 항존직원(장로, 집사, 권사)의 교양훈련 및 임직.
- 5. 각종 헌금의 실시 및 재정 감독.
- 6. 권장의 전담(살전5:12~13,살후3:6,14~15,고전11:27~30).
- 7. 노회의 총대장로 파송.
- 8. 청원건 제출, 교회의 상황보고.
- 9. 교회의 기본재산의 관리.

제104조 회의록

- 1. 당회 회의록에는 회집일시, 장소, 참석회원, 결의안건 등을 명백히 기록하여 회장, 서기가 날인 한다.
- 2. 당회 회의록이나 재판회의록은 매년 1차씩 노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5조 비치할 명부와 문부

1. 명부(名簿)

- 1) 교적부
 - (1) 원입교인명부 (2) 학습교인명부 (3) 유아세례교인명부
 - (4) 입교인명부 (5) 세례교인명부.
- 2) 별명부(1년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소재 불명자).
- 3) 책벌 및 해벌자 명부.
- 4) 별세인명부.
- 5) 혼인교인명부.
- 6) 이명인명부(이명증서 접수, 발송 연월일 기입).

2. 문부(文簿)

- 1) 회의록
 - (1) 당회 회의록 (2) 제직회 회의록 (3) 공동의회 회의록
 - (4) 재판 회의록 (5) 각 기관 회의록.
- 2) 교회 약사(연역).
- 3) 교회재산 목록.
- 4) 교회비품대장.
- 5) 각종 통계표.
- 6) 각종 보고서철과 참고서류철.
- 7) 재산관계 문서철.

제106조 당회의 폐지

당회를 조직한 후 시무장로가 공석이 되면 당회는 자동 폐지된다. 단, 당회가 폐지되었을지라도 위임목사는 자동 해임되지 않는다.

제13장 노회

제107조 의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에는 여러 개체교회가 있으므로 (행6:1~6,9:31,21:20), 서로 협력함으로써 교리의 순결과 온전함을 보존하여, 신앙을 증진하고, 교회의 행정과 권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회로서 노회를 조직한다(행6:11,9:31,15:2~4,19:18~20,21:17~18,20,23:30).

제108조 목적

- 1. 동일한 신앙고백으로 교리신조(敎理信條)를 확립하고 보수 하며, 도리의 오해나 이단을 방지한다.
- 2. 통일된 치리를 통하여 개체교회의 오심(誤審)이나 오판(誤判)을 예방하고 지도, 교정한다.
- 3. 개체교회가 연합하여 지속가능한 가치인 교육, 선교, 언론, 문서 등 필요한 운동을 적극 선양한다.

제109조 조직

1. 노회는 3처 이상의 조직교회와 15처 이상의 개체교회로 조직할 수 있다. 단, 총회가 인정하는 특수한 노회는 예외로 한다.

- 3. 개체교회에서 파송할 총대 장로의 선임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세례교인 100명 미만까지 1인.
 - 2) 세례교인 100명 이상 300명 미만까지 2인.
 - 3) 세례교인 300명 이상 500명 미만까지 3인.
 - 4) 세례교인 500명 이상 1,000명 미만까지 4인.
 - 5) 세례교인 1,000명 이상의 경우 500명을 초가 할 때마다 1인씩 증원할 수 있다.

제110조 노회원의 자격

- 1. 모든 목사는 노회의 회원이다. 단, 공로목사, 원로목사, 은퇴목사, 선교사, 무임목사는 언권회원이 된다.
- 2. 개체교회가 파송한 총대장로로서 노회서기에게 접수하여 호명하면 회원이 된다.
- 3. 상회에서 파송한 목사는 자동언권회원이 되고, 타 노회소속 목사는 노회의 허락으로 언권회원이 될 수 있다.

제111조 노회원의 의무이행

당회가 총대를 파송하지 아니하면 노회는 그 당회를 권면하고, 선정된 장로총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을 게을리 하면 노회 는 그 당회로 그를 책망하게 하며 노회의 회원인 목사가 노회의 출석을 게을리 하면 노회는 그 목사와 당회를 책망하여야 한다.

제112조 노회의 소집

모든 회의는 노회장이 소집하고 사회하며, 노회장 유고시 대행 순(代行順)은 부회장, 서기, 직전회장이며 회의를 소집하고 사

회한다.

1. 정기회

1년 1차 이상 노회의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항을 처리, 결정, 실행한다.

2. 임시회

- 1) 각각 시무처가 다른 목사회원 및 총대장로 각 3인 이상의 청원에 의하여 소집하며, 토의 안건은 3건 이상이어야 한다.
- 2) 통지한 안건 이외는 의결할 수 없다. 단, 출석회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예외로 한다.
- 3) 소집통지서는 개회 10일 이전에 발송한다.
- 3. 노회의 소집은 모든 개체교회에 통지해야 하며, 시무목사가 없는 교회는 치리회장(당회장)이 교회대표자(시무교역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할 때 노회 허락으로 발언할 수 있으나 언권회원은 아니다.

제113조 노회의 개회성수

노회는 회원(목사와 총대장로)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114조 노회의 직무

- 1. 소속당회, 개체교회, 기관 및 단체, 모든 목사와 준직원을 총 찰한다.
- 2. 당회가 제출하는 헌의, 청원, 진정에 관한 사항을 접수 처리한다.

- 4. 다음 각항의 직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 처리한다(행13:2~3).
 - 1) 목사후보생의 고시와 관리 및 교육.
 - 2) 준목의 인허 및 관리.
 - 3) 전도사의 자격고시 및 관리.
 - 4) 개체교회 장로의 증원 및 임직허락.
 - 5) 장로로 선출된 자의 교육과 고시.
 - 5) 목사고시와 임직 및 위임(딤전4:14,행13:2~3).
- 5. 당회 회의록 및 재판회의록을 검사하여 교정하게 한다(행 15:10,갈6:2~5).
- 6. 개체교회의 설립, 분립, 합병, 당회조직승인 및 개체교회의 교육, 전도, 재정 등 전반에 걸쳐 지도한다.
- 7. 총회에 대한 직무
 - 1) 청원, 헌의, 진정, 상소 등 필요한 문서를 제출한다(고 전14:33,40).
 - 2) 성경과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순종하고 지도를 받는다.
 - 3) 총회규칙에 따라 총대를 선출하여 파송한다.
 - 4) 1년 1회 이상 노회의 조직 및 상황을 보고한다.
 - 5) 상회의 공한(公翰)을 접수하여 그 결의와 지시를 따른다.
- 8. 신사건 처리
 - 당해 회기 내에 의결을 필요로 하는 긴급 불가피한 사건이 있을 때는 회원 5인 이상의 청원으로 사건을 처리할수 있다.
- 9. 재산관리

노회와 개체교회 및 산하 기관의 재산관리 상황을 지도하고 부동산 문제로 사건이 발생하면 그 해결을 위해 협력한다.

제115조 회의록

노회는 노회 회의록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보관해야 하며, 년 1차씩 총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6조 노회가 작성 보관할 각종 명부 및 서류

- 1. 각종 호칭별 목사명부.
- 2. 장로 명부(시무장로, 원로장로, 은퇴장로, 사망자 등).
- 3. 준목명부.
- 4. 목사후보생명부.
- 5. 목사임직명부.
- 6. 재판회의록.
- 7. 이명자명부.
- 8. 개체교회 명부(설립, 분립, 합병, 폐지 년 월일) 참고사항기입 등.
- 9. 책벌 및 해벌명부.
- 10. 역대 임원명부.
- 11. 각종 문서의 수발 대장.
- 12. 노회에 속한 재산관계 서류철.

제117조 각종 공문서 및 서류

노회에 제출하는 모든 공문서(각종청원, 헌의, 질의 등) 및 서류는 개체교회는 당회장명으로, 기관은 기관장명으로 작성해야하고. 해당 시찰위원회를 경유해야 한다.

제118조 노회의 분립, 합병 및 폐지

- 노회의 분립은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노회명, 기 관파송이사, 노회의 재산, 소속기관, 소속교회 및 회원 명단 을 첨부하여 총회에 청원한다.
- 2. 노회의 합병은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에 청원한다.
- 3. 노회가 분립, 합병, 또는 특별한 사유로 노회구역을 조정하 러하면 총회는 관계노회의 의견을 수렴 참작하여 그 변경을 결정한다.
- 4. 노회가 설립된 후 노회의 요건에 미달된 상태로 2년이 경과되면 노회는 폐지되고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19조 노회의 자체 규정

각 노회는 세부적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헌법에 근거한 자체 규정(규칙 혹은 정관)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120조 시찰회

- 1. 노회는 산하 개체교회를 효율적으로 지도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단위로 시찰회를 둔다.
- 2. 시찰구역은 노회에서 정한다.

제121조 시찰위원

- 1. 노회는 개체교회를 지도 감독하는데 있어서 원만한 치리권 의 실행을 위하여 시찰단위로 시무목사와 총대장로 중에서 시찰위원을 선정한다.
- 2. 시찰위원의 수는 노회가 정하고, 시찰위원은 개체교회를 시찰하고 중요한 사건을 협의 지도하며 노회에 보고한다.

제122조 시찰위원의 직무

- 1. 개체교회의 교역자 청빙을 협의, 권고한다.
- 2. 소속 개체교회의 연합 사업을 기획 지도한다.
- 3. 개체교회가 노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살펴 경유한다.
- 4. 각 교회의 형편을 시찰하고, 집회관계를 협의 지도한다.
- 5. 교회의 상황과 위임받은 사건의 처리 결과를 노회에 보고 한다.
- 6. 치리회가 아니므로 임의로 치리관계의 사건에 관여할 수 없다.

제14장 총회

제123조 의의

총회는 본 교단의 최상급치리회이며, 그 명칭은 "대한예수교장 로회 개혁총회"라 한다.

제124조 조직

- 1.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총대와 장로총대 동수로 조 직한다.
- 2. 총대 파송비율은 노회마다 목사, 장로 각 5인을 기본수로하고, 7교회(혹은 3 당회)마다 목사,장로 각 1인씩을 추가한다. 단, 각 노회에서 총대를 파송하는 방법과 총회임원의 선출방법은 총회규칙과 임원선거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제125조 총회의 총대

1. 각 노회는 정기회에서 총회총대를 선출하고 그 명단(=천서)

- 을 개회 2개월 전에 총회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총 대비를 예납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2. 총회 서기가 노회의 총대천서를 접수 심사하여 호명한 이후 부터 회원권이 개시되며 파회와 동시에 소멸된다.
- 3. 새로 조직되거나 가입된 노회의 총대는 개회 후, 임원선거직 전에 노회설립 및 가입보고를 받은 후에 본회의 허락을 받아 호명한다.
- 4. 장로회원은 개체교회의 시무장로이어야 한다.
- 5. 총회원의 여비는 각 노회에서 지급한다.
- 6. 증경총회장 및 증경장로부총회장은 자동총대로 예우한다. 단, 의결권은 없고, 위원회의 위원은 될 수 있다.
- 7. 언권회원
 - 1) 본 총회의 파송을 받은 본 교단 소속선교사.
 - 2) 파송증서를 노회에 등록하고 본 교단산하에서 사역하는 외국인선교사.

제126조 총회의 회집

- 1. 총회는 매년 1차씩 예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회집한다.
- 2. 소집통지 및 사회는 총회장이 한다. 단, 총회장의 유고시에는 부총회장, 서기, 직전총회장 순으로 소집, 개회하고 신임 총회장이 선임될 때까지의 회무를 담당한다.

제127조 총회의 개회성수

총회는 노회 과반수의 참석과 등록된 총대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출석으로 간주(看做)한다.

제128조 계속총회

- 1. 총회가 성원미달로 유회되었거나 또는 장기간 정회되었을 때는 계속총회로 모일 수 있다.
- 2. 계속총회의 회원은 원 총회시의 총대가 된다. 총대의 유고시에는 부총대가 대리할 수 있다.

제129조 총회장의 지위와 직무대리

- 1. 총회장은 총회기간 동안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파회 후에는 교단의 대표가 된다.
- 2. 총회의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이 대리하고 부회장도 유고 일 경우는 회원인 직전회장으로부터 역순위로 전 회장이 대리 한다.

제130조 총회의 직무

- 1. 교단산하 모든 개체교회와 치리회와 소속기관과 단체를 총 찰(總察)한다.
- 2. 헌법의 해석, 판단의 전권을 가진다.
- 3. 헌법의 개정, 제반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4. 각 노회나 소속기관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한 헌의, 청원, 상고, 소원, 질의와 권장에 관한 문서를 접수하여 처리한다.
- 5. 노회의 설립과 분립, 통합과 폐지에 관한 업무를 총괄(總括) 한다
- 6. 각 노회의 회의록을 검사한다.
- 7. 준목자격을 고시한다.

- 8. 교역자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관리 운영한다.
- 9. 선교사업, 교육사업, 사회사업 등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 10. 노회재산에 대한 분규가 있을 때 처리한다.

제131조 총회 실행위원회

- 1. 총회파회 후에 총회운영의 지속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며, 긴급한 사안을 총회적 권위와 기능을 가지고 의결한다.
- 2. 실행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은 총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32조 총회의 개회와 폐회

- 1. 총회는 예배로 개회하고, 파회한다.
- 2. 파회 시 회장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총회가 나에게 허락한 권으로 지금 총회는 파함이 가 한줄 알고 이 총회와 같이 조직한 총회가 다시 모년 모월 모일에 모처에서 회집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 니다."

제15장 재산

제133조 교단의 재산

본 교단의 재산은 교단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재산과 개체교회 나 노회가 증여하는 재산과 산하기관 및 직속단체의 재산과 그 외의 개인이나 단체가 기부하는 재산으로 한다.

제134조 노회의 재산

노회의 재산은 노회가 조성한 재산과 개체교회가 증여한 부동산

및 개인이나 단체가 헌납한 재산으로 한다. 단, 교인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노회나 그 교회에 헌납할 경우에는 그 즉시로 노회나 개체교회의 재산이 되며, 개체교회가 노회에 증여한 재산은 그 즉시 모든 재산권은 노회로 귀속된다.

제135조 재산의 관리 및 용도

- 1. 교단의 재산은 법인 이사회에서 관리하고 교단운영에 사용하다.
- 2. 노회의 재산 중에 개체교회의 부동산은 그 교회의 당회가 관리하고 동산은 제직회가 관리하되 교회의 운영에 사용한다.
- 3. 본 교단의 교리나 헌법 및 제반법규를 준행하지 않거나 이탈 한 자, 기관과 단체의 총유재산권은 상실된다.
- 4. 법인에 편입되지 아니한 개체교회에서 재산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단의 재산관리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36조 교회의 재산권

교회의 재산은 동산, 부동산을 막론하고, 그 교회에 소속된 입교인의 지분권(持分權)없는 총유재산이다. 단, 수찬정지, 이명, 제명, 출교 등으로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그 권리 또한 상실된다.

제16장 헌법개정

제137조 교리편의 개정

1. 총회는 특별위원 9인 이상을 선임하여 1년간 연구하게 한다. 특별위원은 목사, 장로로 구성하고 동일(同一)노회에서

- 2인 이상이 될 수 없다.
- 2. 특별위원의 개정안이 총회에서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되면 각 노회는 총회 파회 후 2개월 내에 임시회를 소집 하여 수의하여야 한다.
- 3. 모든 노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노회별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 4. 각 노회서기는 투표상황을 노회 폐회 후 15일 이내에 총회에 서면 보고한다.
- 5. 총회서기는 그 결과를 집계하여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 6. 위 3항대로 집계되었으면 총회장과 서기의 이름으로 공포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제138조 정치, 예배와 예식 규범, 권징조레의 개정

- 1. 총회는 헌법위원으로 하여금 개정안을 제출하게 한다.
- 2. 상정된 개정안이 총회에서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되면 각 노회는 총회 파회 후 2개월 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 수의하여야 한다.
- 3. 모든 노회의 과반수 찬성과 노회별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 4. 각 노회서기는 투표상황을 노회 폐회 후 15일 이내에 총회에 서면 보고한다.
- 5. 총회서기는 그 결과를 집계하여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 6. 위 3항대로 집계되었으면 총회장과 서기의 이름으로 공포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단, 부결된 개정안은 자동 폐기되며 그 개정안을 3년 내에는 상정하지 못한다.

제139조 헌법 개정안의 헌의

소속노회 3분의 1 이상이 헌법의 개정을 총회에 헌의했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결의하고 개정의 절차는 제16장 제137조, 제 138조를 준용(準用)한다.

예배와 예식 규범

서 문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은 1645년 웨스트민스터 총회와 의회의 법령으로 채택 인준하였다. 이는 개혁주의 장로교회가 삼위일체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 헛되고 미신적인 요소들을 제하여 버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주님의 몸인 그리스도의 교회 간에 신앙일치를 위한 약속의 일환으로써 마련된 예배모범을 따름으로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예배와 예식이 되게 하여야 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일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섬기는 성도들의 당연한 응답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경건하게 행해야 한다. 본 교단은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의 정신을 계승하고, 헌법이 정한 규례를 따라서 산하 모든 교회가 행할 예배와 예식의 규범을 작성하였다.

제1부 교회의 예배

제1장 교회와 예배

제1조 예배공동체로서의 교회

1.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공동체이다. 이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 아래서 예

- 배와 선교, 교육, 봉사, 친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데 존재의 목적을 두어야 한다.
- 2.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경건한 응답으로서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 3.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바르게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상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4.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름 받았음을 확인한다. 이 소명은 교회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각 각 다른 분야를 섬기도록 하셨으니, 목사에게는 예배를 인도 하며 성례전의 집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선포 하는 특수한 임무를 부여 하셨다.

제2조 예배

- 1.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창조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역사를 이루신 사실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격하여 드리는 응답의 행위이다. 그러므로 예배자들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마22:37), 경배와 찬양과 영광과 권세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하다.
- 2. 예배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대상이 되어야한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며, 성령님의 역사 아래서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진행되도록 해야 하고, 특별히 예수

-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한 믿음이 예배의 기본이되어야 한다.
- 3. 예배의 본질은 언약이다. 언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쌍방 간에 맺은 은혜로운 관계이다. 예배에는 하나님과 백성이 각 기 기여하는 부분이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복과 은혜를 주시 되 말씀을 통하여 주시며, 백성들은 하나님께 찬양, 기도, 헌 금을 통하여 영광을 돌린다.

제2장 주일(主日)성수

제3조 주일성수의 의무

주일성수는 성도의 당연한 의무이다. 이날에는 성경의 교훈을 따라 육신을 위한 모든 사업을 중지하고 거룩히 지켜야 한다. 예배와 안식함에 방해되는 일과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 행위를 금하고, 연회나 저속하고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일 을 삼가야 한다.

제4조 공동예배

주일에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 정한 시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신자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제5조 주일준비

- 1. 주일은 종일토록 거룩하게 지켜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미리미리 군비하되 성실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고, 공동의 예배에서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한다.
- 2.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처럼 예배에 필

요한 것들을 준비하여 주일성수에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

제6조 주일에 행할 일

- 1. 모든 성도들은 함께 드리는 공동예배에 전심전력한다.
- 2. 예배 후에는 개인의 신앙성장을 위하여 기도, 성경 읽는 일, 성경공부, 신앙서적 읽기 등에 주력한다.
- 3.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심방하고, 전도하며 성도의 교제에 힘쓴다.

제7조 주일에 금할 일

주의 날에 예배와 성례전 외에 다른 예식을 행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을 기념하거나 축하하고 높이는 일은 하나님께만 드 려져야 마땅한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는 죄가 되기 때문이다.

제3장 주일예배

제8조 공중예배의 의의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 계시므로 언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으나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정한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공중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과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 요긴한 일이며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다.

제9조 예배의 대상

성도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분이시

니 모든 예배의 목적과 내용이 하나님께서 받으실만한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되게 하여야 하며 인간적인 모든 요소는 배제 되 어야 한다.

제10조 예배 인도자

- 1. 예배 인도자는 단정한 용모와 복장을 갖추고 정한 시간에 시작하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질서있게 진행할 것이다.
- 2. 목사 가운이나 스톨을 착용함으로 형식적이라거나 자기 과 시용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단, 특별한 예식은 예외로 한다.

제11조 예배위원

- 1. 예배의 인도자인 목사와 함께 질서있고 조화로운 예배가 되 도록 섬기는 사람들을 예배위원이라 한다. 예배순서담당자 (기도, 안내, 봉헌)와 음영담당자, 찬양대원은 모두 예배위 원이다.
- 2. 모든 예배위원들은 예배자들이 예배함에 있어서 거리낌이나 방해됨이 없도록 돕기 위하여 목사의 지시에 따라 정한 자리 와 위치에서 성심을 다해 섬김으로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끝까지 섬겨야 한다.
- 3. 안내 담당자는 촬영이나 녹화로 인하여 예배 분위기가 산만 해지거나 소란스러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예배가 시작 되면 예배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

제12조 예배자

1. 예배하려는 자는 개회시간 전에 입장하여 예배를 준비해야

하고 사회자의 인도를 따라 모든 순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경청하여야 한다.

- 2. 모든 예배자들은 예배시간의 시종을 엄숙한 태도와 경외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하고 목사가 낭독하거나 인용하는 성경 말씀에 집중하여야 한다.
- 3. 예배자는 옆 사람과의 잡담은 물론 예배에 합당치 않은 일체 의 언행을 금하고 오직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세와 태도 를 가져야 한다.

제4장 예배의 요소 및 순서

제13조 예배의 요소

- 1. 모든 예배의 시간과 순서는 당회에서 정하되 예배의 기본적 인 요소들이 누락됨이 없도록 유의 하여야 한다.
- 2. 모든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하고, 예배자의 정성이 표현되고, 경건한 질서의식이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제14조 예배의 순서

목사는 예배의 인도자로서 성경적 예배관을 확립하여 참 예배가 되도록 유의해야 하며,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일관성을 가지면 서도 목사와 더불어 온 회중이 참여하는 공동예배의 특성이 드 러나도록 해야 한다. 공중예배는 기본적인 순서가 있으니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여야 한다.

1.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서로 예배가 시작

된다. 묵도, 찬양대의 입례송, 인도자의 개회기원, 교독문, 신앙고백이 여기에 속한다.

2. 찬송과 고백과 기도의 순서

인간의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시와 찬미로 화답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와 구속의 은총에 대한 감사, 회중의 소원을 간구하는 기도가 있는 순서이니 찬송과 공식기도가 여기에 속한다.

3. 말씀의 순서

하나님 앞에 나아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순서이다. 이 순서는 성경봉독, 설교, 성례전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영혼에 새로운 영양소를 공급하는 소중한 부분이다.

4. 감사와 응답의 순서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성도의 응답이니, 이 순서는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으로써 찬송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새로운 헌신과 결단을 보이는 부분이다.

5. 위탁과 강복의 순서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는 순서이니 헌신을 다짐하는 고백적인 찬송을 부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것을 다시 한 번 권면한 후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이를 축도라 하며 그 형식은 성경대로 함이 좋으니, "지금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무리 중에 있을지어다"함이 좋다(민수기6:24~26,고후13:13,히13:20~21살후2:16~17).

제15조 예배의 요소

- 1. 예배의 부름(시편124:8).
- 2. 기원(고전1:3;계1:4,5).
- 3. 영광찬송(엡1:3,6,12,14).
- 4. 회개의 기도(시51:1~12).
- 5. 십계명(출20:1~17).
- 6. 성경교독(딤후3:14~17).
- 7. 신앙고백(사도신경)(마16:16).
- 8. 감사찬송(골3:16;엡5:19).
- 9. 대표기도(딤전2:1).
- 10. 성경봉독(계1:3;골4:16).
- 11. 찬양대의 찬양(출15:1~18).
- 12. 말씀선포/설교(눅24:47;행9:20;10:42;딤후4:2;딛 1:9).
- 13. 성례(마28:19~20).
- 14. 금식과 감사(마6:16~18;시118:1~4).
- 15. 권장(마18:18;고전5:4~5).
- 16. 화답찬송(골3:16).
- 17. 헌금(행11:27~30;고전16:1).
- 18. 교제(행4:32).
- 19.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마6:9~13).
- 20. 축도(고후13:13; 민6:24~26).

제16조 공동의 찬송

1. 찬송은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의무이며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다(히13:15).

- 2. 예배자로서 성도가 찬송을 부를 때에는 가사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곡조에 맞추어 부르되 마음을 다하여야 한다.
- 3. 공동의 찬송은 평소 개인적인 찬송생활의 연장으로써 온 교회가 다함께 부르는 조화로운 합창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되도록 마음을 다해 소리 높여 찬양해야 한다.

제17조 찬송의 횟수

공중예배 시간의 찬송횟수는 인도자인 목사의 재량에 속하나 전 교인들이 기쁨으로 부를 수 있도록 한다.

제18조 대표기도

- 1.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더불어 공동예배의 특별한 순서인 기 도를 요구하심을 믿는다. 그러므로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하 는 사람은 '성부 하나님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기도하되, 모든 회중이 알아들 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2. 공중예배에서 평신도가 드리는 기도는 목회기도가 아니므로 그 내용은 감사와 자복과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내용이어 야 한다. 모든 성도들은 기도 인도자와 더불어 경건한 태도 를 가져야 하며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 3. 목사가 선포할 말씀을 준비하는 것과 같이 기도하는 자도 사 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성경을 숙독하고, 기도의 능력과 정 신을 갖추도록 힘쓰고, 마음을 정돈하고 언어의 선택에도 유 념하여 모든 회중에게 유익을 주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4. 주일 공중예배 시간의 대표기도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무

한하신 권위를 의식하여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 혜로운 임재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일체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되 순서를 따라서 질서있게 구하여야 한다.

1) 영광(築光)을 돌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타내신 그 권능과 완전하심을 찬양한다.

2) 감사(感謝)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양 은혜를 감사할 것이니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심과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심과 모든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안에 베풀어주신 은혜를 감사한다.

3) 자복(自服)

원죄와 자기가 범한 죄를 자복하며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분 리되는 악한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각양 죄를 말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 은 죄와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범한 죄와 순간적으로 때로 는 의식적으로 범한 모든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 혈을 통한 용서와 사죄를 구하여야 한다.

4) 간구(懇求)

이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내용이어야 한 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어떠한 역경에서라도 하나님의 사 랑 속에서 우리 영육간의 생활이 보호받도록 간구해야 한 다.

5)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 온 인류를 위하여 기도하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실 것과 주님의 몸인 교회의 평화와 성결과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목사들과 각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되군인, 경찰, 소방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딤전2:1,2).

제19조 말씀 선포 후의 기도

말씀을 선포한 자는 선포된 말씀과 관련된 내용을 기도하되 열 매를 맺도록 간략하게 기도하여야 한다.

제20조 폐회

공중예배의 모든 순서는 목사의 축도로 마치고 폐회 한다(고후 13:13; 히13:20~21; 앱3:20~21; 살후2:16~17; 민6:24~26).

제5장 예배와 헌금

제21조 헌금의 의무

모든 교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예배시간에 헌금할 의무를 가진다.

제22조 헌금의 의의와 종류

1. 일반헌금

헌금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른 당연한 의무로서 십일조와 주 일헌금으로 구분하고, 그 외에 감사헌금, 절기헌금 등은 자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일반헌금이다.

2. 특별헌금

교회의 특별행사나 예배당 건축 등과 같은 공동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회의 결의에 의한 특별헌금이니 그 목적 대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23조 십일조의 의무

모든 교인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소득의 십일조를 이행하여 야 하며 마땅히 소속된 개체교회에 드려야 한다.

제24조 헌금교육

- 목사는 헌금이 예배의 한 부분임을 선포하기 위하여 헌금 전이나 후에 성도들의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고, 그들에게 복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 2. 목사는 교인들에게 헌금의 중요성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인 색한 마음으로나 부득이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기쁘고 즐거 운 마음으로 헌금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제25조 헌금의 관리

- 1. 주일학교나 그 밖의 속회와 기관에서 수납한 헌금은 교회에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 사용할 것이며, 당회의 허가 없이는 교회와 관계없는 어떤 헌금도 할 수 없다.
- 2. 수집된 모든 헌금은 당회에 보고하고, 당회의 지도를 받아 사용되어야 한다. 헌금한 사람이 특별한 목적으로 헌금했을 경우에는 그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6장 성경봉독과 말씀선포

제26조 성경봉독

- 공중예배 때에 성경을 봉독하는 것은 예배의 한 부분이니 봉독할 성경은 설교자가 선택하되 봉독은 목사나 허락을 받은 사람이 할 것이며 봉독할 때는 경건하고 엄숙한 자세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 성경말씀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계시로써 설교와 성 례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선포할 뿐 아 니라 삶의 원천적인 능력을 제공해 준다. 그러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배 중에 반드시 봉독하여야 한다.

제27조 말씀선포

- 1. 말씀의 선포(=설교)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침이 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훈련받은 말씀의 사역자를 통하 여 정확하게 해석되고, 회중들에게 바르게 선포되어 효율적 으로 적용될만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새로운 만남을 가지며, 하나님의 자 녀됨의 확신과 구원의 은총을 계속 받아 누리도록 힘써야 한 다.
- 2. 말씀의 선포자는 영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성경을 깊이 연구하며, 항상 묵상함으로 준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힘쓰며, 모든 회중이 알아듣기 쉽게 말할 것이요, 인간적인 사상이나 자기의 학식과 재주를 과시하지 말아야하고, 바른 행실로서 선포된 말씀이 빛나게 하고(딛2:10), 생각과 말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함에 성도의 본이 되어야

한다.

- 3. 공중예배시간의 말씀선포는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한 시간 내에 강론하되 그 진리를 옳게 해석하여 가르침으로 경 청하는 회중들이 삶의 현장에 적절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4. 담임목사나 당회의 허락 없이 그 누구도 교회에서 말씀을 선 포할 수 없다. 담임목사나 당회가 없는 교회에는 노회가 설 교자를 파송하여야 한다. 경건회나 기도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타의 예배에서는 성경봉독으로 설교를 대신할 수 있다.

제7장 예배의 분류

제28조 예배의 의의

교회의 일차적인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있으므로 어떠 한 예배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그의 은혜에 감사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기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29조 주일예배

- 사도들이 섬기던 초대교회로부터 주님의 날은 하나님께 예 배드리는 날로 확정되었으며, 주일예배는 교회공동체를 이 룸에 있어서 신앙을 형성하고 지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 2. 주일예배는 교회의 모든 예배가운데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예배이므로 성도들은 이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찬을 통하여 주님을 기념하고, 부활의 주님 안에서 계

시된 영원한 약속들을 확인하게 된다.

3. 주일에는 성경에 가르친 대로 온 종일 육신의 모든 일을 중지하고, 그 날을 거룩히 함에 방해됨이 없도록 준비하여 모든 성도들이 정한 시간과 장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되 정중한 의식을 갖추어야 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한다(고전16:1~2,행20:7,계1:10,마12:1~13,눅4:16;사66:23;눅23:54~56).

제30조 찬양예배

주일저녁 혹은 오후에 드리는 예배는 찬양예배로써 성도의 친밀한 교제와 교회공동체의 훈련과 헌신을 위하여 유익하니 교인들의 신앙체험을 간증하고,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통하여 얻은기쁨을 찬양으로 표현하여 영광을 돌려야 한다.

제31조 수요일 예배

수요일에 드리는 예배로서 기도회라고도 하나 기도회 역시 예배 이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성경을 깊이 공부하며, 기도를 많이 하되 개인적으로 지은 죄의 회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 총에 대한 감사와 새로운 말씀의 은혜를 간구할 것이요, 가정, 교회, 사회는 물론, 국가와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한다.

제32조 구역예배 / 그룹 예배

구역예배는 주중 한 날을 정하여 같은 지역안에 살고있는 성도 들이 한 장소(가정)에 모여서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을 서로 나누면서 피차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함 으로써 신앙생활의 강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모이는 예배이다. 이 예배를 통하여 같은 지역 내의 교인들이 교제를 두텁게 함과 교회의 일에 힘을 모아 협조하도록 장려함으로 교회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개인의 신앙성장과 공동체의 교제를 강화함에 유 익이 되는 예배이다.

제33조 가정예배

가정은 성도들이 경건의 연습과 사랑의 실천에 가장 좋은 교육의 장이니 가족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며 성경을 상고하며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교회 같은 가정을 세워감에 무한한 유익이 있으니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예배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34조 새벽 기도회

- 1. 새벽기도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셨고, 한국교 회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니 이를 소중하게 여겨 권장함으로 성도들이 하루를 기도로서 시작하여 경건하고 성실한 삶을 유지해 나감에 유익하다.
- 2.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은혜의 수단 인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법인즉 성도들이 새벽에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정, 교회, 직장,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면 신앙의 성장과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된다.

제35조 개인 기도생활

성도는 모름지기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인 기도생활에 힘써야 한다.

제8장 주일학교 예배

제36조 주일학교의 의의

주일학교는 기도와 찬송, 성경과 교회의 교리 등을 가르치고 또 전도를 실천하게 함으로써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 을 수행하고, 개체교회 설립목적을 성취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제37조 주일학교 편성

주일학교는 연령에 따라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장년부 등으로 편성조직하고 각급 주일학교에는 전문적인 지도자를 세워 적절한 예배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38조 주일학교 예배

담임목사는 주일학교의 교장으로서 일정한 시간에 개회하여 정 상적인 교육과 예배가 시행되도록 지도 육성하여 그들로 하여 금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는 경건하게 하며 성경을 배우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교육할 책임이 있다.

제39조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의 교사는 마땅히 자기의 할 일을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며,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예비할 것이요, 담임한 학생 중 아직 믿지 않는 학생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할 것이요, 특별히 병든 때와 무슨 사고가 있을 때에 개별적으로 심방하고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시간을 엄수하여 학생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9장 교회력

제40조 교회력의 목적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라 명하심으로 여호와의 백성됨을 기억하게 하신 것처럼 주님의 몸인 교회는 예배가 형식이나 타성에 젖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성경적 근거가 확실한 절기에 의미있는 예배를 계획하고 진행하여 성도들의 경건생활과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제41조 절기

1. 대림절/대강절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념하며, 재림을 고대하면서 주님을 사 모하며 준비하고 기다리는 신앙을 고취함에 유익한 절기이다.

2. 성탄절

메시아 예언이 성취된 날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심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절기이다.

3. 주현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나타내 보여주신 은 총을 인식하고 감사하면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강조하는 절기이다.

4. 사순절

성도들이 고난의 길을 택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참회와 절제를 실천하며 주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

고 기념하는 절기이다.

5. 고난주간

종려주일로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은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구속사를 선포하고 고난을 생각하면서 경건한 삶의 훈련을 쌓고 주님의 수난을 묵상하는 절기이다.

6. 부활절

사망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권능과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감사하고 부활의 신앙과 소망을 확인하고 다짐하 는 절기이다.

7. 성령강림절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에 의하여 살아 가는 성도들의 생동감 있고 충만한 삶을 강조하고 다짐하는 절기이다. 단, 이외에도 주님의 생애를 기리는 날들이 있으니 주님 세례주일, 변모주일, 승천주일, 삼위일체주일 등이 있다.

제10장 명절과 국경일

제42조 교회와 명절 및 국경일

지상교회는 신앙에 있어서 통일성을 가지고 있으나 교회들이 세워진 문화권은 각기 다르므로 이 나라와 민족이 오랫동안 지켜온 명절과 국경일 및 기념일 등은 교회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예배를 계획하고, 설교를 준비하여 은혜가 되도록 해야 한다. 복음과 성경진리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유한 문화적 요소를 성경말씀으로 재해석하고 적용하는

차원에서 교회가 활용함이 타당하다.

제43조 명절

송구영신, 신년, 구정, 추석 등 명절에 성도들은 가정에서 가족들이 감사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도의 기회로 삼도록 한다.

제44조 국경일

삼일절기념주일, 해방기념주일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 심을 고백하고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가르칠 기회 로 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여야 한다.

제45조 기념주일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스승의 주일 등은 전통적으로 교회가 지켜오는 기념일이니 구별하여 지키며 특별한 교육과 훈육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제2부 성례식

제1장 교회와 성례

제46조 성례식의 의의

성례에는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예전으로서 교회에 유형적이요 감각적으로 제시되고 인쳐져서 적용되는 신령한 예식으로 존중되어

야 한다.

2.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는 교회역사의 시초부터 은혜의 방편으로 준비되어 있었던바 분리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제2장 세례예식

제47조 세례

- 1. 세례는 죄인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의 표시로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죄의 씻음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과 중생을 인치는 것이다.
- 2. 세례는 개별적인 동시에 교회공동체적 행위이다. 세례를 받는 사람은 물론 증인으로 참여하는 교인들에게도 동일한 은 혜의 방편이므로 정기적으로 공중예배에서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 3.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자기 자신은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을 선포하 는 것이다.
- 4. 하나님은 세례를 통해서 사랑과 용서와 구속을 단번에 선포 하시고, 세례받는 그를 자녀로 받아 주시는 동시에 그리스도 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로 삼아 주신다. 그러므로 세례는 일 생에 단 한번만 받을 것이다.

제3장 유아세례

제48조 유아세례

1. 구약시대에 어린아이에게 할례를 베풀어서 은총의 언약아래

있게 했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는 예수께서 세우신 새언약에 들어가는 표인 세례를 어린아이에게도 베푸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 2. 만2세 이하인 어린아이는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으니 그 부모(혹 부모 중 한사람)된 자는 자기 자녀가 세례받기를 원하면 그 뜻을 교회 앞에 밝힌다.
- 3. 교회는 그 부모를 당회 앞에 불러서 어린아이를 성실하게 믿음으로 양육할 것과 성경의 도리를 가정에서 가르칠 것을 권면하고 다짐하는 문답을 한다.

제49조 보호자(=부모)의 서약

세례 베풀기로 정한 날에 유아세례에 관한 교훈과 목적에 대하여 설명한 후에 부모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에 "예"라고 대답함으로 서약하게 한다.

- 문1. 그대는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의 필요를 인식합니까? "예"
- 문2. 그대는 이 아이도 주 예수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줄로 믿고,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허락을 앙모 하겠습니까? "예"
- 문3. 그대는 이 아이를 지금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모범을 이아이에게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겠습니까? "예"
- 문4. 우리 거룩한 교회의 교리와 생활을 이 아이에게 가르치며 이 아이를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써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제50조 세례

서약한 후에 목사는 세례받는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아이의 머리에 물을 뿌리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택정하신 000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하며 세 례를 베푼다.

제51조 공포와 권면, 그리고 기도

- 1. 집례목사는 "000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0노회,00 교회의 유아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름으로 공포 하노라 아멘"하고 선언한다.
- 2. 공포한 후에 세례받은 아이의 부모에게 서약한 바를 따라 성 실하게 믿음으로 양육하라는 내용의 권면을 한 후 기도로써 유아세례식을 마친다.

제4장 성년세례

제52조 성년세례의 정의

성년세례는 유아세례를 받지 않은 성인이 6개월 이상 교회의 공중예배에 근실하게 출석하는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 고 마음에 예수를 영접한 증거가 확실한 사람이 세례를 받고자 원할 때에 당회가 문답하여 구원받은 사실이 분명할 때에 베푸 는 성례이다.

제53조 교육과 시취

당회는 세례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거기에 수반되는 의무와 권리에 관한 교육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과

세례받을 준비가 되었음이 확인되면 적절한 시취와 당회의 결의를 거쳐서 공중예배 중에 세례를 베풀 준비를 한다.

제54조 세례서약

목사는 세례 베풀기로 정한 날을 교회 앞에 광고하여 준비하게 하고, 그 날에 목사는 회중들에게 세례의 의미와 세례식에 대하 여 교훈하고, 시취에 합격한 자를 호명하여 회중 앞에 세운 후 에 다음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하여 서약하게 한다.

- 문1. 그대(여러분)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 밖에는 소망이 없는 자인 줄로 믿습니까? "예"
- 문2. 그대(여러분)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기쁨으로 영접하며 주님만 의지하기로 서약 합니까? "예"
- 문3. 그대(여러분)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말씀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며 서약합니까? "예"
- 문4. 그대(여러분)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며, 세례교인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제55조 세례

목사는 서약한 교인의 머리에 물을 뿌리면서 "내가 000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이라 하여

세례를 베푼다.

제56조 공포와 권면 그리고 기도

세례를 베푼 후에, 집례목사는 세례받은 자들의 이름을 호명하고 "000 씨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0노회 00교회의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하고 선언한 후에 세례받은 자들에게 간단히 권면하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함으로 세례식을 마친다.

제5장 입교예식과 학습예식

제57조 입교예식의 의의

유아세례를 받은 자녀가 만14세 이상이 되었을 때, 당회가 시행하는 입교문답에 합격하면, 공회 앞에서 입교서약을 함으로써 교회의 회원으로 입교하는 예식이다.

제58조 입교예사

집례목사가 입교할 자와 회중에게 교훈하기를 "유아세례를 받음으로 어릴 때부터 유아세례 교인이 되고, 언약의 허락에 대한후사(後嗣)가 되기 위하여 부모가 엄중한 서약을 하셨습니다. 그 서약으로 하나님께 바친 자중에 그대(여러분)가 지금 믿음의 권속 중에서 자기유업에 관한 의무와 권리를 부담할 자 되기를 자원하셨습니다. 이에 당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찬에서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을 문답하여 통과하였으므로 스스로의 신앙고백을 통하여 이 교회의 회원으로 받고자 합니다"

라고 선언한다.

제59조 입교서약

집례목사는 회중 앞에 기립한 입교 예정자들에게 다음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서약하게 한다.

- 문1. 그대(여러분)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을 것 밖에는 소망이 없는 자인 줄로 믿습니까? "예"
- 문2. 그대(여러분)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만 의지하기로 서약 합니까? "예"
- 문3. 그대(여러분)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말씀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주님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며 서약합니까? "예"
- 문4. 그대(여러분)는 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 에 덕을 세우며, 세례교인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제60조 공포와 권면 그리고 기도

서약한 후에, 집례목사는 그 이름을 호명하고 "000 씨는 대한 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0노회, 00 교회의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하고 선언한 후에 입교자들에게 간단히 권면하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함으로 입교예식을 마친다.

제61조 학습예식

- 1. 학습은 신앙의 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적인 신앙 안에 서 성장하며, 사이비교리나 이단사설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교육하여 세례 받을 준비를 시키는 과정이다.
- 2. 학습예식은 만14세 이상인 교인이 교회출석 6개월 이상이 되고 신앙이 독실하여 당회의 시취를 받고 공동예배 시간에 회중 앞에서 서약함으로 학습교인이 되는 예식이다.
- 3. 집례목사는 다음 서약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서약하게 한다.
 - 문1.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홀로 다스리시는 것을 믿습니까? "예"
 - 문2.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예"
 - 문3.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대로 지키도록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 문4. 여러분은 주일을 거룩히 지키며 힘써 기도하기로 서약 하십니까? "예"
- 4. 서약한 후에 목사는 "000 씨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0노회, 00교회의 학습교인이 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하고 선언한 후에 학습교인 된 자를 위하여 권면하고 축복함으로 학습예식을 마친다.

제6장 성찬예식

제62조 성찬예식의 의의

성찬예식은 예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전이니 주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실 때,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는 나의 몸이니라" 하시고, 또한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고 말씀하시고, 이를 기념하여 행하라고 분부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예식이다.

제63조 성찬예식의 회수

본래 성찬예식은 매 주일마다 행함이 마땅하나 교회의 형편에 따르되 일 년에 4회 이상 거행하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고 전하여야 한다.

제64조 성찬예식의 준비

- 1. 성찬예식을 시행하고자 하면 한 주간 전에 교회 앞에 공식 광고하여 성도들이 준비할 수 있게 하고, 형편에 따라 그 주 간에 기도회로 모여서 성찬에 대하여 가르치고 교훈하며 묵 상하여 합당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 켜야 한다.
- 2. 성찬예식을 집례하는 목사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 집례 하게 된 자이니 막중한 사명을 깨닫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함이 마땅하다.
- 3. 성찬예식에 참여할 성도들은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준비하되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회개한 후에 하여야 한다.

제65조 성찬예식의 시행

성찬예식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지막 만찬과(마26:

- 23~29,눅22:15~20),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기록한(고전11:23~29) 내용을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1. 집례목사는 성경강론을 통하여 성찬의 의미를 밝히 알림으로 교인들이 회개하여 깨끗한 심령으로 참여케 하되, 성령을 거스르고 교리를 모르는 자와 아직 입교(세례)하지 않은 교인과, 죄를 회개치 않는 교인은 성찬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해야 한다.
- 2. 집례목사는 말씀을 선포한 후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예식이라"고 선언하고 복음서나 고린도전서(11:17~35)에 기록된 예식에 관한 말씀을 봉독하고 설명함으로 성찬의실제 유익함에 대하여 말하여야 한다.

제66조 성찬예식 예사

집례목사는 "이 예식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성찬예식이니 자기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장려하고, 기쁨으로 책임을 감당하게 하며, 사랑과열심이 저희를 감화하며 믿음과 거룩한 주의를 일으키게 하며, 양심의 평안함과 소망을 확정하게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예식이니 이를 행하려 합니다"라는 말로서 성찬예식의 시작을 알린다.

제67조 성찬예식의 절차

- 1. 위원은 준비된 성찬상을 단정히 덮어 놓고, 분병 및 분잔을 담당할 위원 장로들은 정한 자리에 앉아 기다린다.
- 2. 떡과 잔의 성별

집례목사는 감사의 기도로써 떡과 잔을 성별한다.

1) 분병(=떡을 나눔)

집례목사는 회중 앞에서 떡그릇을 들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나도 여러 성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는 바이니 이 떡이 곧 우리 주님의 상하신 몸을 기념하는 줄로 알고 받으시기 바랍니다"하고 그 떡그릇을 분병위원에게 주고 나서 떡 한 조각을 들고 기도함으로써 떡을 성별하고 나누게 한다.

2) 분잔(=잔을 나눔)

집례목사는 잔 그릇을 들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것을 행하여 마실 때 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나도 여러 성도들에게 이 잔을 나누어 드리는 바이니이 잔이 곧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잔인 줄로 알고 받으시기 바랍니다"하고 그 잔그릇을 분잔위원에게 주고 나서 잔 하나를 들고 기도함으로써 잔을 성별하고 나누게 한다.

3) 확인

집례목사는 분병위원이 떡을 나눈 직후에 "입교인으로서 떡을 들지 않으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확인하고, 잔을 나눈 직후에는 "잔을 들지 않으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확인하여 빠짐이 없게 해야 한다.

3. 분병과 분잔의 순서

떡과 잔을 나누는 순서는 목사가 먼저 받은 후에 모든 세례 교인들이 받고, 그 다음에 목사가 장로들에게 나눔이 좋다. 단,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성찬예식에서 사용하고 남은 떡과 포도주는 정한 곳에 묻거나 불에 태움이 좋다.

제68조 성찬예식의 마침

- 1. 집례목사는 "믿음의 본분을 망각하고, 그리스도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거룩한 성찬예식을 경홀히 여기는 가운데 생활하 게 됨으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과 불화하는 자 가 됩니다. 그러므로 후일에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 껏 준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라고 권면한다.
- 2. 모든 회중은 영광과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함께 드리고 집례 목사의 축도로 마친다.

제3부 임직식

제69조 임직식의 개요

교회를 섬기는 항존직원을 안수하여 임직하게 하는 예식을 임직식 혹은 장립식이라 한다. 목사는 노회에서 임직하고, 준목은 노회의 인허를 받는다. 그리고 장로, 집사 및 권사의 임직예식은 개체교회의 당회가 주관한다. 장로는 노회가 시행하는 장로고시에 합격하여야 하고, 집사는 당회의 시취를 받아야 한다. 개체교회의 임직예식은 노회의 허락을 받아서 담임목사가 인도하되 그 순서와 내용은 교단표준 예식서에 준하여야 한다.

제1장 집사 및 권사 임직식

제70조 집사 및 권사의 임직

집사는 사도시대부터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도록 선택하여 세우는 은혜롭고 귀한 직분이니 안수하여 세움이 마땅하다. 권사는 한국교회 초기부터 교역자를 도와 심방과 구제하는 일을 위하여 세운 직분이니 권사를 세워 섬기게 함은 교회의 유익이다. 권사는 항존직원에 준함으로 개체교회의 정관에 따라서 안수할수 있고, 취임 혹은 추대할 수 있다.

제71조 임직서약

임직받는 자와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서약하게 한다.

1. 임직자 서약

집례목사는 회중 앞에 기립한 임직자들에게 다음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게 한다.

- 문1.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예"
- 문2.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 리문답은 신·구약 성경에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따르겠습니까? "예"
- 문3. 본 교단의 헌법과 이 교회의 정관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겠습니까? "예"
- 문4. 본 교회의 집사(권사)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 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 문5.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전심전력하기

로 약속합니까? "예"

2. 교인서약

본 교회교인들을 기립하게 한 후에 다음과 같은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게 한다. "00교회의 회원들이여, 여러분이 선출하여 세운 000씨를 본 교회의 집사(권사)로 받고, 성경과 교단헌법에 가르친 바를 좇아서 주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그의 사역에 순종하며 협력하기로 약속합니까?" "예"

제72조 안수기도 및 공포

- 1. 강단 중앙에 혹은 회중들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무릎을 꿇게 하고 안수위원들이 안수하고 담임목사가 기도한다.
- 안수받은 이와 안수위원들이 서로 악수하며 "주님의 교회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인사말을 나눔으로 악수례를 갖춘다.
- 3. 담임목사는 안수 받은 자를 회중 앞에 호명하여 세우고 다음 과 같이 공포한다.
 - "나는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본 교회의 당회장으로서 000 씨가 대한 예수교장로회 개혁교 단 00노회, 00교회의 집사(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하고 선언한다.
- 4. 위원으로 하여금 새로 임직 받은 자와 본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과 축사를 하게 한 다음에 축도로 폐회한다.

제2장 장로 임직식

제73조 장로 임직의 의의

장로는 목사를 협력하여 교회를 섬기되 양 무리의 본이 되는 자로서 교인들의 대표이니 이를 귀히 여겨 안수하여 세움으로 교회에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74조 임직식의 주관

개체교회가 장로를 세우려하면 당회가 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그 교회의 당회가 주관하고 당회장(담임목사)의 인도로 임직식 을 거행한다,

제75조 임직서약

임직받는 장로와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예"라고 대답핚으로 서약하게 한다.

1. 임직자 서약

- 문1. 신·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하고 유일의 법칙임을 믿습니까? "예"
- 문2. 본 교단의 헌법과 이 교회의 정관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 하십니까? "예"
- 문3. 이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本職)에 관한 임무를 성실히 힘써 행하기로 약속하십니까? "예"
- 문4.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전력하기로 약속하십니까? "예"

2. 교인서약

본 교회교인들을 기립하게 한 후에 다음과 같은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게 한다.

"00교회 교인들이여, 000씨를 본 교회의 장로로 받고, 성경과 교회헌법에 가르친 바를 따라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굳게 약속합니까?" "예"

제76조 안수기도 및 공포

- 1. 강단 중앙에 혹은 회중들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무릎을 꿇게 하고 안수위원들이 안수하고 담임목사가 기도한다.
- 2. 안수받은 이와 안수위원들이 각각 악수하며 "장로가 되었으니 주님의 교회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인사말을 나눔으로 악수례를 갖춘다.
- 3. 담임목사는 안수 받은 자를 회중 앞에 호명하여 세우고 다음 과 같이 공포한다.
 - "나는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본 교회의 당회장으로서 000씨가 대한 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0노회, 00교회의 장로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하고 선언 한다.
- 4. 위원으로 하여금 새로 임직 받은 장로와 본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과 축사를 하게 한 다음에 축도로 폐회한다.

제3장 준목 인허식

제77조 인허식의 의의

노회의 지도를 받아 일정한 신학교육을 받고 목사로 임직 받기

위하여 준비한 목사후보생이 교단의 고시에 합격한 자를 노회 소속 준목으로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할 자격을 인정하는 예 식이니 본 교단의 표준예식서에 따라 거행한다.

제78조 서약과 공포

1. 인허받는 자의 서약

노회장은 준목고시 합격자를 호명하여 회중 앞에 기립하게 하고 다음 서약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서약하게 한다.

- 문1.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예"
- 문2.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 요리문답은 신·구약 성경에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 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정당하게 사용할 것을 약속합니까? "예"
- 문3. 본 교단의 헌법을 정당한 것으로 알고 그대로 따르겠습니까? "예"
- 문4 성경말씀과 신학을 더욱 연구하여 바른 말씀의 사역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까? "예"

2. 노회장의 공포

노회장이 서약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주신 권세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0노회가 여러분을 준목으로 인허하였음을 공포하노라 아멘"하고 선언한다.

3. 권면과 폐회

공포한 후에 노회장은 준목 인허증을 교부하고 위원으로 하

여금 인허받은 준목에게 권면하게하고 축도로 폐회한다.

제4장 목사 임직식

제79조 목사 임직의 개요

목사는 주께서 친히 세우시는 말씀의 사역자이니 목사의 임직 "정치 제5장 제26조 목사의 자격"을 구비한 자가 노회가 시행하는 목사고시에 합격하고, 개체교회, 기관 혹은 노회의 청빙을 받은 준목에게 안수하여 목사로 임직하는 예식인즉 본 교단의 표준예식서에 준하여 질서있게 거행하여야 한다.

제80조 임직서약

노회장은 임직받을 준목을 호명하여 회중 앞에 기립하게 하고 다음 서약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서약하게 한다.

- 문1.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예"
- 문2.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에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 고 성실한 마음으로 따르겠습니까? "예"
- 문3. 본 교단의 헌법을 정당한 것으로 승인하여 지키기로 약속 합니까? "예"
- 문4. 목사의 성직을 구한 것이 받은 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위하여 몸 바쳐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자 하는 본심에서 나온 것임을 자인합니까? "예"
- 문5. 신자요 겸하여 목사가 되겠으니 자기의 본분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와 맡은바 교회의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실행하여, 모든 사람 앞에 경건한 모범을 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서약합니까? "예"

- 문6. 어떠한 핍박이나 반대를 받을지라도 인내하며 충심으로 복음을 파수하고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힘써 도모하며 충 성스럽게 사역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 문7. 앞으로 주 안에서 같은 사역자 된 형제들과 일심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일생을 바치기로 서약합니 까? "예"

제81조 안수기도와 악수례

서약자로 하여금 노회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안수위원들이 안수하며 노회장이 기도한 후에 "성역에 동역자가 되었으니 악수로 치하하노라"고 말하며 악수하면 안수위원들도 차례대로 악수한다(갈2:9, 행1:25). 단, 장로는 안수위원이 될 수 없으나당사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안수할 수 있다.

제82조 공포와 권면

노회장이 "나는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0노회의 권위로 000씨가 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하고 선언한 후 위원으로 하여금 권면하고 축사하게 한다.

제83조 청빙서 교부(交付)

권면 후에 노회장은 임직자에게 청빙서를 교부하고 임직받은 목 사의 축도로 폐회한다. 단, 임직받은 목사가 여러 사람일 경우 에는 연장자가 축도한다.

제5장 목사 위임식

제84조 위임의 의의

개체교회의 청빙을 받은 목사가 그 청빙을 수락하고 노회의 허락을 받아 개체교회의 담임목사로 취임하는 일이니 이는 친히주께서 그의 몸인 교회의 치리를 그에게 위임함이요, 청빙한 교회가 그 목사에게 대표권을 위임하는 공식적인 선언이니 노회는 위임국을 설치하여 청빙한 교회의 예배당에서 본 교단의 표준예식에 준하여 거행한다.

제85조 목사와 교인의 서약

1. 위임받는 목사의 서약

집례하는 위임국장은 목사를 교회 앞에 기립하게 한 후에 다음과 같은 서약문에 "예"라고 대답함으로 서약하게 한다.

- 문1. 귀하는 00교회에서 위임목사로 청빙한 것을 수락하여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 문2. 귀하가 이 교회를 위임받게 된 것은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교회에 유익을 주고자 함이니, 진심으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합니까? "예"
- 문3. 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이 교회의 교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성경말씀으로 바르게 교육하고,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며, 교회의 질적·양적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진력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2. 위임하는 교회의 교인서약

위임국장은 본 교회의 교인들을 자리에서 기립하게 한 후에

- 위임하는 목사 앞에서 다음 서약문에 "예" 하고 대답함으로 서약하게 한다.
- 문1. 00교회 교우여러분, 000씨를 본 교회 위임목사로 받 겠습니까? "예"
- 문2.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말씀을 받으며, 그가 인도하는 당회의 치리에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 문3. 목사가 수고할 때에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 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진력할 때에 성심 으로 도와 줄 것을 약속합니까? "예"
- 문4. 여러분은 OOO씨가 본 교회 담임목사로 재직(在職)중에 한 결 같이 청빙서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목사에게 안위가 되는 모든 요긴한 일을 도와주기로 서약합니까? "예"

제86조 공포와 권면

- 1. 위임국장은 공포하기를 "나는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000노회의 권위로 000목사가 00교회의 위임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하고 선언한다.
- 2. 위원으로 하여금 위임받은 목사와 교인들에게 정중히 권면 과 축사를 하게 한 다음 축도로 폐회한다.

제6장 추대 및 은퇴식

제87조 추대식

목사 혹은 장로가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사역하고 퇴임하려 할 때, 그 교회의 원로목사, 원로장로로 예우하기로 공동의회에서 결의된 경우와 한 노회의 회원으로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 혹은 장로를 그 노회의 공로목사, 공로장로로 추대하기로 노회에서 결의된 경우에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공덕을 기리는 예식이니 그 예식은 교단의 표준예식서를 따라 거행하여야 한다.

제88조 은퇴식

정년이 되었거나 연로함으로 인하여 계속 시무할 수 없는 목사나 장로의 퇴임을 위로하며 격려하고 사역하는 동안의 공덕을 기리고 은퇴 이후의 삶을 축복하는 예식이니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회가 주관하되 본 교단의 표준예식서에 준하여 질서있게 거행하여야 한다.

제4부 가정의례

제89조 가정의례의 범위

일반사회에서 가정의례라 함은 관혼상제(冠婚喪祭)를 이르는 말이나 성경이 가르치는 가정의례는 결혼식과 장례식이 있으니 이는 전도의 기회로 삼거나 위로하고 축복하기에 적절한 의식 이다. 성도는 모든 것을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의 규례를 따름이 마땅하니 본 교단의 표준예식서에 준하여 모든 의식을 거행하 여야 한다.

제1장 결혼식(結婚式)

제90조 성경적 결혼제도

결혼제도는 창조시대에 하나님께서 1남 1녀를 만드시고 제정하신 제도이며(창2:19~25), 주님께서도 친히 결혼집에 가셔서 축복하셨다(요2:1~11). 그러므로 성도는 불신자와의 결혼을 가급적 피해야 하며, 또한 세상법이나 도덕법에 어긋나는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린도후서6:14~16; 벧전2:13).

제91조 부모와 자녀

부모는 자녀를 강제로 결혼시키지 말 것이며, 또한 그들의 결혼을 상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지도 말아야 한다. 자녀들은 부모의 허락을 받아 결혼함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고 온 가족을 화목하게 하는 복된 결혼을 해야 한다.

제92조 결혼과 목사

- 1. 결혼은 신중히 해야 하므로 목사는 결혼 전에 예비상담과 교육을 통하여 그들을 바르게 지도하여야 한다. 결혼식은 여러 증인들 앞에서 행해야 하므로 미리 광고하고, 경건한 의식이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
- 2. 목사는 성경의 가르침과 신앙양심에 따라서 어떤 결혼식 주 레의 요청은 거절할 수 있으며, 결혼 당사자와 부모의 동의 가 있을 때만 주레하여야 한다.
- 3. 주례한 목사에게 신랑과 신부가 혼인증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거절할 수 없다.

제2장 장례식(葬禮式)

제93조 장례식의 내용

장례식은 임종예배로 시작하여 입관예배, 발인예배, 하관예배 등을 포함하는 모든 장례절차에 따르는 의식과 예배를 이름이다. 그러므로 집례목사는 장례식을 통하여 유족들을 위로하되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고, 장례식에 참예한 교인들이 교훈을 얻고, 불신 조문객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선용해야 한다.

제94조 임종예배

- 임종예배는 죽음에 이른 사람에게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고, 가족에게는 사별에 따르는 마음의 준비와 천국에서다시 만날 신앙적 결단과 용기를 주는 말씀선포와 찬송을 부른다.
- 2. 사람이 운명직전에 있는 상태이므로 집례자는 가족들의 매우 안타깝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영생의 소망을 주는 찬송과 말씀으로 예배를 인도해야 한다.

제95조 입관예배

- 입관예배 시에는 부활의 영화로운 몸을 입혀 주실 온전한 구원을 선포하여, 영원한 본향집을 바라보게 하고, 유가족들이이 땅에서 믿음생활을 잘 하도록 돕는 격려와 교훈을 주어야한다.
- 2. 이 땅에서 고인의 얼굴을 마지막 보는 순간이므로 집례자는 유족들의 애통해 하는 마음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과 확신을 주어야 한다.

제96조 발인예배

- 발인예배는 눈물 많은 이 세상을 떠나 지극히 영광스러운 나라로 간 고인의 유해를 환송하고, 유족들과 교인들이 나그네길을 가는 동안 복된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격려한다.
- 2. 고인이 정들었던 집을 떠나는 것이므로 집례자는 고인을 떠나보내는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고인은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서 편안한 안식 누림을 영생복락의 말씀으로 확신시켜 주어야 한다.

제97조 하관예배

- 하관예배는 고인의 육체는 육의 고향인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고인의 영혼은 본향인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지극한 행복과 영광의 삶을 누리고 있음을 확신하도록 한다.
- 2. 고인의 시신을 땅에 안장하는 시간이므로 집례자는 육체는 매장되어 썩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은 고인과 서로 상봉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98조 화장장예배

- 1. 화장장예배는 유족들과 교인들에게 육신적인 삶의 허망함을 일깨우고,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속사람을 단장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데 헌신하도록 이끌 어 주어야 한다.
- 고인의 시신을 화장하는 것이므로 집례자는 유족들의 애통하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고인은 이미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본향집에 들어간 사실을 확신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99조 납골당 봉안예배

- 1. 납골당 봉안예배는 고인의 유골을 안치하는 예배이니 하나 님을 향한 고인의 신앙을 기리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 을 살다가 이별이 없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 영원히 함께 살 소망을 갖게 한다.
- 2. 집례자는 유족들이 고인이 남겨준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 믿음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해야한다.

제100조 위로예배

- 위로예배는 비록 고인은 떠났지만 항상 함께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유족들과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임하도 록 기원하며 앞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격려해 주어야 한 다.
- 2. 유족들이 지치고 가족을 잃은 상실감에 젖어 있으므로 집례 자는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유족들의 수고와 지친 심신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한다.

제101조 권장 및 금기사항

- 1. 죽은 자의 명복(冥福)을 빈다거나, 세속을 따라 시신이나 영 정 앞에 배례하는 일을 금해야 한다.
- 2. 발인하기까지 장례식장의 영정 앞이나, 고인의 무덤에 촛불을 켜고, 향을 사르는 일과 배례(拜禮)하는 일은 금한다.

- 3. 유가족들의 복식이나 상장(喪章)은 장의사의 협조와 지도를 따르되 믿음없는 자들의 풍습을 좇지는 말아야 한다.
- 4. 입관할 때에 관속에 고인의 성경과 찬송가를 넣거나 소각하지 말고 다른 유품들과 함께 잘 보관하여 고인을 추념(追念)하도록 한다.
- 5. 집례자는 유족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장의예식의 절차와 순서를 정하되 교회의 법도에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간결하고 엄숙한 예식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권징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권정(勸懲)의 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權)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으로 법도(法度)에 준하여 시행하는 것이니 각 치리회가 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제 규정 등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를 권고하며 치리하는 것이다.

제2조 권장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權柄))과 존영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여 덕을 세우고 범죄자의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1.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지혜롭게,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다.
- 2. 범행의 관계와 정형의 경중(輕重))을 상고하되 사건은 동일 하나 정형이 다를 때에는 처리를 달리 한다.

제3조 권징효력의 보호

- 1. 중대한 범죄사건이라도 판결하기 극난한 상황에서는 정의와 공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하여 하나님의 실증이 있기까지 유 안(留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이는 재판진행 중에 증거부족으로 중도에 폐지할 때 일반권

징의 효력이 손실됨을 막기 위함이다.

제4조 권징사유의 죄과(罪過)

교인과 직원, 각 치리회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죄과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합당히 책벌한다.

- 1.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 2. 총회 헌법 또는 제 규정(이하 헌법 또는 규정이라 한다)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
- 3. 예배를 방해한 행위.
- 4.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 5.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 6.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 7. 파렴치한 행위로 국가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
- 8. 치리회의 판결에 순응하지 않는 행위.
- 9. 타인으로 범죄하게 한 행위.
- 10. 치리회 석상, 교회의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 석상에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을 손괴한 행위.
- 11. 사건에 관여된 자가 재판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 12. 각 치리회 및 교단산하 단체 및 기관과 관련된 문서의 위· 변조, 개인정보와 문서의 불법 획득 및 유출한 행위, 각종 증명서의 위·변조 행위 또는 이를 행사한 행위.
- 13. 교단 산하 공공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부정과 공금유용, 횡령, 배임 등의 재정 비리행위.
- 14. 단체 및 기관의 직원이나 이사가 직무태만이나 고의적 미필 로 상당한 손실을 가한 행위.

제5조 재판의 원칙

죄과를 범한 자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 행하여야 한다. 이는 사심에 끌리지 않고 공정성, 공익성을 확립하기 위함이며 판결에 대한 권위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단,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이나 제도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1. 모든 교인과 직원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 2. 재판은 3심제를 택하며, 1심은 당회에서, 2심은 노회에서, 제3심은 총회 상설재판국에서 관할 한다.
- 3. 재판은 성경과 헌법, 헌법시행세칙에 의해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 4. 재판은 고소, 고발장이 재판국에 접수된 후 4개월 이내에 종결해야 한다.

제6조 책벌의 종류와 내용

- 1. 판결에 의한 책벌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견책: 죄과를 꾸짖고 회개하게 한다.
 - 2) 근신: 단기 2개월 장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죄과에 대한 반성문을 1회 이상 관할 치리 회장에게 제출하고 언행일체를 삼가도록 한다.
 - 3) 수찬정지: 단기 6개월 장기 1년 이내의 기간 수찬을 정지 한다.
 - 4) 시무정지: 단기 3개월 장기 1년 이내의 기간 치리권(행정권, 치리권)을 정지한다.

- 5) 시무해임: 단기 3개월 장기 1년 이내의 기간 설교권을 포함 교회의 모든 시무를 정지 한다.
- 6) 정직: 단기 6개월 장기 2년 이내의 기간 신분은 보유하나 그 시무가 일시 정지되며 직무와 수찬을 정지한다.
- 7) 상회총대파송정지
 - (1) 교회직원과 치리회는 1~3년 이내.
 - (2) 노회와 총회직원은 2~3년 이내.
 - (3) 총회산하 단체 및 기관의 이사는 3~5년 이내로 한다.
- 8) 가중처벌: 권징의 사유가 제4조를 준용하여 5가지 이상이 거나 누범, 상습범, 파렴치한 죄과, 부정과 비리가 상당히 불량한 피고인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가중처벌 할 수 있다.
- 9) 면직: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 10) 출교: 교인명부에서 제명하여 교회출석을 금지시킨다.
- 2. 교인에게 과하는 벌은 다음과 같다.
 - 1) 견책 2) 근신 3) 수찬정지 4) 출교.
- 3. 직원에게 과하는 벌은 다음과 같다.
 - 1) 견책 2) 근신 3) 수찬정지 4) 시무정지 5) 시무해임
 - 6) 정직 7) 면직 8) 상회총대파송정지.
 - (1) 교회직원에게는 출교를 병과할 수 있다.
 - (2) 교단 산하단체와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상당한 비리나 부정행위자는 출교. 단, 직원에게는 출교와 면직, 상회총대 파송정지의 책벌을 병과할 수 있다.
- 4. 치리회에 과하는 벌은 상회의 총대파송을 정지한다.

제2장 재판국

1절 재판에 관한 통칙

제7조 재판국의 설치 및 관할

- 1. 총회 재판국은 총회에, 노회 재판국은 노회에, 당회 재판국 은 당회에 각각 설치한다.
- 2.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 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노회 재판국에 속하다.
- 3. 일반교인 및 개체교회의 직원에 대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 은 당회 재판국에 속한다.

제8조 재판국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 1. 재판국원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당 사건의 심리, 재판에서 제척된다.
 - 1) 국원이 당사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 사건당사 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국원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 더 경우.
 - 3) 국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이 된 경우.
 - 4) 국원이 고소, 고발인 또는 피고소, 피고발인인 경우.
- 2. 당사자인 기소위원장과 피고인은 다음의 경우에 국원의 기 피를 신청할 수 있다.
 - 1) 전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 2) 국원이 이해관계로 인하여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고소, 고발인은 기소위원장에게 국원의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요청을 받고도 즉시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소, 고발인이 직접 국원의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4. 재판국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때에는 기각결정을 하고 재판을 진행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엔 당해 국원을 당사건의 심리·판결에서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재판해야 한다.

제9조 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

제척 또는 기피하는 이유를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 1.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재판국 또는 국원은 이를 각하 (却下)한다.
- 2. 제척 또는 기피를 당한 국원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상당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 3. 각하결정 또는 제척이나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 4. 기피신청의 기각결정을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차상급 치리회(=재판국)에 불복 신 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5. 불복 신청서를 받은 치리회는 불복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인용여부를 결정하여 확정된 결정서를 신청인과 당해 재판국에 톳보하여야 한다.

6. 국원이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 스로 당해 사건의 심리 · 판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 재판국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제2절 당회 재판국

제12조 당회 재판국의 구성과 재판

- 당회는 재판건이 있을 때에 치리회를 재판회로 변경하여 재 판할 수 있다. 다만, 신중히 법대로 질서있게 처리할 것을 회 중에 언명할 것이요, 재판회가 끝나면 다시 치리회를 행정회 로 환원 한다고 공포하고 다른 행정 사안을 처리한다.
- 2. 당회에서 재판국을 설치할 경우에는 2인 내지 5인(당회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 3. 당회의 재판은 기소일로 부터 만4개월 이내에 종결해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 1. 재판국은 국장과 서기로 조직하되 국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는 시무장로 중에서 당회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 2. 국장은 재판을 진행하며 재판사무를 지휘, 감독하고 서기는 재판의 진행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하고 재판사무일체

를 관장한다.

제14조 의결방법

재판국의 회의는 재판국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심판사항

당회 재판국은 일반교인 및 장로, 집사 및 권사를 포함한 임시 직원에 대한 소송사건을 심판한다.

제16조 재판공고

당회의 재판 공고는 교회 앞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회의 화평과 건덕(乾德)을 위하여 공포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당회의 합의로 피고 혹은 재판 관계자에게만 전달할 것이다.

제17조 당회의 시벌

당회는 피고가 재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대리 변호인도 파송하지 않거나 출석하였다 할지라도 끝내 심문에 대하여 응답하기를 불응할 때는 그 폐려(廢慮)함을 회개하고 당회에 복종하게 될 때까지 시벌할 것이다.

제18조 당회 재판의 기록과 보고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권계(勸誡), 견책(譴責),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 출교이니 출교는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 는 자에게만 해당한다. 단, 해벌은 그 회개여하에 의하여

- 행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회에서 의결한다.
- 2. 서기는 재판사건의 진행전말과 판결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 하고 국장과 서기는 그 등본에 날인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1통씩 송달해야한다.

제3절 노회 재판국

제19조 노회의 재판

- 1. 노회의 재판건은 재판회로 회집하여 직접 재판하든지, 재판 국을 설치하여 위탁재판할 수 있다.
- 2. 노회가 직접 재판할 경우에는 신중히 법대로 질서있게 처리할 것을 회중에 언명해야 하고 재판회가 끝나면 다시 행정회로 환원한다고 공포하고 다른 행정사안을 처리한다.

제20조 재판국의 구성

- 1. 노회의 재판국은 본회의가 위탁하는 소송사건이 있을 때 설 치하는 특별기구이다.
- 2. 노회가 재판국을 설치할 경우, 본회 회원 중에서 7인(목사4인, 장로3인)으로 구성한다. 단, 동일한 교회의 파송 총대 중 1인에 한하여 선임할 수 있다.
- 3. 국원 중에 2인 미만의 법학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단, 적임 자가 없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21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1. 노회 재판국의 임원은 국장과 서기를 두며, 임원은 국원의 호 선으로 선임한다. 2. 임원직무규정은 제13조 2항을 준용한다.

제22조 의결방법

노회 재판국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심판사항

- 1. 노회로부터 위탁 받은 사건.
- 2. 당회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 3. 목사에 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
- 4. 교단 헌법이 정하는 행정쟁송사건.
- 5. 소속 개체교회의 당회장이 청원한 위탁재판 사건.
- 6. 당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

제24조 겸임금지

노회 재판국원 및 기소위원은 노회 수습위원 또는 수습전권위 원을 겪임할 수 없다.

제25조 판결의 효력

- 1. 노회가 개회 중에 재판한 재판국의 판결은 본회가 채택하여 야 확정된다.
- 2. 노회가 폐회한 후에 행한 재판국의 판결은, 재판국이 공포한 즉시 확정 된다.
- 3. 노회 개회 중에 위탁한 사건에 대한 재판국의 권한은 본회와 동일하여 교단헌법과 노회의 규칙을 준용하여 판결하고 본

회에 보고한 후에는 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

제26조 재판기록과 보고

- 1. 재판국 서기는 재판사건의 진행전말과 판결에 대하여 상세 히 기록하고 국장과 서기는 그 등본에 날인하여 재판 당사자 와 노회 서기에게 각 1통씩 교부해야 한다.
- 2. 재판국 서기는 본회에 재판 내용을 보고하고, 본회 서기는 본회의 회의록 및 재판회의록도 총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3. 노회 재판국의 일체비용은 노회가 부담한다.

제4절 총회 재판국

제27조 재판국의 구성

- 1. 총회 재판국은 총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9인(목사 5인, 장로 4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3분의 1을 교체한다.
- 2. 재판국원은 한 노회에서 목사 장로 각1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 3. 임기 만료한 국원은 향후 1년간 선임될 수 없다.
- 4. 총회 개회 중에 재판국의 결원이 있으면 총회가 보선하고 총 회 파회 후에 결원이 되었으면 총회 임원회가 보선한다. 단, 보선된 국원은 다음 총회개회 때까지로 한다.
- 5. 국원 중에 2인의 법학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단,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8조 의결방법

재판국의 회의는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목사가 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29조 심판사항

총회 재판국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1. 노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상고 사건 및 이의(불복) 신청사건.
- 2. 헌법이 정하는 행정쟁송 사건.
- 3. 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 4. 기타 재판국의 권한에 속한 사항.

제30조 재판국 판결의 효력

- 1. 재판국의 판결은 본회의 채택으로 확정된다. 단, 총회는 재 판국의 판결을 수용하거나 환송하거나 혹은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재판할 수 있다. 단, 특별재판국은 상설재판국의 규례를 적용한다.
- 2. 총회가 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총회파회 즉시 그 판결은 확정된다.
- 3.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 위탁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여 교단헌법과 총회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사용한다.
- 4.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가 채택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한다.

제31조 재판의 기록과 보고

1. 재판국 서기는 재판사건의 진행과 심리 판결한 내용을 상세히 조서(調書)에 기재하고 국장과 서기는 그 조서의 정확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본 날인하여 원고와 피고와 총회 서기

에게 각 1통씩 교부한다.

- 2. 재판국은 판결사건을 총회 서기에게 위임보고하든지 직접 보고할 수 있으며 총회 서기는 접수한 등본을 본회 회의록과 같이 보관한다.
- 3. 재판국의 일체 비용은 총회가 부담한다.

제3장 일반소송 절차

제32조 당사자의 능력

- 1. 당사자의 능력이라 함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으로서 원고, 피고, 참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 2. 재판에 있어서 기소권자는 각 치리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 회위원장(이하 기소위원장이라 한다) 이 되며, 기소위원회 는 피고소인에 대한 죄과를 조사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 3. 권징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은 죄과에 혐의가 있는 자로 고소, 고발당하여 기소위원회에 의하여 기소된 자이다.

제33조 선정당사자

- 1.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당사자 능력에 해당되지 않은 때에는 그들 중에서 모두를 위한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 2. 선정당사자의 자격은 서면으로 해당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재판이 계속된 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꾼 때에는 그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34조 재판비용의 예납

- 1. 고소인, 고발인, 항소인, 상고인, 이의(불복)신청인, 재심청 구인, 총회특별재심청구인, 행정쟁송인이나, 치리회는 재판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 2. 재판비용의 예납절차와 비용의 액수는 헌법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5조 변론

- 1. 당사자는 소송에 관하여 재판국에서 변론할 수 있다.
- 2.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3.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각 심급마다 변호인 선임서를 해당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변호인과 법정대리인 등

- 1. 변호인과 법정대리인은 법률 및 교회법에 관한 식견이 있는 본 교단의 목사, 장로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2.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실비의 여비 및 숙박료 등을 지급한다. 단, 별도의 금품을 수수할 수 없다.

제37조 당사자의 소환 및 일방 불출석

- 1. 재판국장이 재판 당사자를 소환할 때에는 10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2. 재판 당사자를 소환하는 소환장에는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죄과명(피고인), 출석일시, 장소를 기재하고 재판국장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3. 기소위원장 또는 피고인이 변론 기일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또는 출석하였을지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그 제출한 기소장,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을 진술한 것 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 대하여 변론을 명할 수 있다.

제38조 판결 선고의 기간

판결의 선고는 기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당회는 60일 이내에, 노회(재판국)는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의 경우에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 재판서의 기재 사항

- 1. 재판서에는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 직분,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 2. 재판서에는 재판에 참여한 기소위원장 또는 기소위원의 성 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 3. 재판서에는 재판국 국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40조 판결의 확정

- 1. 당회, 노회의 재판 판결은 상소기관 판결문 접수 후 20일이 지나면 확정된다.
- 2. 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

제41조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 1.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 등본의 송달로 한다.
- 2.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국장이 한다. 다만 판결을 선

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다.

제42조 재판 송달의 기일

재판서의 등본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3조 판결의 정정

- 1. 재판국은 판결의 내용에 오산, 오기, 기타 오류가 명백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정결정을 할 수있다.
- 2. 전항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3. 재판국은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제44조 재판서의 등본, 초본의 청구

피고인이나 기타 소송 관계자는 비용을 납부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및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45조 재판조서의 작성

- 1. 재판국은 재판조서를 작성한다.
- 2. 재판조서에는 다음의 사항과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 하다.
 - 1) 재판을 행한 일시와 재판국.
 - 2) 재판국원, 기소위원, 피고인, 변호인의 성명,
 - 3) 기소사실의 진술.
 - 4) 증거 조사를 한 경우에는 증거 서류와 증거물.

- 5) 변론의 요지.
- 6)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 사실과 그 진술의 내용.
- 7)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 3. 재판조서에는 재판국장과 서기, 또는 참여한 담당직원이 서명 날인한다.
- 4. 재판조서는 재판 기일 후 20일 이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6조 재판정에서의 속기, 녹취

- 1. 재판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직권으로 또는 피고 인, 변호인, 기소위원장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인, 증인 등에 대한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녹음 혹은 촬영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신청에 의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기소위원장은 재판국이 정하는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신청에 의한 자료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은 실비액을 납부하고 등본 또는 초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제47조 송달의 원칙

송달은 직원으로 하며, 송달을 받을 자에게 등기우편에 의 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제48조 기간의 계산

1.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년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 지 않는다.

2. 기간의 만기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49조 증인의 자격과 이의신청

- 1. 재판국은 본 교단 소속 개체교회의 입교인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재판 당사자의 직계가족.
 - 2) 범죄 사실의 유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능력이 없거나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
 - 3) 원심의 치리회로부터 허락을 권위 받은 자.
- 2. 재판당사자는 상대방이 신청한 증인 및 제출한 증거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채택여부는 재판 부가 결정한다.
- 3. 증인에 대한 기피이유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4. 당 사건에 대하여 증인의 수는 2인까지로 제한한다.
- 5. 증인신문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1) 증인의 이름.
 - 2) 주소.
 - 3) 연락처.
 - 4) 직업.
 - 5) 증인과 당사자와의 관계.
 - 6) 증인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알게 된 경위.

제50조 증인의 의무

- 1. 재판국장은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 2. 재판국장에 의해 증인으로 소환된 당사자는 출두하여 증인 신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51조 증인의 선서

- 1. 재판국장은 증인에게 신문 전에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 2. 선서는 선서문에 의하여 한다. 선서문은 "신앙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만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 면 책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이고, 이를 읽고 서명 날인해야 한다.
- 3. 증인이 18세 미만인 자,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인 경우에는 선서를 생략하고 신문할 수 있다.
- 4.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절차에 따라 책벌할 수 있다.

제52조 증인신문의 내용

- 1. 재판당사자와의 친인척관계의 유무.
- 2. 소송에 대한 이해관계.
- 3. 법정 연령의 적격성.
- 4. 상당한 식견과 판단력.
- 5. 평소 품행과 성품.
- 6. 금품 수뢰여부.
- 7. 본 교회의 시벌 여부.

제53조 증인신문의 방식

1. 증인의 신문은 신청한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먼저 신문한다.

- 2. 재판국장 및 국원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 3. 재판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 순서를 바꿀 수 있다.
- 4. 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 화해의 종용

치리회원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재판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살펴 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 1. 치리회는 원고에게 마태복음 18장 15~17절에 있는 주님의 교훈에 따라 먼저 피고와 화목하기를 권하고 화해기간 동안 은 재판을 연기할 수 있다.
- 2. 치리회는 화해권고결정 내용을 기록한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확정된 날로부터 1주일 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장 제1심 소송절차

제1절 고소 및 고발

제55조 고소권자

1. 죄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자는 증거를 첨부하여 고소할 수

있다.

- 2.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 매가 고소할 수 있다.
- 3. 고소권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
- 4. 치리회와 임원은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고소할 수 있다.

제56조 고소기간

고소는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거나, 죄과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다. 단, 고 소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 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57조 고소의 취하

- 1.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 2. 고소를 취하하는 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고소할 수 없다.

제58조 고발

- 1. 누구든지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 2. 치리회장과 임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다.

제59조 고발기간

제56조 고소기간의 규정을 고발기간에 준용한다.

제60조 고소 및 고발의 방식

- 1. 고소 및 고발은 서면으로 소속 치리회장에게 하여야 한다.
- 2. 고소 및 고발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야 한다.
 - 고소(고발)인 및 피 고소(고발)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 분, 주소.
 - 2) 죄과명 및 죄과에 대한 사실적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술하여야 한다.
 - 3) 서증, 물증, 인증 등의 증거명을 기재한다.

제61조 고소 및 고발의 조치

치리회장이 고소(고발)장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소위 원회에 이첩하여야 한다.

제62조 노회 기소위원회의 구성

- 1. 노회 기소위원회는 노회에서 선임된 위원 4인(목사 2인,장로 2인)으로 구성한다.
- 기소위원회는 위원장과 서기로 조직하되 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제63조 당회 기소위원회의 구성

- 1. 당회 기소위원회는 당회에서 선임된 위원 1인 내지 2인으로 구성한다.
- 2. 제62조 2항을 당회 기소위원회의 조직에 준용한다.

제64조 의결방법

기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때는 기소된 것으로 한다.

제65조 피의자 신문

- 1. 기소위원장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신문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전에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 기소위원회는 피의자에 대하여 죄과의 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절 기소

제66조 기소의 제기

기소는 기소위원회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제67조 기소제기의 방식과 기소장

- 1. 기소를 제기함에는 기소장을 관할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기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피고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
 - 2) 죄과명.
 - 3) 기소사실.
 - 4) 적용규정.

제68조 기소의 취소

1. 기소위원장은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기소를 취소할 수

있다.

2. 기소의 취소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69조 고소 및 고발에 의한 사건의 처리

기소위원회가 고소 및 고발에 의하여 죄과를 조사할 때에는 치리회장으로부터 고소(고발)장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기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 내의 기간 연장을 할 수있다.

제70조 결정통지

- 기소위원회는 고소 및 고발된 사건에 관하여 기소를 제기하 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 기소를 취소할 때에는 그 조 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및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2. 기소위원회는 불기소의 결정한 때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1조 기소부제기의 이유통지

기소위원회는 고소 및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죄과가 성립되지 않거나, 증명이 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 결정을 한 경우, 고소인 및 고발인의 청구가 있을 때는 10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 항고 및 재항고

1. 당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당회 기소위원회를 거쳐 노회 재판국에 서면으로 항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회 기소위원회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시정할 수 있다.

- 2.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기소위원회가 전 2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하지 않은 경우, 불기소로 간주하여 전항의 규정대로 항고할 수 있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인은 항고기각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노회기소위원회를 거쳐 서면으로 총회 재판국에 재항고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노회 기소위원회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 4. 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 처분 또는 불기소 간주로 인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총회 재판국에 재항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 제1항 내지 재3항을 준용한다.

제73조 재판국의 결정

- 1. 항고서 또는 재항고서와 기록을 접수한 노회 재판국 또는 총회 재판국은 60일 내에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결정을 하여야한다. 단, 필요한 때에는 재판국이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 1)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기각한다.
 - 2) 신청이 이유 있으면 기소를 명령한다.
- 2. 전항 2)호의 기소 명령에 대하여는 이의(불복) 신청할 수 없다.
- 3. 당해 재판국이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정본을 항고 인 또는 재항고인, 피의자와 관할 기소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절 재판

제74조 기소장 부본의 송달

재판국은 기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기소장의 부본을 제1회 재판기일 전 10일까지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75조 재판기일의 지정 변경

- 1. 재판국장은 재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 2. 재판기일에는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 3. 재판기일을 기소위원장, 변호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4. 재판국장은 직원 또는 기소위원장,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76조 불출석 사유서의 제출

재판기일에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 자료를 제출하여 야 한다.

제77조 피고인 또는 기소위원의 불출석

- 1. 피고인 또는 기소위원장(위임 받은 기소위원)이 재판기일 통지를 받고 제76조의 불출석 사유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2 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 출석없이 바로 개정 할 수 있다.
- 2.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만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출석 없이 도 개정할 수 있다.

제78조 재판기일 전의 당사자 증거제출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 피고인의 무죄 추정

피고인은 책벌(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제80조 인정신문

재판국장은 피고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를 물어서 피고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1조 기소위원장의 모두진술

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으로 하여금 기소장에 의하여 기소의 요 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 피고인의 진술권

재판국장은 피고인에게 그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3조 피고인 신문방식

- 1. 기소위원장 또는 기소위원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대하여 기소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
- 2. 재판국장 및 재판국원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제84조 피해자의 진술권

- 1. 재판국장은 죄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 2. 재판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85조 기소장의 변경

- 기소위원장은 재판국의 허가를 얻어 기소장에 기재한 기소 사실, 또는 적용 규정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판국은 기소사실의 동일성을 훼손하지 아니하 는 한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 2. 재판국은 전항에 따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86조 불필요한 변론 등의 제한

재판국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과 관계가 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 리를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87조 증거 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88조 자유 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재판국원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제89조 자증능력이 있는 서류 및 문서

- 1. 관공서에서 발부한 등초본 및 각종 증명서.
- 2. 국가 법원의 확정 판결서.
- 3. 기타 특별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제90조 증거조사 방식

- 1. 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증거물을 제시하고 증거물이 서류일 때는 그 요지를 알려 주어야 한다.
- 2.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 감정인 등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 3. 재판국은 전항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또는 직원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91조 사실주장과 답변태도

구체적인 사실 존부에 대한 당사자의 지식이나 인식의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 외계의 주관적 사실뿐 아니라 내심의 사실(선의, 악의, 고의, 과실 등)도 포함한다.

- 1. 자백: 자기에게 불리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시인하는 진 술로서 자백한 사실은 증명을 요하지 않고 그대로 판결의 기초가 된다.
- 2. 침묵: 상대방의 주장 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 3. 부인: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아니라고 부정하는 진술이다.
- 4. 부지: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진술로서 이는 부인으로 추정된다. 단, 부지는 자신의 인식의 대상이 아니었던 사실에 한하여 허용된다.

제92조 증거조사 후의 기소위원장 및 피고인의 의견 진술

- 피고인 신문과 증거 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기소위원장은 사실과 규정 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다만, 기소위원장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소장의 기재사항을 기소위원장의 의견진술로 본다.
- 2. 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의 진술을 들은 후에 피고인과 변호 인에게 최종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3조 책벌의 선고

재판국은 피고 사건에 대하여 죄과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판결 로써 책벌(유죄)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94조 책벌판결에 명시될 이유

책벌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죄과가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5조 상소에 대한 고지

책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국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 과 상소할 재판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96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죄과가 되지 아니하거나 죄과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제97조 기소기각의 판결

다음과 같을 때에는 판결로서 기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 2. 기소사건에 대하여 다시 기소가 제기되었을 때.
- 3. 원고의 재판국에 대한 단독 행위로 자신이 제기한 소의 전부. 일부를 철회하였을 때.
- 4.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 5. 기소제기의 절차가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제98조 기소기각의 결정

다음의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1. 기소가 취소되었거나 기소의 취소로 보았을 때.
- 2. 치리회장이 당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기소의뢰를 취소하였을 때.
- 3. 피고인이 사망하였을 때.
- 4. 기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더라도 죄과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

제5장 상소

제1절 통칙

제99조 상소의 의의

- 1. 상소제도는 부당한 재판으로 당사자가 받는 불이익을 구제하는 제도이다.
- 2. 재판의 권위와 법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판의 적 정을 기하여야 한다.

- 3. 당사자에게 불만이 있으면 소송상 같은 사건의 재판을 반복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다.
- 4. 상소는 법적용뿐만 아니라 사실인정까지 재심하여 그 잘못을 시정함으로써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함에 목적이 있다.

제100조 상소의 적격

- 1. 상소의 대상이 되는 재판은 종국적 재판이다.
 - 1) 선고이전의 재판건은 상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2) 중간 판결, 중간적 재판은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
 - 3) 종국판결에 해당하는 한 일부판결이거나 추가판결도 상소의 대상이 된다.
 - 4) 항소심에서의 환송판결, 이송판결도 종국판결이므로 독립하여 상고할 수 있다.
- 2. 비 판결사건은 상소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무효판결은 상소의 대상이 된다. 다만,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판결은 원인무효이므로 이 판결에 대하여 사망자 수계인의 상소는 부적법하다.
- 3. 상소 이외에 다른 불복방법이 있을 때에는 상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1) 재판의 누락이 있는 경우.
 - 2) 판결에 오산이나 잘못된 기재 등의 경우.
 - 3) 조서의 기재 사항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제101조 삿소권자

- 1. 기소위원장 또는 피고인.
- 2.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변호인은 피고인

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 3. 고소, 고발인은 피고인이 무죄판결, 기소기각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소위원회에 상소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소위원회는 고소, 고발인을 위하여 상소하여야 한다.
- 4. 전항의 경우에 기소위원회가 고소, 고발인의 상소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상소를 하지 않을 때에는 고소, 고발인이 직접 상소할 수 있다.

제102조 상소장의 제출

- 1. 상소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 2) 원재판의 표시.
 - 3) 원재판에 대한 상소의 취지.
- 2. 법정의 상소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해야 한다.
- 1) 항소와 상고의 경우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2) 즉시항고의 경우에는 재판의 고지가 있는 날로부터 1 주일 이내.
- 3) 통상항고는 재판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나 제기할 수 있다.

제103조 포기와 취하

- 1. 기소위원장이나 피고인은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등은 면직 혹은 출교가 선고 된 판결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없다.
- 2.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3. 상소의 포기는 원심 재판국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 재판국에

하여야 한다. 단, 소송기록이 상소 재판국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 재판국에 할 수 있다.

4. 상소의 포기나 취하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국장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한다.

제2절 항소

제104조 심리의 원칙

항소라 함은 제1심의 판결에 대하여 다시 유리한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상급 치리회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이다.

- 1. 제1심의 소송자료를 토대로 한다.
- 2.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는 제1심에서 제출하지 않은 자료 를 제출할 수 있는 변론의 갱신권을 인정한다.
- 3. 제1심의 증거자료는 항소 재판국에서도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 4. 항소의 제기가 소송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한다.
- 5.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6. 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 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 7.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한다.
- 되고인이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되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

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궐석으로 판결할 수 있다.

제105조 항소의 당사자

제1심의 원고인이나 피고인 중 항소의 이익을 가진 자가 항소인이 된다.

제106조 항소의 시기

항소는 제1심 재판국이 선고한 최종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최종판결 뒤에 양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 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7조 항소의 방식 및 제기기간

- 1.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
- 2.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제1심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항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 당사자와 혹은 변호인.
 - 2)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

제108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 1. 원심 재판국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 재판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 2. 상대방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 재 파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답변서 제출을 받은 항소 재판국은 지체 없이 그 부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09조 소송기록 접수와 통지

항소 재판국이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 또는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0조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 1.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항소이유서를 접수한 항소 재판국은 지체 없이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3.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 재판국에 제출하여야한다.
- 4. 전항의 답변서를 접수한 항소 재판국은 지체 없이 그 부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11조 항소 기각의 결정

- 1.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 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2.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12조 항소이유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규정의 위반이 있는 때.
- 2. 판결 재판국의 구성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 3. 헌법 또는 규정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재판국원이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 4.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 5.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 6.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 7. 책벌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 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 한 때.

제113조 항소 재판국의 심판

- 1. 항소 재판국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 2. 항소 재판국은 전조 1항 또는 제6항의 경우에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 3. 제1심 재판국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 재판국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 4. 항소의 제기가 소송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하는 경우(제소기간의 경과 등)에는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한다.
- 5.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6. 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 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 7.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8. 피고인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궐석으로 판결할 수 있다.

제114조 원심 재판국에의 환송

기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재판 국에 확송하여야 한다.

제115조 관할 재판국에의 이송

관할인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 재판국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16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책벌보다 중한 책벌을 선고하지 못한다.

제117조 판결서의 기재방식

항소 재판국의 판결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제3절 상고

제118조 상고할 수 있는 판결

노회의 판결이나 노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면 총회 재판국에 상고할 수 있다.

제119조 상고의 방식 및 제기기간

제107조 항소의 방식 및 제기기간을 준용한다.

제120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108조의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준용한다.

제121조 소송기록 접수와 통지

제109조의 소송기록 접수와 통지를 준용한다.

제122조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제110조 항소이유서와 답변서를 준용한다.

제123조 상고기각의 결정

제111조 항소기각의 결정을 준용한다.

제124조 상고 각하의 판결

상고의 제기가 소송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하는 경우(제소기간의 경과 등)에는 판결로써 각하 하여야 한다.

제125조 상고이유

제112조 항소이유를 준용한다.

제126조 상고 재판국의 심판

- 1. 상고 재판국은 상고이유서와 그 답변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한다.
- 2. 상고 재판국은 제112조 제1항 또는 제6항의 경우에는 상고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 3. 원심 재판국 또는 제1심 재판국에서 증거로 채택한 것은 상 고 재판국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 4. 상고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 5. 상고이유가 정당한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 6. 상고 재판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증인 및 참고인 등을 소환하여 신문할 수 있다.
- 7. 상고 재판국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제127조 기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적법한 기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 재판국 또는 제1심 재판국에 환송하여야 한다.

제128조 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

관할의 인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 재 판국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29조 관할위반과 환송의 판결

관할위반의 인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 재판국 또는 제1심 재판국에 환송하여야 한다.

제130조 파기자판

상고 재판국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 재판국 제1심 재판국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할 수 있다.

제131조 파기환송

제120조 내지 제123조(전4개조)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 재판국에 환송하여야 한다.

제132조 집행과 종국판결

- 1. 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의하여야 한다.
- 2. 판결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장이 판결확정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3. 판결의 집행은 판결서의 정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 4. 당회장이 판결의 집행의무를 미이행 시 노회장이 집행하고, 노회장이 판결의 집행의무를 미이행 시에는 총회장이 집행하여야 한다.

제6장 특별소송절차

제1절 위탁재판

제133조 위탁재판의 청원

당회장은 당회 재판국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

- 여 재판하기가 불능 또는 곤란한 경우에는 사건서류를 첨부하여 노회장에게 노회 재판국에서 위탁재판을 해 줄 것을 청원하여야 한다.
- 1. 재판의 전례가 없어 재판하기가 극히 어려운 경우.
- 2. 치리회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재판국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 3. 기타 치리회의 사정상 당회 재판국에서 재판하기가 심히 어려운 경우.

제134조 위탁재판청원의 처리

- 1. 위탁재판청원서를 송부 받은 노회장은 송부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속 기소위원회에 위탁재판 사건서류를 송부 하여야 한다.
- 2. 노회장으로부터 위탁재판 사건서류를 송부 받은 기소위원회는 사건서류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건의 조사를 완료하여 기소재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5조 준용규정

제74조로부터 제98조의 재판에 관한 규정은 위탁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제2절 재심

제136조 재심사유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벌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1. 원심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 2. 원심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 3. 무고로 인하여 책벌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 판결로 증명된 때.
- 4. 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남용, 뇌물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 5. 기소의 제기 또는 기소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기소위원이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가 증명된 때.
- 6.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을 때.
- 7.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 8.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

제137조 재심의 관할

재심은 원심 재판국이 관할한다.

제138조 재심의 청구절차

재심의 청구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9조 재심청구의 기간

재심의 청구는 당사자가 확정판결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혹은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기간을 예외로 한다.

제140조 재심청구권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1. 기소위원장.
- 2.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 및 법정대리인.
- 3.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 친족 또는 형제자매.

제141조 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 1.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할 때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2. 재심의 청구가 헌법 또는 규정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청구 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 다.
- 3.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 하여야 한다.
- 4. 전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 5.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 을 하여야 한다.

제142조 재심의 심판

- 1.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재판국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
- 2.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총회기관지 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43조 준용규정

제4장 제1심 소송절차 제3절 재판에 관한 규정은 재심에 이를 준용하다.

제3절 총회 특별재심

제144조 총회 특별재심 청원권자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 특별재심(이하 특별 재심 이라 한다)의 청원을 할 수 있다.

- 1. 기소위원장.
- 2.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 및 법정대리인.
- 3.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제145조 총회 특별재심의 청원

특별재심 청원권자는 총회 재판국의 확정판결이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 치리회장을 경유하여 총회에 특별재심을 서면으로 청원할 수 있고, 소속 치리회장이 경유를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설명한 서류(부전지)를 첨부하여 총회 개회 전날까지 총회에 직접 청원할 수 있다.

제146조 총회 특별재심 청원서의 처리

1. 특별재심 청원서를 받은 총회장은 이를 총회에 회부하고 특별재심 청원의 의결은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총회에서 특별재심 청원이 의결된 경우에는 그 총회(임원회에 위임 가능)에서 총회 특별재심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을 한다. 특별재심 청원이 부결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른 회기의 총회에 재 청원을 할 수 있다.

제147조 총회 특별재심 위원회의 구성

- 1. 특별재심 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임된 특별재심 위원 9인(목사 5인, 장로 4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별재심 위원은 동일한 노회 파송총대 중 1인에 한하여 선임된다.
- 2. 특별재심 위원 9인 가운데 1인 이상은 법학사 학위를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148조 총회 특별재심 위원의 임기

- 1. 특별재심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2. 특별재심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 임원회가 보선한다. 다만, 보선된 특별재심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49조 의결방법

특별재심 위원회 회의는 특별재심 위원의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0조 총회 특별재심 청원에 대한 결정

특별재심 위원회는 특별재심 청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특별재심의 청원이 헌법 또는 규정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원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 하여야 한다.

- 2. 특별재심의 청원이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 각하여야 한다.
- 3. 전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특별 재심을 청원하지 못한다.
- 4. 특별재심의 청원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7장 시벌 및 해벌

제151조 시벌 치리회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소속 치리회가 시벌한다.

제152조 시벌방법

- 1. 시벌은 소속 치리회 석상에서 선포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 2. 시벌을 기피하고 타처로 간 자에 대하여는 지상에 공고하여 시법하다.
- 3. 소속 치리회에서 15일 이내 판결을 시벌하지 아니할 때는 차상급 치리회에서 집행한다.
- 4. 시벌의 기산일은 피고인이 최종 확정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 한다. 단, 피고인이 최종선고를 재판회의 석상에서 받았거나 혹은 재판국으로부터 직접 판결문을 전달(팩스)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53조 가중시벌

시벌받은 자가 회개의 증거가 없고 또 다른 범행을 자행할 때에는 재판하여 가중 시벌할 수 있다.

제154조 해벌과 청빙

- 1. 시벌 중인 자가 회개의 정이 뚜렷하면 치리회의 결의로 치리 회 석상에서 자복케 한 후 해벌할 수 있다. 단, 시벌 치리회 와 소속 치리회가 다른 경우 제157조를 준용한다.
- 2. 시벌이 집행되어 시벌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는 해벌절 차 없이 자동 해벌된 것으로 본다.
- 3. 시벌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청빙할 수는 있으나 청빙 후에도 집행을 완료해야 해벌된다.

제155조 출교의 해벌

출교처분을 받은 교인은 해벌이 되어도 수찬정지로 2년이 경과되고 다시 치리회의 결의가 있어야 수찬정지가 해벌된다.

제156조 면직의 해벌

면직된 자가 해벌되어 복직되면 시무할 수 있고 시무하려할 때에는 시무에 청빙이나 신임을 얻어야 시무할 수 있다.

제157조 해벌 치리회

해벌은 최종 판결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의 승인(폐회 중에는 재판국의 승인)을 받아 그 소속 치리회가 시행한다.

제8장 행정쟁송

제1절 통칙

제158조 행정쟁송의 종류

- 1. 행정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 2. 결의취소 등의 소송: 치리회 회의의 소집절차 또는 의결방 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헌 법 및 규정에 위반한 때에 제기하는 소송.
- 3. 치리회 간의 소송: 치리회 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재 및 부존재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
- 4.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 : 총회총대 선거, 노회장 및 부노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 총회장 및 부총회장 기타 임원 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제기하는 소송.

제159조 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2장 제8조의 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은 이를 행정쟁송에 준용한다.

제160조 행정소송과 재심, 총회 특별재심

- 1. 행정쟁송의 확정판결에 제136조의 재심사유의 규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과 관계없이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2. 행정쟁송에 대한 총회 재판국의 확정판결이 제145조의 총 회 특별재심의 청원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총회에 특별재

심 청원을 할 수 있다.

- 3.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제167조 제3자의 소송참가 규정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와 총회특별재심의 청원을 할 수 있다.
- 4. 전항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 야 한다.

제161조 준용규정

- 1. 제3장 일반소송절차 등의 규정은 행정쟁송에 이를 준용한다.
- 2. 제6장 특별소송절차 중 제2절 재심과 제3절 총회 특별재심 등의 규정은 제158조의 제1항의 행정소송, 제2항의 결의취소 등의 소송, 제3항의 치리회 간의 소송에 준용한다. 그러나 제4항의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에는 준용하지 않는다.

제2절 행정소송

제162조 행정소송의 대상

행정소송은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제163조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취소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 2. 무효 등 확인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제164조 재판관할

- 1. 행정소송의 재판관할은 피고 소속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의 재판국이 된다.
- 2. 노회 재판국의 재판에 대하여는 총회 재판국에 상고할 수 있다.
- 3. 총회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총회 특별심판위원회에 서 심의, 판단한다.
- 4. 총회 특별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총회 임원회에 이 의신청을할 수 있고, 이 경우 총회 임원회는 총회 특별 심판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재심하게 한다.
- 5. 특별심판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대하여는 헌법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제165조 원고적격

- 취소소송은 치리회장의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행정행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행정행위의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헌법 또는 규정상 이익이 있는 자의경우에는 또한 같다.
- 2.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써 치리회장의 중대하고 명백 하고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제166조 피고적격 및 경정

- 1. 행정소송은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행정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정행위에 관계되는 권한이다른 치리회장에게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 2.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재판국은 원고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써 피고를 경정할 수 있다.
- 3. 재판국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167조 제3자의 소송참가

재판국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 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함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제168조 소의 제기 및 제기기간

- 1. 소의 제기는 소장을 재판국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 2. 취소소송은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을, 행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정

당한 사유에 대하여는 헌법시행규정으로 정한다.

3.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을, 행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전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169조 소장의 기재사항

- 1. 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원고의 이름, 직분, 주소.
 - 2) 피고인 치리회장의 이름, 직분, 주소.
 - 3)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의 내용.
 - 4) 행정행위가 있은 것을 안 날.
 - 5) 청구의 취지 및 원인.
- 2. 제1항의 소장에는 원고, 선정대표자, 대리인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70조 청구의 변경

- 1. 원고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변론의 종결 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 청구의 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3.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 4. 재판국은 청구의 변경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그 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

제171조 소의 취하

소는 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서면으로 취

하할 수 있다.

제172조 직권심리

재판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제173조 취소판결 등의 기속력

- 1.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인 치리회장 및 그 밖의 관계 재판국 등을 기속한다.
- 2.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행정행위가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행정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3절 결의취소 등의 소송

제174조 결의취소의 소

- 1.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결의 의 날로부터 60일 내에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취소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2. 제164조, 제160조, 제16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결의 취소 의 소에 이를 준용한다.

제175조 결의무효 확인의 소

- 1.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무효 확인의 소 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 기할 수 있다.
- 2. 제153조, 제160조 3항, 제16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이를 준용한다.

제4절 치리회 간의 소송

제176조 치리회 간의 소송

- 1. 치리회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유무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당해 치리회장은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 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2. 제153조, 제160조, 제16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이를 준용한다.

제177조 소송위원 선정

분쟁 당사자인 치리회는 각각 3인의 소송위원을 선정한다.

제5절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

제178조 선거무효소송

노회에서 총회총대 선거, 노회장 및 부노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 총회장 및 부총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헌법 또는 규정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관 선거관리위원장(책임자)을 피고로 하여 총회 재판국에 선거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79조 당선무효소송

노회의 총회총대 선거, 노회장 및 부노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 총회장 및 부총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헌법 또는 규정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관 선거관리위원장(책임자)을 피고로 하여 총회 재판국에 당선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80조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의 판결 등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의 소장을 접수한 총회 재판국은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소송에 있어 헌법 또는 규정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때에는 선거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판 결할 수 있다.

제181조 소송의 처리

- 1.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하며, 총회 재판국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판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3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2. 선거무효와 당선무효소송은 총회 재판국의 판결로 종결되며 재심청구, 총회 특별재심 청원을 하지 못한다.

제182조 증거조사

- 1. 소를 제기한 사람은 개표완료 후에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 효소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총회 재판 국에 투표함, 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 신청을 할 수 있 다.
- 2.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재판국은 현장에 출장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보관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헌 법

2009년 4월20일 개정판 발행 2019년 8월10일 개정판 발행

발 행: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6길73-4 TEL 02)742-3538

출 판: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 (총회 출판국)

출판국장: 박형진목사

편 집:박만진목사

정가: 값15,000원



바른신학 · 바른교회 · 바른생활